

발간 등록 번호

11-B190031-000197-08



Shaping the Future with EDCF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5 NO.1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지형의 변화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KSP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산업·투자 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Post-2015 개발협력 시대의 책무성(Accountability) : 쟁점과 전망

한국의 발전경험과 개발협력

중국의 대외원조와 중국수출입은행의 유상차관

베트남 국별 평가리포트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리포트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Research Center

한국의 개발협력

Journal of Korea's Development Cooperation

2015년 제1호

한국의 개발협력

발행 : 2015년 3월

발행인 : 이 덕 훈

발행처 : 한국수출입은행

편집인 : 나 기 환

주소 : (150-996)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8

전화 : 02-3779-6114(대표)

팩스 : 02-784-1030(대표)

홈페이지 : www.edcfkorea.go.kr

본 발간물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I. 한국의 개발협력

- 03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임소진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 33 KSP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산업·투자 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임소영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개발협력팀 팀장)

II. 국제개발협력 동향

- 49 Post-2015 개발협력 시대의 책무성(Accountability) : 쟁점과 전망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김보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III. 원조와 개발 논란

- 61 한국의 발전경험과 개발협력
(박명호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 한국외대 상경대학 교수/학장)

IV. 공적개발원조기관 분석

- 75 중국의 대외원조와 중국수출입은행의 유상차관
(이지연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선임조사역)

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 109 베트남 국별 평가리포트
(임영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 125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리포트
(송용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EDCF

I. 한국의 개발협력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지형의 변화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임소진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KSP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산업·투자 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임소영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개발협력팀 팀장

국제사회의 개발자원 지형의 변화와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임소진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선임연구원

I. 들어가며

2001년 시작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의 달성 기한이 2015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제사회는 2011년 말부터 새로운 글로벌 개발목표의 수립과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단계로 MDGs의 성과와 이행과정에서 도출된 교훈 및 향후과제가 제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Post-2015 개발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DGs 달성을 위해 필요했던 자원보다 더 큰 규모의 자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는 제한된 자원으로 마련되는 공적자원을 넘어서는 지속가능한 자원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민간재원의 확대방안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5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¹⁾ 개발원조 위원회(DAC)²⁾와 함께 ‘개발자원 재구축 이니셔티브 (Redesigning Development Finance Initiative, 이후 RDFI)’를 발족하여 Post-2015 개발목표 달성 과정에서 민간 금융협력을 활용한다면 더 쉽고 효과적으로 경제적 기회를 성취할 수 있음을 전파하고, 개발 투자 사업에 민간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적개발원조(ODA)³⁾와 민간재원 간 혼합금융의 재구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즉, 국제사회는 Post-2015 시대의 지속 가능한 개발재원의 마련을 위해 RDFI와 같은 활동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이후, 개도국)에서의 투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자원조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기 시작하였다.

1)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3)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개발재원에 대한 인식변화와 최근 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이러한 변화가 한국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개발자원 논의의 배경 및 논의경과를 분석하고, 제3장에서는 Post-2015 개발목표 수립과 관련된 개발자원 논의 동향을 알아 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개발자원 지평의 변화가 한국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I. 개발재원의 이해

개발자원이란 단순히 개발원조(development aid)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보다 넓은 의미로서 개도국 발전에 기여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에는 ODA를 넘어선 개발자원(beyond aid)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더 많은 개발재원을 동원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개발재원에 대한 이해는 크게 개도국 발전을 위해 외부에서 유입되는 ‘개발원조’와 내부에서 활용되는 개도국의 ‘국내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개발재원의 명확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최근 민간재원까지 아우르는 범주의 개발재원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OECD DAC는 공적재원에 의해 동원된 개발에 관련된 민간재원을 모두 개발재원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본 장에서는 우선 제1절에서 개발재원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원조에 대해 알아보고, 제2절에서 개발원조 및 국내재원 뿐 아니라 민간재원도 포함한 개발재원에 대한 그 동안의 논의 내용을 다루었다. 본 장의 제2절에서는 최근 OECD DAC의 개발자원 범주에 대한 논의 동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1. 개발원조

OECD DAC가 제시하고 있는 개발원조의 정의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개도국에 대한 자금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발원조는 다시 크게 공적자금(official flows)과 민간자금(private flows)으로 구분된다. 개발원조의 공적자금은 다시 ODA와 기타 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으로, 민간자금(private flows, PF)은 일반 민간자금⁴⁾과 민간부문에 의한 무상원조⁵⁾로 구분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2014: 2). 이와

4) private flows at market terms

5) net private grants

비교하여, UN에서 제시하는 정의를 살펴보면, 공적자금이란 공여국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무상원조(grant aid)와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⁶⁾으로 이루어진 개발원조이며, 민간자금이란 비양허성 원조 또는 시장재원으로 조달된 개발원조로 구분된다 (UNECOSOC, 2008: 3).

모든 OECD DAC 회원국들은 OECD 통계시스템(CRS)⁷⁾을 이용하여 해마다 각 공여국의 원조지원 현황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DAC 회원국들은 개발원조의 형태를 ODA, OOF 그리고 PF로 구분하여 보고하게 된다. 이러한 ODA의 측정은 OECD DAC이 제공하는 ODA 정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OECD DAC의 ODA 정의는 1969년에 최초로 정립된 후, 1972년 수정작업을 거쳐 완성되었다 (OECD, 2011a). 그 후 최근 2014년 12월에 OECD DAC 각료급회의(High Level Meeting, HLM)의 결과에 따라 현행의 1972년 ODA 정의가 또 다시 수정되었다. 표 1은 OECD DAC가 제시하고 있는 ODA 정의의 변천사를 보여준다.

표 1에 나와있는 것처럼, 2014년에 확정된 ODA 재정의에 의하면 무상원조의 경우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으나, 양허성 차관의 경우 개도국의 소득그룹별로 ODA로 인정되는 부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는 즉 최빈국 및 저소득국에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의 노력과 중소득국에 대한 노력을 차등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국제 사회의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1〉 OECD DAC의 ODA 정의 변천사

	1969년	1972년	2014년
ODA 정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주체가 제공 2. 수원국의 경제 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3. 양허적 성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주체가 제공 2.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3. 증여율 25% 이상 또는 양허적 성격(모든 국가에 대해 10% 할인을 적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적주체가 제공 2.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3.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이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LDCs/LICs : 45% (9% 할인을 적용) ② LMICs : 15% (7% 할인을 적용) ③ UMICs : 10% (6% 할인을 적용)

※ LDCs : Least Developed Countries, 최빈국
 LICs : Low income countries, 저소득국
 LMICs :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하위중소득국
 UMICs :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상위중소득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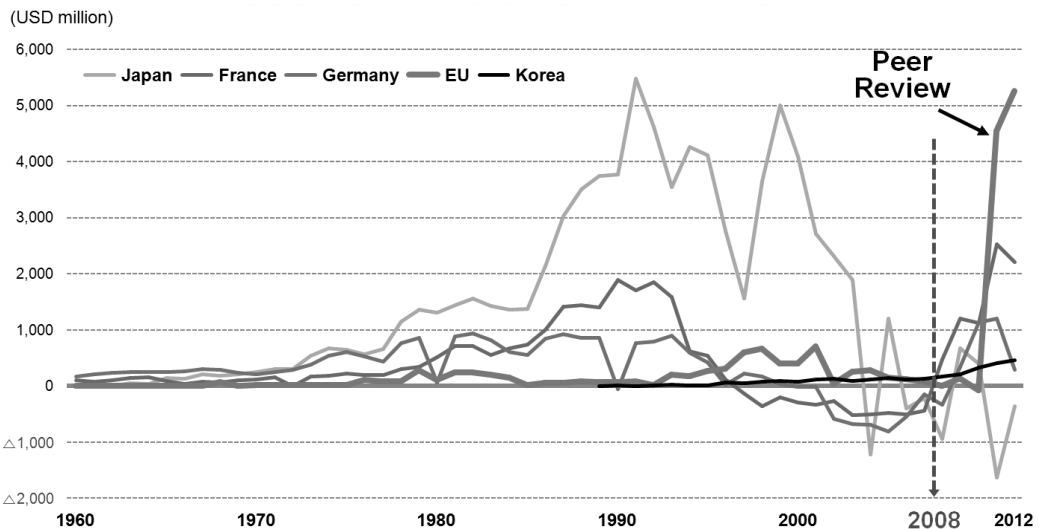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OECD, 2011a & 2014a; 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6) 국내에서는 유상원조로 더 많이 알려져 있으나, 국제사회에서는 ‘유상원조 (loan aid)’ 보다는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강함.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상원조를 양허성 차관으로 표기하기로 함

7) Creditor Reporting System

나아가 2014년의 ODA 재정의는 1972년 정립된 고정할인을 10%를 적용한 증여율 25% 이상이라는 양허성 차관의 ODA 적격기준이 2010년대 금융시장의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지 못하고 수원국별 위험프리미엄을 차등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었다. 특히 유럽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유럽 재정위기로 원조 예산이 부족해지자 재원을 시장에서 조달하여 증여율 25%를 겨우 넘기는 저양허성 차관을 제공하였다. 이에 대해 2012년 3월 EU에 대한 OECD DAC의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유럽투자은행(EIB)⁸⁾의 저양허성 차관에 대한 ODA 적격성 논쟁이 시작되어 ODA 재정의 논의로 이어졌다. 그림 1은 1961년부터 2012년까지의 주요 양허성 차관 공여국의 순지출을 기준으로 한 차관 지원 흐름을 보여준다.

〈그림 1〉 1961년~2012년간 주요 유상원조 공여국 차관 지원현황 (순지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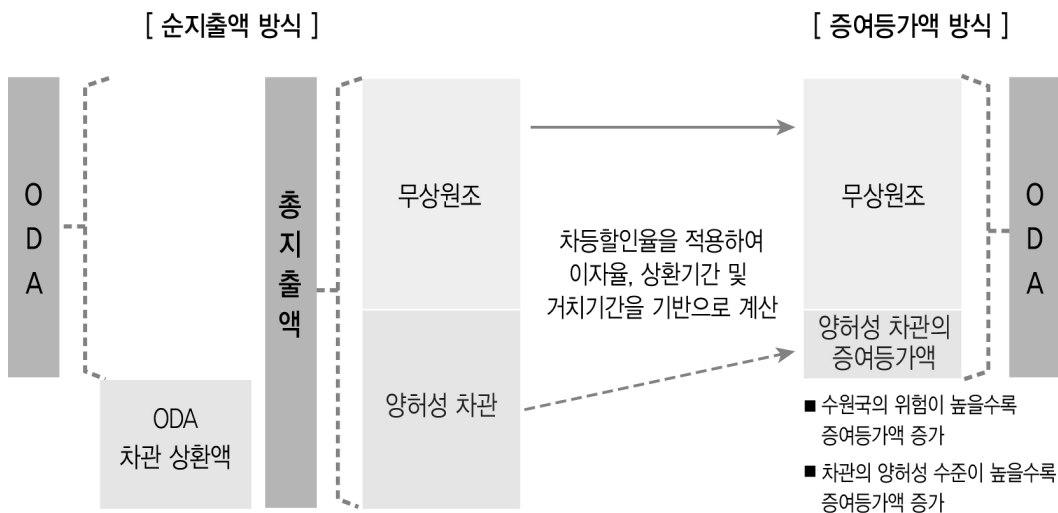
출처 : 한국수출입은행 경험총괄부 정책연구팀 작성 / 참고문헌 : OECD DAC 통계

이러한 ODA 재정의 논의는 ODA에 대한 정의 뿐 아니라 측정 부분에 대해서도 변화를 주었다. 기존에는 순지출 방식으로 계상되던 양허성 차관 부분이 새로운 정의에 의하여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의 개념을 적용하여, 양허성 차관의 총지출액 중 양허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을 ODA로 계상하도록 하였다. 즉, 기존의 ODA 측정방식은 순지출 방식으로 총지출액에서 총상환액을 차감하여 계산하였으며, 이 경우 양허성 차관의 원금상환이 완료되면 해당 차관의 ODA가 '0'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재정의에 따른 증여등가액 방식을 적용하여 측정하게 되면 현시점의

8) European Investment Bank

양허성 차관 총지출액 중 양허적 부분만을 ODA로 측정하게 되어, 기존과 같이 차관에 대한 ODA가 0으로 측정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2014년 OECD의 HLM 회의에서 합의된 이러한 내용은 2018년 실적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2015년에서 2017년까지는 현행의 방식과 증여등가액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OECD, 2014a).⁹⁾ 그림 2는 ODA 재정의에 따른 통계 측정방식의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2〉 2014년 ODA 재정의에 따른 통계 측정방식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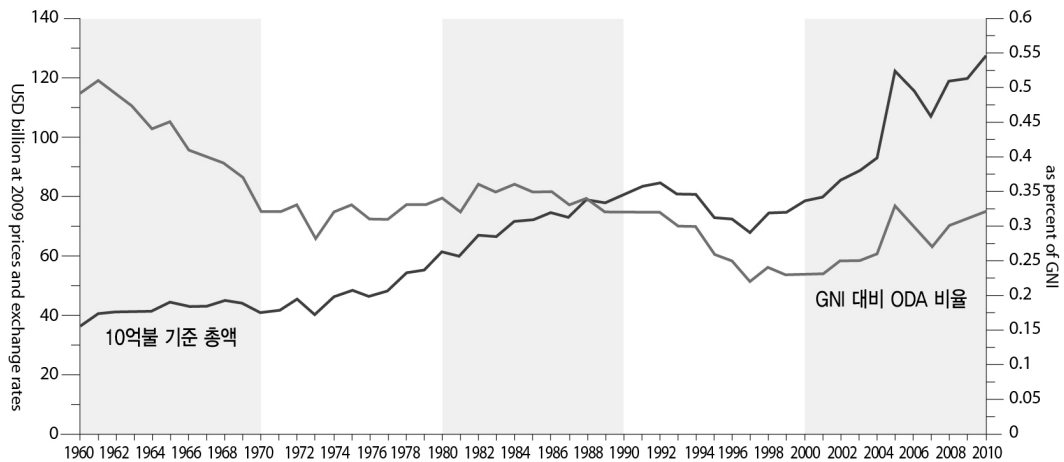


출처 : 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8

참고로 OECD DAC는 1961년부터 회원국들의 ODA 흐름을 순지출 기준을 중심으로 측정해 왔다 (OECD, 2011a). 그림 3은 DAC 회원국들의 1960년부터 최근까지의 순지출 기준의 ODA 지원흐름을 보여준다.

9) ODA 재정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OECD DAC의 ODA 재정의와 시사점. Vol. 4 No. 1, 서울, 한국수출입은행’을 참고

〈그림 3〉 1960년~2010년간 DAC 회원국 총 ODA 지원현황 (순지출 기준)



출처 : OECD DAC 통계시스템
 (http://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ODA_DONOR)

그러나 OECD DAC가 ODA 통계측정을 1961년부터 시작하였다고 하여 국제사회가 대 개도국 개발원조 지원을 이 시기에 시작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개발원조의 시작은 1947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경제부흥을 위한 대외원조 계획인 미국의 마셜플랜(Marshall Plan)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812년 제공된 미국의 베네수엘라 구호자금을 개발원조의 시작이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Hjertholm and White,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DAC의 개발원조 통계측정의 시작이 1961년부터인 이유는 OECD가 1961년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기 때문이다. OECD는 1947년에 설립된 유럽경제협력기구(OEEC)¹⁰⁾를 전신으로 하여 1961년에 개정되었다.

이렇듯 국제사회는 개발원조 및 ODA의 정의를 수립하고 그 흐름을 측정하기 위한 통계시스템을 마련하는 가운데, 공여국의 개발원조 지원에 대한 정량적 목표도 함께 수립하였다. 개별 공여국의 대 개도국 개발원조의 정량적 목표는 1958년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가 제시한 ‘GNP 대비 개발원조 1%’라는 정의에서 기인한다. 이때의 1%는 공적자금 뿐 아니라 민간자금의 흐름도 포함하는 목표치이다. 그 후 국제사회는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¹¹⁾에서 세계교회협의회가 제시한 ‘GNP 대비 개발원조 1%’ 목표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하였다. 다만, 1964년에 열린 제1회 UNCTAD 회의에서는 정량적 목표의 설정이 논의

10) Organis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11)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되지는 않고 1968년 뉴델리에서 열린 제2회 UNCTAD 회의에서 비로소 이 논의가 시작되었다.

제2회 UNCTAD 회의에서는 기존의 1% 목표치를 ‘최소 0.75% 이상’으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 의견은 네덜란드의 경제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얀 틴베르겐(Jan Tinbergen)이 유엔개발계획위원회(UN Committee on Development Planning)의 의장으로서 제안한 것으로, 개도국에서 필요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본을 추정하여 양허성과 비양허성 재원을 포함한 ‘GNP 대비 개발원조 0.75%’의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0.75% 제안은 끝내 합의되지 못하였다 (Clemens and Moss, 2005; Lowcock, 2013).

이후 세계은행 총재인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McNamara)와 영국 개발장관인 레지널드 프렌티스 경(Lord Reginald Prentice)은 UNCTAD의 GNP 대비 개발원조 비율을 확정하기 위해 국제개발위원회(Commission on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맡았던 캐나다 전 총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레스터 피어슨(Lester Pearson)의 이름을 반영한 피어슨위원회(Pearson Commission)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이 위원회는 1969년 ‘피어슨보고서 (Pearson Report)’를 통해 공여국은 1975년까지 순지출기준 ODA를 ‘GNP 대비 0.7%’까지 증가시키고, 1975년까지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적어도 1980년 내에 목표를 달성할 것을 권고하였다. 국제개발위원회는 1961년 공여국의 ODA는 이미 GNP 대비 0.54%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보았을 때 0.6%라는 목표를 제시할 경우 이는 너무 보수적(too modest) 수준의 설정일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프랑스와 같은 국가는 1968년을 기준으로 GNP 대비 0.75%의 ODA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0.7%와 0.75% 사이에서 어떠한 수치를 목표로 설정해야 하는지를 고민하였고, ‘간단하고, 이행가능하며, 적절한 (simple, attainable and adequate)’ 목표치를 선정하기로 하고, 최종적으로 0.7%를 제시하였다 (Clemens and Moss, 2005: 7-8; OECD, 2002).

이후 1970년 11월 UN 총회에서 국제사회는 대 개도국 ODA를 GNP 대비 최소 0.7% 규모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데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비로소 ODA의 중요성 및 증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ODA 촉진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Hynes and Scott, 2013). 이를 계기로 이 목표치는 1980년 UN 총회에서도 UN 회원국들의 별도의 투표과정 없이 그대로 결의안에 반영되었다 (Clemens and Moss, 2005).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바탕으로 이후 대부분의 개발의제를 포함하는 국제회의에서는 모두 GNP 대비 ODA의 0.7% 목표를 언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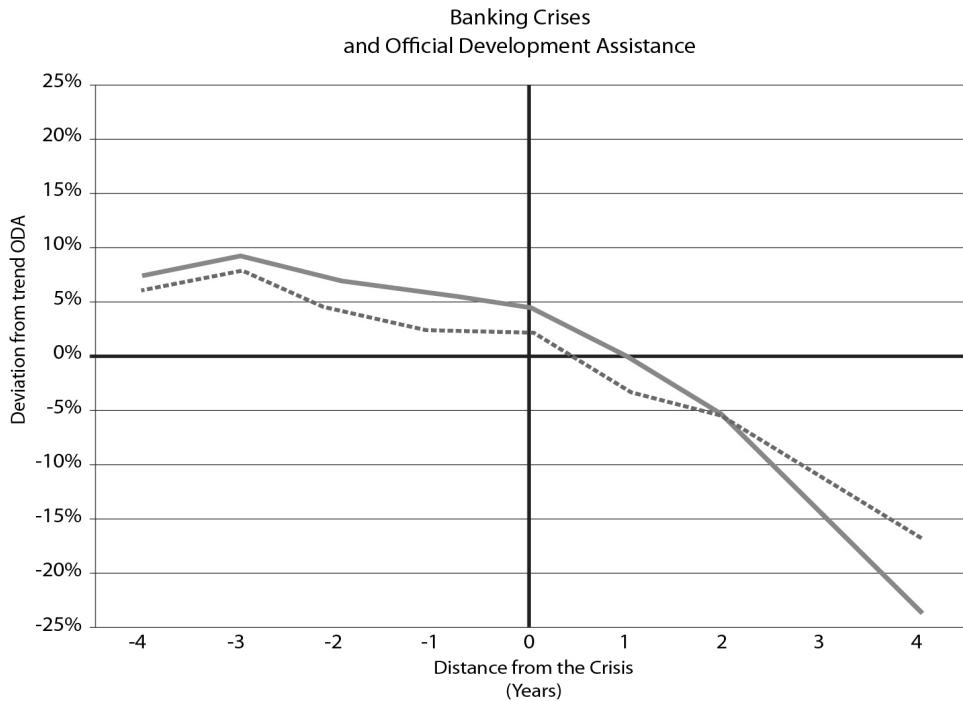
다만, GNP를 기준으로 하였던 측정방법은 2010년 UN에 의해 GNI 기준으로 바뀌어, 현재는 ‘GNI 대비 0.7%’로 사용하고 있다. UN의 2010년 인간개발보고서(Human Development Report)에 의하면, 국민의 소득(income of a country's residents)이 국내 생산(domestic production)보다는 개인의 생활수준(standard of living)을 측정하는데 더 적합하기 때문에 기존의 GNP로 사용하던 기준을 GNI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필리핀의 경우 해외 이주자에 의해 필리핀으로 유입되는 소액송금 때문에 GNI 규모가 GNP 규모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동티모르의 경우 해외원조로 인해 GNI가 GNP보다 훨씬 많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다 (UNDP, 2010).

그렇다면 이 0.7%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1960년대의 상황을 반영하여 제안되었던 1969년의 ‘ODA/GNI 0.7%’라는 정량적 목표치가 2010년대의 중반을 접어든 현 시점에도 여전히 유의미한 것인가? 예를 들어, DAC 회원국 전체의 평균 ODA/GNI 비율은 2000년대부터 현시점까지 한번도 0.7% 목표를 달성한 적이 없다. 최근 10년간 DAC 회원국의 ODA/GNI 비율은 2005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0.32%를 기록한 것이 최대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 회원국을 살펴보면, 총 28개 DAC 회원국 중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의 5개국만이 지속적으로 GNI 대비 0.7% 이상의 ODA를 제공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2014: 68-69 & 92).

이렇듯 DAC 공여국은 국제사회의 GNI 대비 ODA 0.7%를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복되고 있는 국제 금융위기에 따라 공여국의 ODA 조달 능력은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UNCTAD의 지난 30년간 모든 공여국에 대한 통계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림 4 참고), 금융위기와 ODA 감소는 명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UNCTAD, 2009). 즉, 공여국의 경제적 상황과 국제 금융환경에 따라 ODA 지원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ODA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하게 된다.

〈그림 4〉

금융위기와 ODA 규모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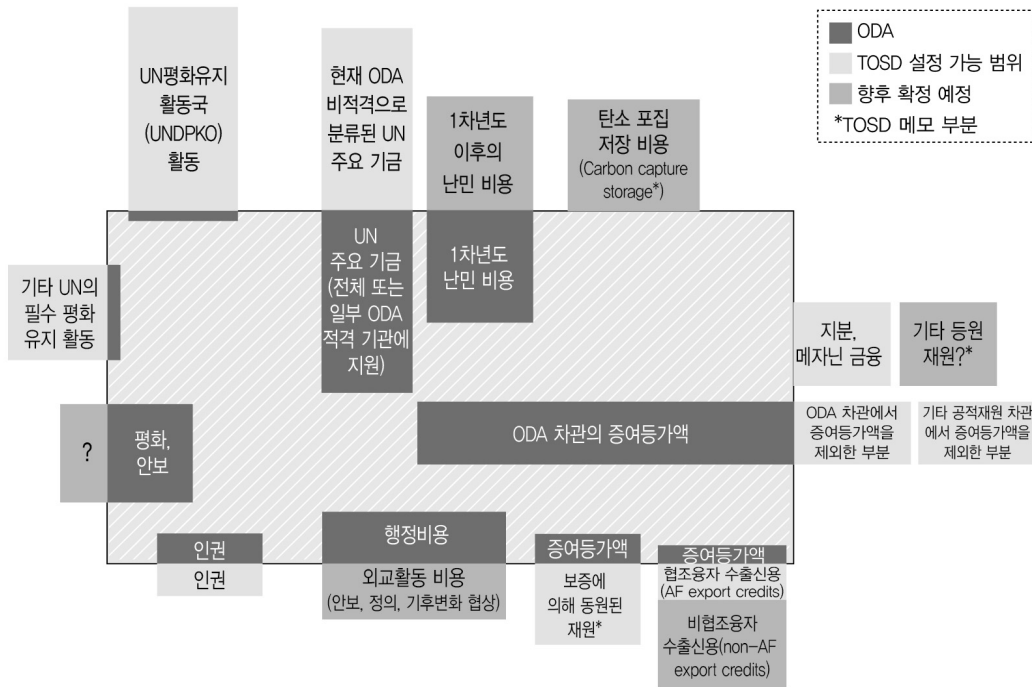


※ 굵은 선은 DAC 공여국 전체의 1970년에서 2002년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며, 점선은 편차가 가장 큰 핀란드를 제외한 분석결과임

출처 : UNCTAD, 2009: 2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공적재원에 대한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현재 OECD DAC를 중심으로 ‘ODA 현대화(modernising ODA)’ 논의가 진행중이며, 그 일환으로 ‘총공적개발지원 (Total Official support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이후 TOSD)’의 범주를 정의하는 논의가 2015년 내 마무리 될 예정이다. 즉,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재원의 공급을 위해 공적재원에 의해 동원된 다양한 재원을 TOSD로 정의함으로써 공적재원의 범주를 ODA 및 ODA를 통해 동원된 재원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만, TOSD는 ODA를 대체하는 개념은 아니며, ODA를 보완하는 개념으로 제시되었다 (OECD, 2014a). 예를 들어, 그림 5의 우측부분을 보면, 기존의 순지출 방식의 양허성 차관은 모두가 ODA로 계상되었던데 반해, ODA 재정의에 의한 증여등가액(Grant Equivalent) 방식에 의하면, ODA 차관 중 양허적으로 인정되는 부분만 ODA로 측정되며, 그 이외의 부분은 TOSD의 범주로 측정되게 된다 (OECD, 2014c).

〈그림 5〉 ODA 현대화에 따른 총공적개발지원(TOSD) 범주(안)



출처 : 대외경제협력기금, 2015: 9

한편, 이러한 최근의 개발자원 논의는 ODA의 수요·공급 곡선의 상반된 관계에 대한 부담 때문만은 아니며, 이미 1980년대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의 다음절에서는 개발자원 논의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2. 개발자원

개발자원은 영문표기로 ‘development finance’ 또는 ‘financing for development (FfD)’로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이를 ‘financing’ 부분에 착안하여 ‘개발금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의미하는 development finance 또는 FfD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개념을 적용하여 development finance 또는 FfD를 ‘개발자원’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개발금융이란 용어의 의미는 ‘개발협력 차원에서 개도국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금융수단 및 금융서비스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한다 (정혁, 2013: 3 참고). 즉,

본 연구는 개발금융이란 다양한 개발재원의 형태 중 하나로서 ‘금융’과 관련된 재원으로 한정하고, 개발재원이란 ‘개발금융 및 공적재원과 민간재원을 모두 포함한 개발을 위한 자원’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개발재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의 시초는 1996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6년 OECD DAC는 개발협력 역사상 최초로 공여국 간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ODA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공동의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이 로드맵은 ‘21세기 개발협력 전략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 불리며, ‘더 나은 원조 (making aid work better)’를 위해 적절한 자원 조합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1980년대까지는 공적개발재원이 개도국 발전을 위한 주요 재원의 출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공적개발재원 이외의 다양한 재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다양한 자원이란 개도국의 국내재원과 민간투자를 포함한다. 이 보고서는 특히 민간재원이 일부 개도국에만 편향되어 투자되고 있으며, 개도국 발전을 위해 중요한 분야에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향후 더 많은 수준의 민간재원이 더 많은 수의 개도국의 필요한 분야에 제공될 수 있도록 국내재원 및 민간재원 동원을 위한 개도국의 역량구축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OECD, 1996: 15-16). 이는 본 연구의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개도국 내 민간투자를 위한 환경조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UN에서는 1997년 제52차 총회 결의안을 통해 이전의 논의들을 상기시키면서 향후 정부간 개발재원에 대한 협의를 지속할 것을 다짐하였다 (UN, 1998). 이러한 가운데, 2000년 UN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이 채택되면서 국제사회는 21세기 국제개발목표(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의 이행을 위한 자원동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UN, 2000). 이후 OECD 21세기 개발협력전략에서 제시되었던 7대 국제개발목표를 재구성한 MDGs의 8개 목표가 2001년에 채택되면서, 국제사회는 MDGs 달성을 위해 필요한 개발재원 동원 노력의 일환으로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제1차 ‘개발재원총회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개최하였다.

제1차 개발재원총회는 2000년대 개발재원 논의의 본격적인 시작점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 논의내용은 당시 코피 아난(Kofi Annan) UN 사무총장에 의해 구성된 총 11명의 ‘개발재원 고위급패널 (High-level Panel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보고서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패넬의 의장인 전 멕시코 대통령의 이름을 담은 ‘세디요 보고서 (Zedillo Report)’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세디요 보고서는 크게 국내재원동원, 해외직접투자(FDI)¹²⁾를 포함한 민간재원, 무역, 국제개발협력, 국제금융체제의 5대 분야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FDI를 위한 개도국 환경 조성과 공여국의 ODA/GNI 0.7% 공약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12개의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UN, 2001). 국제사회는 2002년 개발재원총회 논의를 통해 ‘몬테레이 합의문 (Monterrey Consensus)’을 채택하고, 개발재원 동원을 위한 총 6대 행동전략을 제시하였다 (표 2 참고).

표 2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몬테레이 합의문은 세디요 보고서에 비해 ‘외채경감’에 대한 항목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다. 몬테레이 합의문에서 주요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외채경감’에 대한 내용은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 자원조달을 위한 지속적인 차관제공(sustainable debt financing)의 중요성을 토대로 개도국의 채무건전성 (debt sustainability) 유지를 위한 환경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국제사회는 몬테레이 합의문의 외채경감에 대한 논의를 통해 중소득국(middle income countries, 이후 MICs)과 경제전환 단계에 있는 개도국의 부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혁신적 메커니즘의 활용을 장려하였다 (UN, 2003).

〈표 2〉 개발재원총회 주요 논의주제

2001년 세디요 보고서	2002년 몬테레이 합의문	2008년 도하선언	2015년 제3차 개발재원총회(예정)
1. 국내재원 동원 2. 민간재원 3. 무역 4. 국제개발협력 (ODA) 5. 구조적 문제 (systemic issues)	1. 국내 개발재원 동원 2. 국제 개발재원 동원 : FDI 및 기타 민간재원 3.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4. 개발을 위한 국제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 향상(ODA) 5. 구조적 문제 (systemic issues) : 개발을 위한 국제 통화, 재정, 무역시스템의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 6. 외채경감 (external debt)	1. 국내 개발재원 동원 2. 국제 개발재원 동원 : FDI 및 기타 민간재원 3. 개발을 위한 원동력으로서의 국제 무역 4. 개발을 위한 국제 재정지원 및 기술협력 향상(ODA) 5. 구조적 문제 (systemic issues) : 개발을 위한 국제 통화, 재정, 무역시스템의 일관성 및 지속성 강화 6. 외채경감 (external debt) 7. 새로운 과제 및 이슈	1. 국내 공적재원 2. 국내 및 국제 민간재원 3. 국내 공적재원 4. 무역 5. 기술, 혁신, 역량구축 6. 국가부채 (sovereign debt) 7. 구조적 문제 (systemic issues)

출처 : 저자작성 / 참고문헌 : Norway and Guyana, 2015; UN, 2001, 2003, 2009

12) Foreign Direct Investment

국제사회는 몬테레이 합의문의 이행점검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개발재원 고위급 회의 (High Level Dialogu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를 개최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개최된 이 회의 중 특히 2013년에 개최된 제6회 회의에서는 MDGs 뿐 아니라 Post-2015 개발목표 이행을 위해 원조를 넘어선(beyond aid) 새로운 방식의 개발재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를 동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2008년에는 카타르 도하에서 ‘개발재원 후속회의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제2차 개발재원총회로도 알려진 이 회의에서는 몬테레이 회의 이후 개발재원 논의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혁신적 개발재원 이용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다. 국제사회는 2008년 도하회의 이후 ‘도하선언 (Doha Declaration)’에 합의하였으며, 몬테레이 회의 시 합의내용에 대한 이행 검토와 그 외의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결과를 도하선언문에 포함하였다. 도하회의 시 논의되었던 ‘새로운 과제 및 이슈’는 주로 국제금융위기,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한 추가비용, 국제원자재 시장의 가변성, 전후 국가의 재건 및 개발비용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 이해관계자의 활발한 참여가 중요하다는 것이 다시 한 번 강조되었다 (UN, 2009).

이러한 개발재원 논의에서 민간재원이 부각되는 현상은 특히 2011년 부산에서 열렸던 제4차 OECD DAC 고위급회담(HLF)¹³⁾인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이후, 부산총회)에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부산총회는 공여국(국제기구 포함)과 수원국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기존의 원조 패러다임을 공여국(국제기구 포함), 수원국, 국회, CSOs, 민간기업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포괄적 파트너십’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으로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여국이 제공하는 ODA 이외에 민간기업 등이 제공하는 민간자금이 개도국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이는 OECD DAC 통계가 보여주듯이, 1960년대 전체 개발재원 흐름의 약 50%를 차지하였던 ODA 규모가 2011년에는 27%로 감소하면서 민간재원의 개발에 대한 역할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다 (OECD, 2014b: 24).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재원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그동안 민간자금보다는 공적자금이 개도국에서 더 중요하다는

13) High Level Forum

인식이 팽배하였다. 그러나 부산총회에 이어 최근 Post-2015 개발재원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발전에 필요한 민간재원의 촉매제 역할로서의 ODA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의 변화도 함께 일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올해 2월 르완다 키갈리에서 열린 ‘동아프리카 자본시장 국제회의(Capital Markets East Africa (CMEA) International Conference)’에서 카가메(Kagame) 르완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시장(자본)은 공적원조보다 몇 천배 많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카가메 대통령은 이 회의에서 원조는 정치적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으나, 시장(자본)은 중립적이기 때문에 민간재원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이 회의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으며 민간재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원조와 민간재원이 상호보완의 역할을 한다는 것 또한 강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발재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증가하는 관심과 글로벌 개발목표 달성 및 개도국 발전을 위한 개발재원 동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1990년대 말을 시초로 하여 2002년 몬테레이와 2008년 도하를 거쳐,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릴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지속될 예정이다.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논의는 표 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은 7대 핵심요소(element)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제사회는 제3차 개발재원총회에서 특히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원동원 방안’을 보다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Post-2015 개발재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Post-2015 개발재원에 대해 보다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III.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와 개발재원

2000년 새천년선언의 후속조치로 2001년 발표된 MDGs는 총 8개의 목표와 21개의 세부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사회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개발되었다. 그림 6에서 보여주는 것과 같이, Goal 1은 경제개발, Goal 7은 환경지속성, 그리고 Goal 8은 개발재원과 관련된 목표들이며, Goal 2부터 Goal 6까지는 모두 사회개발을 중심으로 한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

새천년개발목표(MDGs)



출처 : 저자작성

MDGs 목표구성이 이렇듯 사회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 일부에서는 경제개발이 사회개발보다 덜 중요한 것처럼 잘못 인식되어 경제개발에 필요한 지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초래되기도 하였다 (임소진, 2012). 이에 따라 MDGs의 후속체계인 Post-2015 개발목표는 경제개발을 사회개발과 동등한 수준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 외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지속성과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부분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여 Post-2015 개발목표는 경제개발, 사회개발,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의 4대축을 근간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2001년 MDGs가 개발될 당시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정부 간 협상과정을 거치지 않고, UN, OECD, 세계은행, IMF의 대표단을 중심으로, 본 연구의 앞장에서 설명하였던 1996년 OECD의 21세기 개발협력 전략의 7대 글로벌

목표에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Goal 8을 추가한 형태로 MDGs가 탄생하였다. 따라서 MDGs 목표 개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및 수원국의 입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이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Post-2015 개발목표는 그림 7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발되고 있다.

〈그림 7〉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DGs) 수립과정



출처 : 저자작성

우선,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2년 7월 UN 작업반을 통해 MDGs 달성 성과 및 이행 과정에서의 교훈을 바탕으로 Post-2015 개발목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보고서¹⁴⁾를 발표하였다 (UN, 2012). 이 보고서는 앞서도 언급한 MDGs의 사회개발 중심이라는 한계를 탈피하여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지속성, 평화와 안보를 동등하게 조명한 4대 핵심 축을 제시하였다. 그림 8은 2012년 7월 UN 작업반의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를 보여준다.

14) Realis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그림 8〉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출처 : 임소진, 2013b: 4

이와 함께 UN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수원국의 의견과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각 수원국에 사무소를 가지고 있는 UNDP를 통해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목표에 대한 입장 및 의견을 담은 88개 수원국별 자문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식 웹사이트¹⁵⁾를 운영하여, 불평등, 거버넌스, 성장과 고용, 보건, 교육, 환경지속성, 식량안보와 영양, 분쟁과 취약성, 인구 다양성, 에너지, 수자원의 총 11개 주제에 대한 국제시민의 의견수렴 과정을 가졌다. UN은 이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개인은 누구나 각 주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UN은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Overseas Development Institute, ODI)와 함께 ‘My World 서베이’를 추진하여, 전 세계 개개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별도로 UN 사무총장은 2012년 8월, 정부와 비정부, 지역적,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한 총 27명으로 구성된 UN 고위급패널(HLP)¹⁶⁾을 발족하였다. HLP 위원들은

15) The World We Want - <http://www.worldwewant2015.org>

16) 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총 5회의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보고서¹⁷⁾를 제출하였다 (UN, 2013b). 이 보고서는 Post-2015 의제를 위한 5대 최우선 변화과제와 함께, 총 12개 목표와 54개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Post-2015 글로벌 목표 예시안을 포함하고 있다 (표 3 참고).

〈표 3〉 HLP의 5대 최우선 변화과제 및 12개 예시적 글로벌 목표

UN HLP의 5대 최우선 변화과제
1. 개개인을 포함한 개발 (Leave No One Behind) 2. 지속가능한 개발 강조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3.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4. 평화구축과 효과적이며 투명한 책임있는 국가제도 구축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UN HLP의 12개 예시적 글로벌 목표
1. 빈곤퇴치 (End Poverty) 2. 소녀 및 여성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달성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3.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4. 건강한 삶 (Ensure Healthy Lives) 5.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Ensure Food Security and Good Nutrition) 6. 수자원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Secure Sustainable Energy) 8.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Create Jobs, Sustainable Livelihoods, and Equitable Growth) 9. 천연자원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Manage Natural Resource Assets Sustainably) 10. 굿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 보장 (Ensure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Institutions) 11.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 12. 글로벌 차원의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장기적 재원 촉진 (Create a Global Enabling Environment and Catalyse Long-Term Finance)

출처 : 저자 재작성 / 참고문헌 : 임소진, 2013a

이 과정에서 HLP는 세부목표 제시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위해 UN 사무총장이 제프리 사크스(Jeffrey Sachs) 교수를 선두로 하여 설립한 ‘지속가능한 개발솔루션 네트워크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SDSN)’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17)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HLP 보고서는 국제사회의 개발에 대한 책무성 강화를 위한 데이터 혁명(Data Revolution)을 처음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이후 UN의 책무성 혁명(Accountability Revolution) 움직임의 시초라 할 수 있다.

UN은 2013년 9월 UN 총회를 앞두고 위의 세 가지 과정의 결과 및 그 외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13 UN 사무총장 보고서’¹⁸⁾를 발간하였다 (UN, 2013a). 이 보고서에서 사무총장은 지속가능한 개발의제 실현을 위한 4대 빌딩블록과 새로운 비전의 6대 핵심요소를 기반으로 한 ‘Post-2015 개발의제 필수요소’를 제시하였다 (표 4 참고).

〈표 4〉 2013 UN 사무총장 보고서의 Post-2015 개발의제 필수요소

2013 UN 사무총장 보고서의 Post-2015 개발의제 필수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모든 종류의 빈곤퇴치 (Eradicate poverty in all its forms) 2. 배제와 불평등 감소 (Tackle exclusion and inequality) 3. 여성과 소녀의 권한강화 (Empower women and girls) 4. 양질의 교육과 평생교육 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5. 보건증진 (Improve health) 6. 기후변화 문제 (Address climate change) 7. 환경문제 (Address environmental challenges) 8.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다운 일자리 촉진 (Promote inclusive and sustainable growth and decent employment) 9.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 (End hunger and malnutrition) 10. 인구이동 관련 문제 (Address demographic challenges) 11. 이민의 긍정적 기여 강화 (Enhance the positive contribution of migrants) 12. 도시화에 관한 도전과제 (Meet the challenges of urbanization) 13. 법과 안정된 제도에 기반한 평화와 효과적 거버넌스 구축 (Build peace and effective governance based on the rule of law and sound institutions) 14. 변화된 글로벌 파트너십 장려 (Foster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15. 국제개발협력 프레임워크 강화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ramework)

출처 : 저자 재작성 / 참고문헌 : 임소진, 2013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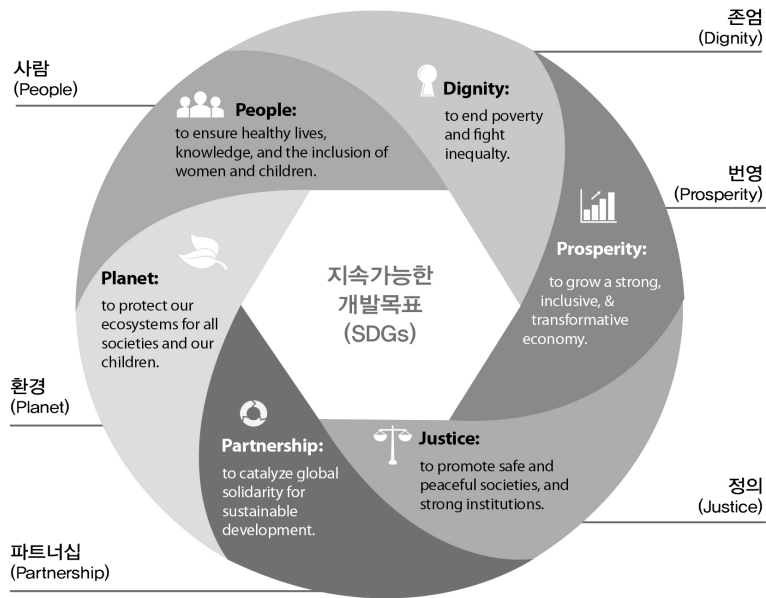
UN의 마지막 네 번째 공식과정은 ‘열린작업반 (Open Working Group, OWG)’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 SDGs)’ 개발이다. 열린 작업반의 SDGs 개발의 시작은 2012년에 열렸던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Rio+20

18)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회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Rio+20 결과문서에서는 회의 당시 콜롬비아 정부가 제시 하였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초초안(zero draft)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를 논의하였고, 이에 따라 UN은 2013년 1월 총 30명으로 이루어진 열린작업반을 구성하였다. 이후 열린작업반은 8회의 회의를 통해 2014년 7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이루어진 SDGs를 제시하였다.

UN 사무총장은 위의 모든 과정 및 그 외 유수 의견들을 종합하여 2014년 12월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¹⁹⁾를 발간하였다 (UN, 2014b).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종합보고서에서 2012년 UN 작업반이 제시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의 4대 핵심 축과 2013년 HLP가 제시한 5대 최우선 개발과제 및 그 외 의견들을 반영한 Post-2015 개발목표를 위한 6대 필수요소를 제시하였다 (그림 9 참고).

〈그림 9〉 2014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의 Post-2015 개발목표를 위한 6대 필수요소



출처 : 저자 재작성 / 참고문헌 : UN, 2014b: 20

한편, 사무총장 종합보고서가 발간되기 이전, 국제사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 Post-2015 개발목표의 규모에 대한 것으로, 새로운

19)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글로벌 목표의 개발과정에서 최근의 글로벌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HLP에 이어 2013년 사무총장 보고서, 그리고 열린 작업반의 SDGs까지 글로벌 개발목표로서의 목표수가 MDGs 8개에 비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즉, Post-2015 개발목표가 글로벌 목표로서 모멘텀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목표수가 10개 내외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발표된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는 열린작업반의 최종 17개 SDGs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현재 UN 회원국들은 국가 간 협상을 시작한 상황이다.

두 번째는 Post-2015 개발목표의 명칭에 대한 것이다. 일부 개도국에서는 Post-2015 개발목표의 명칭은 SDGs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일부 공여국들은 Post-2015 개발목표가 SDGs로 명명되면 환경을 포함한 사회·경제개발과 평화와 안보 등의 의제를 다루어야 하는 글로벌 목표로서의 정체성이 Rio+20의 SDGs와 비교하여 불분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UN 사무총장은 종합보고서에서 MDGs의 후속 글로벌 목표의 명칭으로 SDGs를 수용함으로써 개도국들의 의견을 더 존중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이로써 Post-2015 개발목표는 현재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SDGs)’로 명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까지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부간 협상이 마무리되고 최종 목표에 대한 합의안이 의결되는 2015년 9월 UN 총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위와 같은 목표설정의 과정과 함께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측면의 논의가 함께 이루어졌다. 글로벌 목표의 이행은 크게 이행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측정과 이를 위한 지표 수립, 그리고 이행을 위한 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UN은 2012년 9월 Post-2015 이행체제 모니터링 및 지표에 대한 작업반을 설립하여 2013년 7월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통계와 지표’ 보고서²⁰⁾를 제출하였다 (UN, 2013d). 이 보고서는 Post-2015 개발목표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개도국의 통계역량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행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주로 다루었다 (임소진, 2013b). 후자의 경우는 개발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인데, 이는 바로 최근의 개발재원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Post-2015 개발재원 논의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다음절에서 Post-2015 개발재원 논의를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자 한다.

20)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2. Post-2015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MDGs 수립 당시 MDGs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개발재원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MDGs 수립 이후 2002년 몬테레이 회의를 통해 MDGs 달성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을 논의하게 되었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후 2008년 도하 회의에서는 몬테레이 합의문 이행 검토와 함께 기후변화 및 식량 위기와 같은 새로운 과제에 대한 재원 확대가 함께 논의되었다. 이와 같은 두 차례의 개발재원총회에 이어 제3차 개발재원총회가 2015년 7월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 회의에서는 국제사회는 몬테레이 회의 이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한 재원동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번 회의는 특히 개발을 위한 시장재원 동원방안에 대한 논의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3차 개발재원총회의 논의결과는 2015년 9월 UN 총회에 제출될 Post-2015 정상회의 결과문서의 이행 논의 부분에 포함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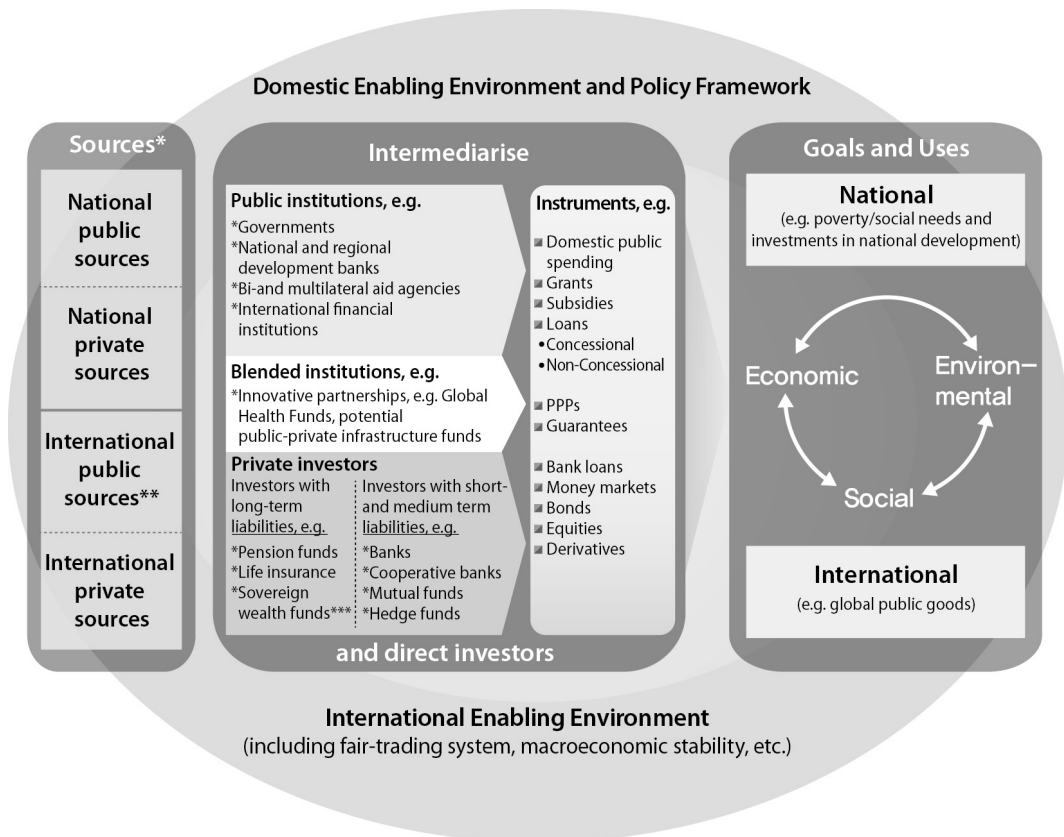
한편, UN의 Post-2015 개발목표 이행 메커니즘의 한 부분으로 개발재원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우선 UN은 2013년 Post-2015 개발의제 작업반을 구성하여 2015년 이후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보고서²¹⁾를 제시하였다 (UN, 2013c). 이 보고서는 Post-2015 개발의제의 핵심은 재원마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국내 공적 재원, 국내 및 외부 민간재원, 그리고 외부 공적재원 동원과 개발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건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UN 작업반의 이러한 분석은 이전의 몬테레이 및 도하 개발재원총회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와는 별도로, 2013년에 제출된 UN 사무총장 보고서에서는 MDGs Goal 8의 글로벌 파트너십은 공여국의 원조지원 감소에 따라 성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 사무총장은 UN 회원국들의 국제 및 국내재원의 조달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UN 파트너십 기금 (United Nations Partnership Facility, UNPF)’의 설립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임소진, 2013b). 이후 2014년에 발표된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Post-2015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DA 뿐 아니라 민간투자의 확대가 요구되며, 최빈국 기술은행의 설립과 같은 혁신적 재원을 동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 UN 사무총장은 그림 10과 같은 국제 및 국내의 개발재원 환경을 분석하고, 각 재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연계 고리를 분석한 개발재원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UN, 2014b).

21)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Global Partnership beyond 2015

이러한 개발재원 프레임워크는 2014년 9월 제68차 UN 총회를 앞두고 제출된 ‘지속가능한 개발재원 정부간 전문가 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의 보고서에서 제시되었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개발재원의 최근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방향과 자원동원 방안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특히 다양한 복합금융(blended finance) 수단을 소개하면서 시장재원의 개발을 위한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개발재원 전문가 위원회는 복합금융의 효과성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발금융기구(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s, 이후 DFIs)의 개도국 중소기업 지원과 함께, 영국 및 프랑스 DFIs와 세계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도국 인프라 지원 사업을 소개하기도 하였다 (UN, 2014a).

〈그림 10〉 2014 UN 사무총장 종합보고서의 Post-2015 개발재원 프레임워크



출처 : UN 2014: 27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제사회는 UN 및 OECD를 중심으로 공적개발재원인 ODA를 넘어서 민간재원을 포함한 개발재원 논의를 촉진해왔다. 나아가 최근의 개발재원 논의는 재원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최근의 국제 개발협력 패러다임은 ODA 중심의 개발협력 활동을 벗어나 다양한 혁신적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변화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장에서 이러한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가 한국 개발협력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IV.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에 따른 한국 개발협력에 대한 시사점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최근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논의동향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Post-2015 개발목표의 달성 및 개도국 개발을 위한 개발재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개발재원의 확대를 위한 민간재원의 확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최근의 개발재원 논의는 공적자금으로 이루어진 ODA를 넘어서는 개발재원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의미한다. 일부에서는 최근 MICs로 발전한 신흥경제국이 증가하면서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소득국(low income countries, LICs)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OECD DAC가 제시하는 수원국의 숫자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들을 위한 개발재원의 수요도 감소하여 지속적인 개발재원 공급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그러나 MICs 경우, 이들의 경제발전 한계를 의미하는 중진국의 함정(MICs Trap)을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LICs의 경우 단순한 양적측면에서의 발전이 아닌 국민의 양질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질적 측면의 발전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개발재원에 대한 수요는 결코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 영국하원(House of Commons)은 ODA/GNI 0.7%를 영국 개발협력의 양적 달성목표로 하는 '2014-15 국제개발법 (International Development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arget) Bill 2015-15)'을 의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2015년 3월 영국상원(House of Lords)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²²⁾ 그러나 영국은 이에 앞서 2014년 1월 국제개발부(DFID)²³⁾의 저스틴 그리닝(Justine Greening) 장관의

22) <http://services.parliament.uk/bills/2014-15/internationaldevelopmentofficialdevelopmentassistancetarget.html> 참조

런던 증권거래소 연설을 통해 영국의 국제개발의 핵심원칙은 ‘경제개발을 통한 빈곤 퇴치’이며, 이를 위해 영국은 향후 ‘스마트 원조 (Smart Aid)’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⁴⁾

그리닝 장관은 이 연설에서 스마트 원조는 영국 국제개발 정책의 개혁의지를 담고 있다고 밝히면서, 스마트 원조란 자국의 이해와 개도국의 경제발전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친시장적 윈윈(win-win) 체계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원조라고 소개하였다. 영국의 스마트 원조는 자국 민간기업의 새로운 시장개척과 투자의 기회를 창출하고, 개도국에서는 민간재원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과 함께 개도국 정부의 ODA에 대한 의존성을 극복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영국은 스마트 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MICs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영국과 MICs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그리닝 장관은 전통적 형태의 ODA와 스마트 원조가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영국은 최근 통과된 국제개발법에 따라 ODA의 양적증가를 통한 GNI/ODA 0.7% 목표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자국 민간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 및 투자증대에 따른 민간재원의 확대를 모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 개발협력의 선두주자인 영국의 이러한 결정은 최근의 개발재원 지형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그 동안의 ODA 중심의 개발재원 논의가 이제는 비공적재원(Non-ODA)인 민간재원으로 그 영역이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ODA의 역할은 기존의 역할 뿐 아니라 민간재원을 동원할 수 있는 촉매제로서의 역할을 포함하도록 확대되고, 지원 분야에 있어서는 개도국 내 민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현지 투자 환경조성으로 다양화될 전망이다. 즉, 전통적 수단의 ODA는 개도국 내 민간투자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enabling environment)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 혁신적 재원수단의 창출이 필요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ost-2015 개발목표 수립 논의에서는 경제개발에 대한 중요성과 함께 개도국의 인프라 개발이 강조되었고 (Scott and Seth, 2012: 3; UN, 2012: 29; UN, 2013a: 14), 2014년 HLM 커뮤니케이션에서도 LICs 및 군소도서개발국(SIDS)²⁵⁾에서의 인프라에 대한 지원강화의 필요성이 언급되었다 (OECD, 2014a: 6). 2014년 HLM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개도국에서의 인프라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민간재원의 동원과, 이를 위한 양허성 차관의 역할 증대의 필요성이

23) UK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4) <https://www.gov.uk/government/speeches/smart-aid-why-its-all-about-jobs> 참조

25) Small Island Developing States

명시되기도 하였다. 다만, 양허성 차관의 인프라 지원 및 민간재원 동원 과정에 있어서 개도국의 부채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세계은행과 IMF의 채무건전성 관리 체계(DSF)²⁶⁾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 함께 제시되었다.

원조 중심의 패러다임이 개발협력 파트너십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변천하면서, 개발재원의 지평 역시 ODA 중심에서 이를 상호보완할 수 있는 민간재원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ODA를 바라보는 시각 역시 변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기존의 원조효과성 또는 효과적 개발협력 논의는 원조제공 과정(delivery)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효과성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하는 환경조성과 역량개발에 대한 효과성 논의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원조 및 개발협력 효과성의 중심이 되었던 파리선언 및 부산글로벌파트너십을 통해 원조의 과정이 강조되면서 개도국에서의 개발효과, 즉 결과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의 논의를 넘어서 수요자 입장에서의 논의와 수요자가 적극적으로 공급을 창출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의 개발협력도 전통적인 ODA를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통해 더 많은 민간재원이 개도국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향후 개도국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제도형성과 역량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개발협력은 이러한 관점을 중심으로 국제 개발협력의 변화와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한국이 OECD DAC에 가입한지도 어느덧 5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올해는 제2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16-2020)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한국은 공여국 커뮤니티의 후발주자 또는 신흥공여국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배경과 변화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국의 개발 협력이 타 공여국의 경험을 답습하는 것을 벗어나 새로운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발전시키는 단계로 접어들어 개도국 발전에 이바지하는 다양한 지원 형태를 제시하며 국제개발협력 커뮤니티를 주도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

26) Debt Sustainability Framework

참고 문헌

해외문헌

Clemens, M. A. and T. J. Moss (2005). Ghost of 0.7%: Origins and Relevance of the International Aid Target. Working Paper No. 8. Washington D.C.,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Hjertholm, P. and H. White (2004). Survey of Foreign Aid: History, Trends and Allocation. Discussion Paper. Copenhagen, University of Copenhagen.

Hynes, W. and S. Scott (2013). The Evolution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Achievements, Criticisms and a Way Forward. Paris, OECD.

Lowcock, M. (2013). Modernising Development Finance: the Future of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Presentation at IMF Modernising Development Finance Workshop. 29 July 2013. Washington D.C.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department-for-international-development>
(접속일 : 2015년 2월 9일)

Norway and Guyana (2015). Elements. Preparatory Process for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OECD (1996). Shaping the 21st Century: The Contribution of Development Cooperation. Paris, OECD.

_____ (2002). History of the 0.7% ODA Target. DAC Journal. 3(4): III-9-III-11.

_____ (2011a). Measuring Aid: 50 Years of DAC Statistics - 1961-2011. Paris, OECD.

_____ (2014a). 2014 DAC HLM Communiqué. Paris, OECD.

_____ (2014b).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14. Paris, OECD.

_____ (2014c). Scoping the New Measure of Total Official Support for Development (TOSD). DCD/DAC(2014)35.

Scott, A. and P. Seth (2012). Infrastructure Services Post-2105. London, ODI.

UN (1998). Global Partnership for Development: High-level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Consideration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2/179. New York, UN.

_____ (2000). United Nations Millennium Declaration. Resolution Adopted by the

General Assembly. A/RES/55/2. New York, UN.

_____ (2001). Letter dated 25 June 2001 from the Secretary-General to the President of the General Assembly: Recommendations of the High-level Panel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High-level International Intergovernmental Consideration of Financing for Development. A/55/100. New York, UN.

_____ (2003). Monterrey Consensu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he Final Text of Agreements and Commitments Adopte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18-22 March 2002. Monterrey, Mexico.

_____ (2009). Doha Declaration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Outcome Document of the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The Final Text of Agreements and Commitments Adopted at the Follow-u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inancing for Development to Review the Implementation of the Monterrey Consensus. 29 November - 2 December 2008. Doha, Qatar. New York, UN.

_____ (2012). Realis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 Report to the Secretary-General.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_____ (2013a). A Life of Dignity for All: Accelerating Progress towards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Advancing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Agenda beyond 2015. A/68/202. New York, UN.

_____ (2013b).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10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_____ (2013c).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the Global Partnership beyond 2015.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Thematic Think Piece among OHCHR, OHRLLS, IFAD, IOM, UNCTAD, UNDESA, UNDP, UNEP, UNESCO, UNFCCC and UNFPA.

_____ (2013d). Statistics and Indicators for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UN System Task Team on the Post-2015 UN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

_____ (2014a). Report of the Intergovernmental Committee of Exper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Financing.

_____ (2014b).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New York, UN.

UNDP (2010). The Real Wealth of Nations: Pathways to Human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Report 201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UNECOSOC (2008). Trends in South-South and Triangular Development Cooperation. Background Study for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orum. New York, UN.

국내문헌

대외경제협력기금 (2014). 숫자로 보는 ODA. 2014 우리나라 ODA 통계자료집.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_____ (2015). OECD DAC의 ODA 재정의와 시사점. EDCF 이슈페이퍼 Vol. 4 No. 1.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3a).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제10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_____ (2013b). 모두를 위한 품위있는 삶 :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사무총장 보고서. 개발과 이슈 제12호. 성남, 한국국제협력단.

정혁 (2013). 개발금융 도입을 통한 한국의 개발협력 체제 발전방향에 관한 고찰. 대외경제협력기금 연구용역 보고서. 서울, 한국수출입은행.

KSP의 성과와 향후 과제 : 산업·투자 분야 지원을 중심으로

임소영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협력실 개발협력팀 팀장

I.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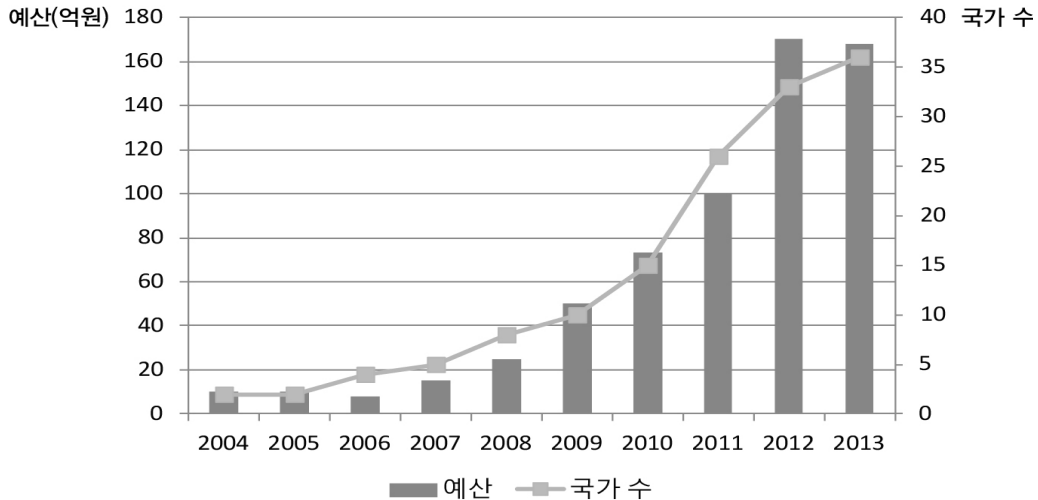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속도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수원국에서 공식 공여국으로 전환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이 토지나 천연자원, 자본금 등 유형 자산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식과 기술 등 인적 자산으로 가능했다는 점 때문에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자 하는 개발도상국들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발전경험 공유에 관한 개도국들의 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이들과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기획재정부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이하 KSP)을 마련하였다. KSP는 협력국의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후속 협력 사업이나 ODA 사업에 연계됨으로써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경제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때문에 KSP 대상국은 ODA 대상국에 한정되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중동 국가, 루마니아,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와 G20 국가들도 포함한다.

2004년에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자문을 시작으로 규모와 주제 측면에서 꾸준히 성장을 거듭해 온(그림 1 참조) KSP는 지난 2월 KSP 10년사 발간과 함께 성숙한 단계로의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다. 본고는 KSP의 발전과정과 현황, 특히 개도국의 자립을 위해 우리나라 발전경험 공유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산업 및 투자 분야에서 KSP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산업 및 투자 분야 KSP가 추구할 수 있는 향후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림 1〉

양자 KSP 정책자문 사업의 확대 현황



출처 : KSP 공식 웹사이트(www.ksp.go.kr)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II. KSP의 구성

KSP는 수행양식과 주체에 따라 크게 정책자문(양자), 국제기구 공동컨설팅(다자), 발전경험 모듈화, 시스템 컨설팅 사업의 네 가지 부문으로 구분된다.¹⁾ KSP의 대표적인 구성요소로서 2004년부터 시행된 양자 정책자문은 파트너국 현황의 심층 조사 분석,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관한 정책 제안, 교육연수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해 왔다. 궁극적으로 파트너국의 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공무원들의 정책 형성 및 이행 역량을 강화한다.²⁾ 이 때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한다는 기본 전제를 유지하되, 철저하게 파트너국의 요청과 수요를 바탕으로 자문 주제를 선정한다. 파트너국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이해 증진을 위하여 현지조사와 워크숍, 실무자 및 고위 관리자들의 초청연수를 사업의 필수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2004년 착수 당시 2개국이던 파트너국은 2014년에는 51개국으로 확대되었으며,³⁾ 대상 지역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유럽까지 포괄한다.

표 1과 표 2는 대상국가가 급격하게 확대된 2011년을 기준으로(그림 1 참조) 2010년까지와 2011년 이후의 KSP 사업을 구분하여 국가와 주제별로 정리한 현황을 보여준다.

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2.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0년사」 발간

2) KSP Brochure (기획재정부, 2013)

3)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2.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0년사」 발간

이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아시아 지역이 주요 자문 대상이었으며, 2010년 이전에 비해 2011년 이후부터는 중남미가 주요 파트너 지역으로 급부상하였다. 주제 측면에서는 ‘경제발전 및 성장’이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기초를 유지하는 가운데, ‘산업’과 ‘거시금융경제’도 KSP의 주요 주제로서 공유되어 왔다.

2011년 이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경제발전과 산업, 거시금융경제에 편중되어 있던 자문 주제가 다변화되고 고르게 분포되는 경향이 발견된다. 보건, 교육, 농업, 지역경제 등 특정 섹터로 특화된 구체적인 주제의 자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특히 2010년까지는 한 건도 없었던 ‘도시, 농촌 및 지역경제’에 관한 자문이 2011년 이후에는 13건으로 급증하였다. ‘농업 및 환경자원’ 분야도 비중이 눈에 띄게 높아지는 중이다. KSP가 진화할수록 전체적인 발전 담론에서 구체적인 성장 전략으로 자문 영역이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2004-2010년 기간의 양자 정책자문 KSP 대상국가 및 주제 현황

지역	국가	수행연도	거시 금융 경제	공공 보건 복지 경제	노동 및 교육	국제 경제	산업	경제 발전 및 성장	농업 및 환경 자원	도시, 농촌, 및 지역경제	기타
아시아 (중앙아시아 제외)	베트남	'04, '09, '10	○		○	○	○	○			
	인도네시아	'05, '09, '10	○			○	○	○			
	캄보디아	'06, '09, '10	○	○				○			
	라오스	'10	○								
	몽골	'10	○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 국	'10		○				○			
	가나	'07, '09, '10		○			○				
	모잠비크	'08					○	○			
중남미	도미니카공화 국	'08, '10			○	○			○		○
	페루	'10					○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아제르바이잔	'07, '08, '10			○	○	○				
	카자흐스탄	'09, '10					○	○			
	터키	'05, '08		○	○			○			
	우크라이나	'08, '09						○	○		
	우즈베키스탄	'04, '09, '10	○			○	○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알제리	'06	○								
	쿠웨이트	'07, '10	○	○	○		○	○			
	오만	'08					○	○			
	사우디아라비아	'10			○			○	○		
	UAE	'10					○				
합계			8	5	6	5	11	14	4	0	1

출처 : KSP 공식 웹사이트(www.ksp.go.kr)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접속일 : 2015년 2월 10일)

<표 2>

2011년 이후의 양자 정책자문 KSP 대상국가 및 주제 현황

지역	국가	수행연도	거시 금융 경제	공공 보건 복지 경제	노동 및 교육	국제 경제	산업	경제 발전 및 성장	농업 및 환경 자원	도시, 농촌 및 지역경제	기타
아시아(중 양아시아 제외)	방글라데시	'12, '13	○			○		○			
	캄보디아	'11, '12, '13, '14	○		○	○	○	○	○		○
	인도네시아	'11, '12, '13, '14	○	○	○		○		○		○
	라오스	'11, '12, '13, '14	○	○		○	○	○	○		
	몽골	'11, '12, '13	○	○		○				○	
	미얀마	'11, '12, '13, '14	○	○	○		○	○	○	○	○
	파키스탄	'12						○	○		
	스리랑카	'11, '12, '13, '14	○		○	○	○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필리핀	'11, '12	○	○							
	베트남	'11, '12, '13, '14		○	○	○	○	○	○	○	○
	콩고민주공화국	'13		○							
	적도기니	'11, '12	○				○		○		
	에티오피아	'11, '12, '13, '14	○	○			○	○		○	
	가봉	'11, '12, '13	○				○	○	○	○	○
중남미	가나	'11, '12, '13		○			○	○	○	○	
	남아공	'11, '12		○	○				○		
	탄자니아	'11, '12, '13	○								
	벨리즈	'13								○	
	볼리비아	'11, '13	○	○							
	브라질	'11, '12, '13				○		○	○		
	콜롬비아	'12, '13	○				○			○	
	코스타리카	'13						○			
	도미니카공화국	'12, '13			○	○			○		○
유럽 및 중앙아시아	에콰도르	'11, '12, '13	○			○	○		○	○	
	온두라스	'11, '12, '13, '14	○				○				
	멕시코	'12, '13			○		○				
	파나마	'11, '12		○		○			○		
	페루	'11, '12, '13	○		○		○	○		○	
	러시아	'13				○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아제르바이잔	'14							○		
	헝가리	'13, '14			○		○	○			○
	카자흐스탄	'11, '12, '13, '14	○	○		○	○	○		○	
	루마니아	'12, '13			○			○			
	터키	'12, '13				○		○	○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우즈베키스탄	'11, '12, '13, '14			○		○	○	○		○
	이집트	'13					○		○		
	알제리	'11, '12, '13, '14		○				○			
	쿠웨이트	'13	○		○			○			
	리비아	'12				○	○				
	오만	'12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사우디아라비아	11, '12, '13		○	○			○	○	○	
	UAE	'11, '12, '13					○	○			
합계			20	15	14	13	21	24	19	13	8

출처 : KSP 공식 웹사이트(www.ksp.go.kr)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접속일 : 2015년 2월 10일)

지식공유의 품질을 개선하고자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자문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이 2011년에 착수되었다.⁴⁾ 국제기구 공동컨설팅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국제기구의 개발컨설팅 및 지역 전문성을 결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국제기구-개도국의 협력 아래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삼자간 협력사업의 형태를 보인다.

우리 정부는 2011-2014년 기간에 모두 7개 주요 국제기구와 55개 공동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한 바 있다.⁵⁾ 공동컨설팅의 파트너 국제기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중남미개발은행(CAF), 미주개발은행(IDB), 국제연합(UN), 세계은행(WB)이다.⁶⁾ 이들 중 ADB와 IDB와의 공동컨설팅 사업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한편 중남미 지원사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KSP 정책자문을 보완할 목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의 발전경험에 관한 사례들을 정리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한국의 발전경험 모듈화 작업을 수행하였다.⁷⁾ 발전경험 모듈화는 향후 정책자문과 여타의 개발지원 프로그램들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 온 정책들, 이들의 이행과 성과, 제도 발전과정과 공공 프로젝트들을 정리, 축적하였다.⁸⁾

현재 138개 주제에 대한 발전경험 모듈화 정리가 완료된 상태이다.⁹⁾ 2010-2013년 기간에 수행된 발전경험 모듈화 작업의 주제별 수행 연도 분포를 그림 2와 같이 정리하였다. 양자 정책자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발전 및 성장’ 주제가 발전경험 모듈화에서도 가장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인적자원’, ‘산업에너지’, ‘토지개발’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어진 모듈화 주제이다.

4) KSP Brochure (기획재정부, 2013)

5)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2.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0년사」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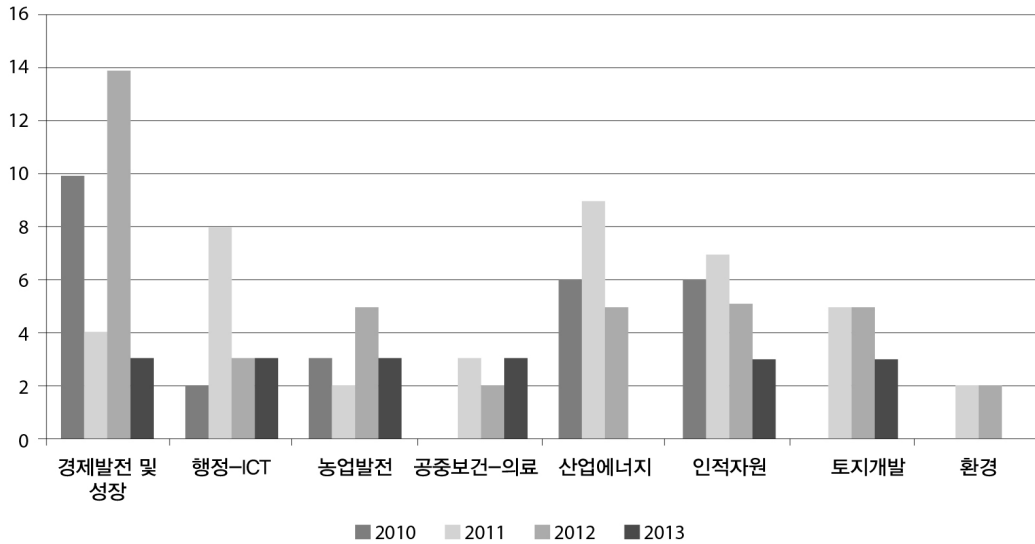
6) KSP 공식 웹사이트 (www.ksp.go.kr, 검색일 : 2015.2.12.)

7) KSP Brochure (기획재정부, 2013)

8) KSP Brochure (기획재정부, 2013)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2.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0년사」 발간

〈그림 2〉 2010-2013년 기간에 축적된 발전경험 모듈화 주제 분포



출처 : KSP 공식 웹사이트(www.ksp.go.kr)를 참조하여 저자 작성 (접속일 : 2015년 2월 13일)

가장 최근에는 금융정보 및 전자조달 시스템 등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유한 시스템에 대한 컨설팅이 새로운 KSP 구성요소로서 도입되었다. 2013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시스템 컨설팅은 지원 분야와 대상 국가를 점차 확대해가고 있는 중이다.¹⁰⁾

III. 산업·투자 분야 자문

KSP 자문 영역이 해가 갈수록 구체적인 성장전략 분야로 전환되는 추세를 앞 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KSP 자문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에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분야별 해외진출을 증진할 수 있는 특성화된 지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그 결과, 2014년부터 KSP 양자 정책자문은 크게 경제발전, 산업투자, 건설인프라의 세 부문으로 구분되어 수행되고 있다.¹¹⁾

10) 2013년 5개국에 4개 분야, 2014년 8개국에 6개 분야를 지원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5.2.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10년사」 발간)

11) 2014년의 경우 경제발전 부문은 KDI, 산업투자 부문은 산업연구원-KOTRA, 건설인프라 부문은 국토연구원-수출입은행이 총괄수행함

경제발전 부문 KSP는 기존의 거시경제, 금융, 경제발전 등 일반 정책자문 사업이다. 산업투자 부문 KSP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보유하여 기업의 해외 진출이 유망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업육성 전략 및 법·제도 정비, 산업단지 개발, 인력 공급 등 산업환경 구축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건설인프라 부문 KSP는 건설인프라 프로젝트의 기본계획, 규제, 운영전략 등을 수립하고 후속사업을 발굴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수주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들 중 본고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발전 원동력이었던 제조업과 수출전략이 핵심을 이루는 산업투자 분야 정책자문의 특징과 의의, 그리고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1. 산업투자 분야 ODA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개발은 국가의 발전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개발은 적절한 수준의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도국에서는 낮은 투자율, 불충분한 생산성, 혁신을 위한 인센티브 부족, 예측 불가능한 투자 수익률 등으로 인해 산업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못하고 있다 (OECD, 2006).

이와 같은 개도국의 산업개발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대내외 투자와 효율적인 자본 배분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서 산업 분야 ODA가 개발원조 초기에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다. 즉, 개도국의 경제개발이 곧 산업화라고 이해될 정도로 개도국의 산업개발을 돕는 지원의 중요성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러나 개발원조 초기에 지원된 프로젝트들의 실패 등으로 인하여 1970년대부터 개발원조의 초점이 사회개발로 옮겨지게 되었다 (김석진 외, 2007). 그 결과, 산업 분야의 지원 비중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2000년 MDGs 설정으로 정점에 달하게 되었다.

2000년대 후반 들어 개도국의 자립적인 경제성장을 돕기 위한 산업개발 중심의 개발협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업투자 분야 ODA가 재조명되었다. 개도국의 자생적인 산업개발이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가져오고, 궁극적으로는 빈곤감소와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한다는 인식 하에 산업개발에 대한 지원이 주목을 받게 된 것이다 (임소영 외, 2013).

임소영 외 (2013)는 국내 개발협력 정책들에서 발견되는 산업 분야 ODA 계획의 간극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CPS)과 2012년 우리나라 지원역량을 중심으로 수립된 한국형 ODA 모델이 바라보는 산업투자 분야 ODA는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다.

CPS에서 도출된 산업 분야 프로그램은 에너지와 ICT 섹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이 중에서도 ICT 섹터 프로그램들은 주로 공공부문의 ICT 활용 확대와 전자정부 구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산업 분야라고 하기보다는 공공행정 분야로 분류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임소영 외, 2013). 반면, 한국형 ODA 프로그램들 중 산업 분야로 분류된 프로그램의 다수가 공업개발 및 무역과 관련된다. 산업 분야 한국형 ODA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한다는 의의를 지닌 KSP의 산업투자 분야 주제들과 유사하다. 이는 KSP 사업이 개도국의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어 개도국의 수요가 어느 정도 반영되었지만, 사업의 요청 단계에서 이미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에 특화된 사업들이 구상되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임소영 외, 2013).

이와 같은 산업 분야 ODA에 대한 관점의 간극¹²⁾은 두 정책의 수립과정과 접근법이 상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임소영 외, 2013). CPS의 경우, 현지 파트너 국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파악된 수요를 기본으로 하되, 우리나라 ODA 사업으로 지원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우리나라의 비교우위와 역량보다는 기 실시되었던 ODA 사업 경험의 유무와 사업의 성패 등이 중점 프로그램의 주요 선정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한국형 ODA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리의 비교우위 중심으로 개도국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들이 선정된 것이다 (임소영 외, 2013).

2. 산업투자 분야 KSP의 추진 현황

산업투자 분야로 수행된 KSP의 주제는 점점 더 다양해지는 한편 세분화되고 있다. 표 3은 지금까지 지원된 산업투자 분야 KSP 사업들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및 무역 정책, 중소기업 개발 프로그램들을 보여준다. 기 지원된 산업투자 분야 KSP 프로그램들이 한국형 ODA 프로그램들과 긴밀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12) CPS와 한국형 ODA의 프로그램들 간에 가장 큰 간극을 보이는 분야는 생산 부문임. 그러나 실제로 CPS 대상국들 자체의 국가개발계획에서 명시된 개발우선순위에서 생산 부문을 포함하는 산업투자 분야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 (임소영 외, 2013).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생산 부문 프로그램들이 향후 CPS 중점 프로그램들로 적극 고려될 필요가 있음

산업 정책 및 경영 프로그램은 산업단지/클러스터 조성, 산업개발을 위한 역량 강화/인프라 구축, 중점산업 육성 정책을 주로 지원하였다. 무역 정책 및 경영 프로그램에서는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구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소기업 개발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민간 역량강화와 금융 등 시스템 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표 3> KSP의 산업투자 분야 주요 유형 분석
- 산업 정책 및 경영, 투자 정책 및 경영, 중소기업 개발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KSP 지원 사업 유형	한국형 ODA 프로그램
산업 정책 및 경영	산업단지 또는 클러스터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단지 개발 •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구축 • 지역산업 개발 정책
	산업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및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표준화 및 인증체제 수립
	중점산업 육성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조성 • 산업개발 정책 자문 • 경공업 육성
무역 정책 및 경영	수출 활성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 로드맵 및 협상전략 전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인력 양성 • 통관시스템 개선 • 무역 관련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수출지원 기관 설립 및 운영
	경제자유구역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자유구역 운영
중소기업 개발	중소기업 육성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 전략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시스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중소기업 역량 강화	

출처 : 임소영 외 (2013)

IV. 산업투자 분야 KSP 사례분석

2014년 산업투자 부문으로 추진된 KSP는 UAE, 러시아, 불가리아, 태국, 페루, 에콰도르 등 모두 6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각 협력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산업투자 분야 KSP 주제는 <표 4>와 같다.

〈표 4〉

2014년 산업투자 부문 양자 KSP 정책자문 사업

국 가	자문 주제
UAE	수출 증대,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자유구역 운영, 녹색산업 육성, 중소기업·벤처 육성, 산업단지 개발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바롭스크 : 투자 매력도 증진, 투자유치 환경 개선 • 캄차카 : 경제발전촉진 구역 조성, 투자유치 환경 개선 • 연해 : 투자전략 검토 및 투자활동 지원 시스템 개선, 경제특구 조성운영 및 국토 전략계획 수립 경험 공유 • 사할린 : 경제특구 조성 및 운영, 투자유치를 위한 행정환경 개편 및 투자분야 인적자원 역량강화
불가리아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제도 수립,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지식기반경제 촉진, 공공정보 도입 및 제도 프레임워크 수립
태국	자동차산업, 디지털 콘텐츠-소프트웨어 산업 협력, 지역 식품산업 클러스터
페루	산업단지 개발 및 관리, 산학협력, ICT 정책, 과학기술정책
에콰도르	국가품질시스템 강화 - 표준인증, 소비자보호와 법정계량 제도 및 정책

출처 : 저자작성

2014년도 KSP는 2015년 중에 완료될 예정이므로, 산업투자 분야 KSP 사례는 2014년 KSP 산업투자 부문 총괄기관인 산업연구원이 2013년에 수행했던 KSP 자문 사업들 중에서 선정하여 살펴본다.¹³⁾ 산업연구원은 2013년에 페루, 에콰도르, 가봉을 협력대상국으로 하는 양자 정책자문과 글로벌 녹색 성장연구소(GGGI)와 공동으로 베트남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한 공동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이들 중 ‘페루의 지식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자문’과 ‘GGGI와의 공동컨설팅 : 베트남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전략 자문’ 사업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한다.

페루의 양자 정책자문 사업은 201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페루는 1차 제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여 지식경제로의 이행을 모색하고자, 페루 전략기획위원회가 주도하여 우리 정부에 KSP 사업을 요청하였다. 특정 업종이나 산업별로 자문이 이루어졌던 전년도와 비교하여 2013년 페루 KSP는 고부가가치와 지식산업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능별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는 중장기 경제전망 모델 수립지원, 바이오테크놀로지 R&D 계획 수립, 전략기획을 위한 지식관리시스템의 개발, 선진 산업인력 양성시스템 구축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였다. 2013년도 페루 KSP 사업은 기능에 대한 자문이 중심을 이루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양한 기관 간 협력관계의 강화가 특징이다.

13) 2013년 KSP는 세 부문으로 세분화되기 이전의 사업들로서, KDI가 총괄기관임

베트남 다낭시의 친환경 산업단지 개발전략을 자문한 GGGI와의 공동컨설팅은 다낭시의 요청에 의해 착수되었으며 다낭사회경제연구소(DISED)가 파트너 기관이 되어 수행되었다. 동 사업은 다낭수산물산업단지와 호아깜 산업단지의 폐수처리 방안을 포함한 기존 산업단지의 환경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낭 시에 위치한 기존의 6개 산업단지들 중 다낭시 산업단지 관계자들과 파트너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폐수오염 문제가 심각한 다낭수산물산업단지와 주변에 상수원이 인접해 있는 호아깜 산업단지를 자문 대상 산업단지로 확정하였다. 현지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이들 산업단지들의 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 2014). 한편, 현재 다낭시가 의욕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다낭하이테크파크(DHTP)의 첨단 산업단지화 및 친환경 산업단지화를 위한 전략을 공유하였다.

동 사업은 우리나라 국책연구원이 연구 수행을, 국제기구가 사업 발굴 및 네트워크 제공을 담당하여 사업의 상승작용을 볼 수 있었던 사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이는 KSP 공동컨설팅 본연의 취지와도 부합한다 하겠다.

2014년부터 양자 KSP 정책자문 내에 산업투자 부문이 구분되면서 비즈니스 측면의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 민간 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2014년 사업의 경우, 산업연구원과 KOTRA가 컨소시엄의 형태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투자 부문 KSP의 효과성을 최대화하고자 하였다. 즉, 산업과 투자 분야 연구를 수행할 연구진은 산업연구원이 중심이 되어 조직되는 한편, 현지 파트너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기업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KOTRA가 중심이 되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업 추진 체계는 KSP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각 기능별로 비교우위가 있는 국내 관련 기관들의 협력이 발휘될 수 있는 기회요인으로 작용한다.

V. 산업투자 KSP의 향후과제

KSP 수행 초기부터 지금까지 KSP의 주요 자문주제로 다루어져 온 산업투자 분야는 개도국의 자생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할 가장 유력한 주제이다. 아울러, KSP 사업을 통해 강화된 협력국과의 관계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의 진출을 도모하기에도 가장 적절한 분야이다. KSP가 시작되었던 10년 전에 비해 현재의 산업 동향과 개도국 여건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산업투자 부문 KSP의 중요성과 급변하는 국제 산업 정세를 고려할 때 동 부문 KSP의 수행에도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한 때이다.

첫째, KSP 수행방식과 보고서 양식을 다양하게 구상할 필요가 있다. 양자 KSP 정책자문의 경우, 대상 국가의 요청을 반영하여 일 년 단위 사업 내에서도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는 방식을 따른다. 때에 따라서는 주제들 간에 연계성이 매우 부족한 경우도 발견된다. 이는 사업을 요청하는 개도국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배려라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주로 일 년 단위로 자문 사업이 계획되고 수행되는 현재의 방식도 최근에 개선되고 있는 중이다. 사업의 발굴부터 사전타당성 조사 실시, 자문 수행, 정책자문의 사업화를 위해 요구되는 제반사항 지원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업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정책자문 사업을 다변화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주제를 정형화된 보고서 양식으로 다루려다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보고서의 내용이 유사해지는 현상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의 개발경험 공유라는 차원에서 보고서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삽입되는 각 주제에 대한 한국의 경험 파트에서 이와 같은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협력대상 국가가 무한하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내용의 중복을 가중시키는 요소이다. 따라서 KSP가 수행된 지 1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KSP 수행방식과 보고서 양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광범위한 주제를 개도국에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주제로 좁혀 나가서 자문 사업들끼리 차별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보고서 작성에 집중하기보다 파트너국과의 협력과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파트너국의 정책에 실제로 적용하여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주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비교우위에 대한 개도국들의 공유 요구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의 경제성장 과정에만 매몰되어 이를 일률적으로 개도국에 그대로 전수하는 자문은 파트너국에게 아무런 시사점을 줄 수가 없을 것이다. 특히 산업·투자 분야 자문은 각 국의 경제 발전단계나 조건, 시기별 다양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함은 물론 국제 무역구조나 산업정책을 함께 고려해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의 현장화가 중요하며, 현지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나라 주재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 산업투자 부문 KSP의 추진체계가 연구를 수행하는 산업연구원과 현지 네트워크 및 정보를 제공하는 KOTRA로 구성된 사례는 이와 같은 요구를 반영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재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활동하는 국제기구나 MDB, 또는 다른 국가들의 파견 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셋째, 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의 체계적인 평가에 대한 고려를 사업 초반부터 반영해야 한다. 사업의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중간, 종료, 사후평가의 주체와 평가 틀이 확립되어야 한다. 국제기구 또는 선진 원조기관들은 개발협력 사업에 있어서 영향 평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어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평가를 염두에 두고 사업을 설계한다. 우리나라도 개발협력 사업 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점차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2013년까지 KDI가 KSP의 유일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해온 바, KDI 자체의 KSP 평가가 곧바로 KSP 전체의 평가방식이 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총괄기관이 다양화되고 있으므로 KSP의 공식적인 평가 틀이 마련되어 공통된 방식으로 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체 KSP의 공통된 평가 틀의 구축과 함께 산업투자 부문에 특화된 평가 틀을 마련하여 평가의 완결성을 도모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투자 분야 지원의 평가지표에 관한 충분한 조사와 연구가 이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겠다.

참고 문헌

해외문헌

OECD (2006). Promoting Private Investment for Development, OECD.

국내문헌

기획재정부 (2014). 2013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 국제기구(GGGI)와의 공동컨설팅 : 베트남 정책자문,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2013). KSP Brochure,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5.2.4.),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10년사」 발간.

김석진, 김계환 (2007). 산업부문 국제 개발지원 경험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임소영, 김계환, 강지현, 윤정현, 민영진 (2013). 산업 분야 ODA의 동향과 이슈 분석, 산업연구원.

웹사이트

KSP 공식 웹사이트 (www.ksp.go.kr)

EDCF

II . 국제개발협력 동향

Post-2015 개발협력 시대의 책무성(Accountability) : 쟁점과 전망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김보경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Post-2015 개발협력 시대의 책무성(Accountability)

: 쟁점과 전망

김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부교수

김보경 (교신저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I. 들어가며

2015년 9월은 사회개발에만 국한되었던 새천년개발목표(MDGs) 시대에서 포괄적 쟁점영역을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시대로 전환하는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의 정치기회 구조변화의 정점이 된다. SDGs는 기존 MDGs의 사회개발과 함께 포용적 경제개발, 지속가능개발, 평화와 안보 등의 4가지 축을 중심으로 다양한 개발 아젠다를 통합하고 있다. 쟁점영역의 확대는 개도국에 한정되어 적용되었던 MDGs를 넘어서 SDGs가 개도국과 선진국을 공히 동등하게 적용 대상국으로 상정한다는 보편적 시각으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의 지점은 더 이상 국제사회가 다루어야 할 개발의 쟁점영역 확대가 아니다. 이미 너무나도 - 어찌보면 지나치게 확장된 - 야심찬 SDGs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더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우리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DGs와 SDGs가 책무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변화가 있고 앞으로 책무성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책무성에 대한 간단한 정의와 해석을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살펴본다.

II. 책무성(Accountability)의 정의와 개발목표에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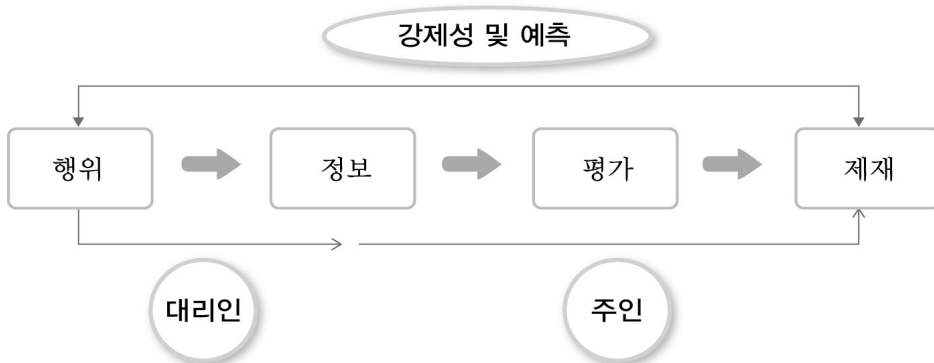
함의된 단일정의를 부재한 책무성(accountability) 개념은 사용처에 따라 정의가 분화되어 있다. 행위자로 하여금 행위에 대한 문책과정으로 해석되기도 하며, 권한을 소지한 주인(principal)이 개인, 단체 혹은 기구로부터 보고를 받아 대리인(agent)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정의되기도 하며, 행위에 대한 사유제시 요구능력이나 실적부진에 대한 처벌 부과능력을 뜻하기도 한다 (Fox and Brown, 1998; Edwards and Hulme, 1996; Goetz and Jenkins, 2002).

이 같은 책무성에 대한 다양한 이해는, 다음의 본질적 요소를 공통으로 갖는다. 우선, 외부의 주인 내지 정치적 권위체로의 보고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외부적(external)이다. 또한 한쪽에서는 대응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다른 쪽에서는 응수나 제재를 감수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교환과 상호작용이 수반된다. 마지막으로, 책무가 있는 이들에게 응답을 요구함으로써 상위를 주장할 수 있는 권위의 정당성을 암시하기도 한다 (Mulgan, 2000; Grant and Keohane, 2005).

책무성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행위자는 특정한 일련의 의무(obligation)와 기대치(expectation)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다. 이러한 행위에 대한 정보는 대리인 혹은 행위자 자체로부터 제공되거나, 주인의 요구에 의해 보고된다. 주인은 전달된 정보를 평가하며 이에 따른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제재를 대리인에게 가한다. 주인의 반응에 대한 예견이 가능한 한, 대리인은 부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행위 조정을 한다 (Steets, 2010). 이처럼 책무성의 성립요소로는 크게 책임성(responsibility), 응답적 책임(answerability), 그리고 강제가능성(enforceability)을 들 수 있으며, 이는 그림 1과 같이 초기 행위단계부터 최종 제재단계, 그리고 다시 제재를 예측한 행위로의 반복회귀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책무성의 내부 순환구조



출처 : Steets, 2010: 16 재구성

개발협력에서 논의되는 책무성은 특히 원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개발협력사업 수행 시, 원조의 물적·재무자원의 공여자(donor)와 집행과정을 담당하는 행위자(agent) 혹은 원조를 제공받는 모든 형태의 수원자(recipient) 간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책임 문제에 대한 책임추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중, 다수의 위임자와 행위자가 참여하는 다자원조의 경우, 책무성의 성립요소와 절차에 따라 책임의 소재를 따지는 것이 양자 간 원조보다 더욱 모호하며, 원조의 제공자와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민주적 운영에 따른 책무성 결핍(accountability gap)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한계가 내재되어 있다 (Radelet, 2006). 책무성 결핍, 즉, 국제기구에서 합의된 규범적 계획과 실행된 실제 프로젝트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합의된 공통의 개발목표(development goals) 중 책무성이 일부 포함되거나 암시된 목표 및 하위목표를 살펴봄으로서 개발협력에서의 책무성 논의동향을 보고자 한다.

III. MDGs, SDGs 그리고 책무성의 명문화

빈곤감소 문제가 국제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된 1990년대 후반 착수되어 2001년 채택된 MDGs는 국제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내딛은 첫걸음이었다. 합의된 개발목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이후 2003년 로마에서 개최된 제1차 고위급 포럼에서의 책임성(responsibility) 강조를 시작으로, 2005년 파리선언의 상호 책무성(mutual accountability)의 제시, 2008년 시민사회의 참여를 확대한 아크라 행동계획, CSO 효율성을 논의한 이스탄불원칙, 취약국가를 다룬 델리선언, 그리고 2011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고위급 포럼에서 강조된 파트너십과 포괄적 개발 등에 걸쳐 MDGs 8번에 암시된 책무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직·간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¹⁾

그러나 지구정부와 헌법이 부재한 상태에서 ‘개발협력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넓은 범위의 목표는 개별 행위자 혹은 국가에 책무성을 이행토록 하는 강제성을 띠는 데에 제한적이었다. 또한, 구체적인 책무성 이행을 위한 메커니즘 제시의 부재로 인해 목표달성이 어렵다는 비판이 존속되어 왔다. 책임전가(buck-passing)가 불가피한 다자참여 구조에서의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 수립

1) 웹주소 : <http://www.un.org/millenniumgoals/>, <http://www.un.org/en/ecosoc/about/mdg.shtml> (검색일 : 2015. 2. 25.)

과정에 있어서는 기존의 소수 이해관계층만이 참여하였던 MDGs 수립 때와는 달리, 수년 간 국제 시민사회의 포괄적인 의견수렴이 실시되었다.

이와 병행하여, 2012년 열린 유엔 지속가능발전회의(Rio+20)에서 합의된 SDGs에 대한 정치적 리더십의 역할이 부여된 고위급정치포럼, 실제적 목표수립을 위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을 신설하여 책무성 이행을 위한 목표가 보다 확대 및 구체화되었다 (UN-OWG, 2014).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총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기존 MDGs의 미해결과제를 포함하여 경제, 사회, 환경, 관련 논의를 아우름과 더불어, 책무성 제고를 골자로 한 이행수단, 거버넌스, 파트너십이 강조되었다. MDGs와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책무성 확대는 표 1과 같다.

MDGs의 8번의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은 지속가능발전목표 16번과 하위항목 5가지, 목표 17번과 하위목표 3가지에 대한 하위항목 7개로 분화되었음을 볼 수 있다. MDGs의 확장여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개발(development)’은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로 명시, ‘범지구적(global)’은 ‘모든 형태의(in all forms)’, ‘모든 수준의(at all levels)’, ‘모든 국가에서의(in all countries)’로 행위와 형태의 수준(level of analysis)이 구체화되었다. ‘파트너십(partnership)’의 주체는 ‘다중관계자(multi-stakeholders)’와 ‘공공, 민관, 시민사회(public, public-private, civil society)’로 설정하여 기존 유엔과 국가 주도의 발전목표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제도(institutions)의 강화가 여러 차례 강조된 점, 포괄성(inclusive), 참여성(participatory), 투명성(transparency), 그리고 빈번히 문제로 제기되던 이행의 일관성(coherence)과 지속성(consistency)에 대한 목표가 책무성(accountability)과 함께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는 기존 개발목표와 견주어 보았을 때,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표 1〉

책무성 관련 개발목표

이행수단, 거버넌스, 파트너십 및 책무성 관련 개발목표	
MDGs	8.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
SDGs	<p>16.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평화적·포괄적 사회 촉진, 모두를 위한 정의에의 접근 제공, 모든 수준에서의 효과적인, 책무성 있는, 그리고 포괄적인 제도 구축</p> <p>16.a 모든 수준에서의, 특히 개발도상국의 능력제고, 폭력방지, 테러와 범죄근절을 위해 국제협력을 통한 관련 국가제도 강화</p> <p>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수수의 대규모 감소</p> <p>16.6 모든 수준에서 효율적이고 책무성이 있으며, 투명한 제도 구축</p> <p>16.7 모든 수준에서의 대응적, 포괄적, 참여적, 그리고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p> <p>16.8 글로벌 거버넌스의 제도 내 개발도상국의 참여 확장 및 강화</p> <p>16.10 대중의 정보접근을 보장하고 국가법률과 국제적 합의에 준거한 근본적 자유 보호</p>
	<p>17. 이행수단의 강화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재활성화</p> <p>구조적 이슈</p> <p>- 정책과 제도적 일관성</p> <p>17.13 정책 조정과 일관성을 통한 글로벌 거시경제적 안정성 신장</p> <p>17.14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정책 일관성 고양</p> <p>17.15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개발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구현을 위한 개별 국가의 정책공간 및 지도부 존중</p> <p>- 다중관계자 파트너십</p> <p>17.16 모든 국가에서의, 특히 개발도상국에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지원 하기 위해, 지식, 전문성, 기술과 재원을 동원하고 나누는 다중관계자간 파트너십으로 보완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진작</p> <p>17.17 파트너십의 자원조달 경험과 전략에 기반을 둔 효과적인 공공, 민관, 시민 사회의 파트너십을 장려 및 촉진</p> <p>- 데이터, 감찰 및 책무성</p> <p>17.18 최빈개발도상국과 군소도서개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을 2020년까지 높이고, 국가적 맥락에서 유관한 소득,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주현황, 장애, 지리적 위치와 여타 특질에 따라 분화된 시의 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에의 접근성향상</p> <p>17.19 2030년까지 기존 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총생산을 보완한 지속가능 개발 진도산정 개발과 개발도상국에서의 통계적 역량강화를 지원</p>

출처 : UN-OWG Proposal for SDGs, 2014: 22-24

IV. 2015년 이후의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책무성 메커니즘 (Accountability Mechanism)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책무성 해석 및 적용범위의 확장에 대한 앞선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책무성의 이행 메커니즘에 대한 구체적 기술은 누락된 것이 Post-2015 개발목표의 아쉬운 한계이다. 책무성에 대한 세부적 구분은 주로 수직적-내부적(vertical-internal) 책무성과 수평적-외부적(horizontal-external) 책무성으로 나누어진다 (Goetz and Jenkins, 2001; Kim, 2011). 전자는 평등하고 투명성 있는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지도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서, 현존 거버넌스 구조의 개혁을 통해 위임자(해당 국가정부와 그 시민들)로 하여금 대리인에 책임요구가 가능하게 함으로서 개선시킬 수 있다. 후자는 행위 독립체 외부에 있는 행위자의 책무성으로서, 제도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외부 이해당사자에 대한 제도적 개방성과 이에 따른 책무성의 수평적 확산을 일컫는다. 수평적-외부적 책무성은 준독립(quasi-independence) 관리감독 기제나 권력의 분산, 옴부즈맨제도, 위헌법률심사제, 갈등관리절차 등을 통해 향상시킬 수 있다 (Weisband and Ebrahim, 2007).

새천년개발목표 체계 내에서의 책무성 메커니즘은 이행과정에 대한 필요성 인식이 낮았으며, 기제가 충분히 활용되지도 않았다. 개발목표는 강제성 기능보다는 감독과 감시의 기능에 충실하였으며, 정량적 평가지표에 따른 데이터에 기반을 둔 모니터링에 치중하였다. 이는 책무성 기제라기보다는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기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견제와 균형이란 책무성과는 별개로, 권위적 결정을 위해 상이한 제도적 이익구조를 가진 행위자들 간의 협업을 요구함으로써 행위자들로 하여금 정당한 선을 넘어서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이와는 반대로, 책무성 메커니즘은 필히 행위의 공개와 평가, 제재를 가하는 “사후의 반응”을 뜻하며, 책무성이 사전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제재에 대한 예측이 남용이나 오용에 대한 행위 억제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ant and Keohane, 2005).

〈표 2〉

세계정치 내 책무성 메커니즘

메커니즘	책무당사자	권력행사자	권력행사자 부과비용	예시
위계적	기구의 수뇌부	속관(屬官)	경력기회 부담	유엔 사무총장의 권위
감시적	국가	다자기구와 간부층	행동능력제한, 실직	집행위원회에 의한 세계은행과 IMF의 거버넌스
재정적	자금지원기관	지원수혜기관	예산제한	유엔 지불금 유보
법적	재판소	개인관리 혹은 단체	권위의 제한 및 형사처벌	국제형사재판소
시장	주주, 채권소유자 및 소비자	기업 혹은 정부	자본접근상실 혹은 높은 자본비용	세계금융위기 중 개발도상국정부에의 지원에 대한 자본시장의 거부
동료	동료 기구	기구 및 수뇌부	협력연계와 타인의 지원에의 영향	독립 해병대 인증기관의 평가그린피스-헬(사) 논쟁평가
대중평판	동료 및	개인 혹은 단체	평판, 위신, 자존의 확산효과	미국의 '연성권력'에 대한 일방주의의 영향

출처 : Grant and Keohane, 2005: 36 재구성

위와 같은 견제와 균형의 범위에 보다 가까운 새천년개발목표의 메커니즘을 보완한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책무성 메커니즘의 범주 내에 속하는 형태를 보인다. 표 2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듯이, 권력 행사자의 행위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메커니즘은 1) 위계적 책무성(hierarchical), 2) 감시적 책무성(supervisory), 3) 재정적 책무성(fiscal), 4) 법적 책무성(legal), 5) 시장책무성(market), 6) 동료책무성(peer), 7) 대중평판 책무성(public reputational)으로 크게 분류된다 (Grant and Keohane, 2005). 이 중, 16.a, 16.6, 17.14, 17.15 은 대중평판 책무성에, 16.5, 16.7, 16.10은 법적 책무성, 17.13은 재정 책무성, 17.16과 17.17은 동료 책무성, 17.18과 17.19는 감시적 책무성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총 12개의 하위항목을 통해 7가지의 범주 중 5가지의 책무성 메커니즘의 형태를 나타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새천년개발목표에서 보다 책무성 영역이 강조 및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무이행에 필수적인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 계급적 책무성과 비효율적, 비생산적 행위자를 축출할 수 있는 시장 책무성을 요구할 수 있는 요소가 부족한 실정이다.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진행된 공개작업반 회의가 종료된 후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최종 제안문 “The Road to Dignity 2030”

에서도 기술되었듯, 다양한 영역의 교차적이며 포괄적 의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의 규범-기반 정책 일관성과,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에 해당하는 개혁, 그리고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효율적 글로벌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이는 연대, 협력, 상호 책무성과, 정부 및 모든 이해관계당사자의 참여를 통해 이룩할 수 있다고 설명되어 있는 것을 제안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 (United Nations, 2014). 그러나 지속가능개발 목표에 사용된 연성 언어의 수식과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행위의 묘사는 책무성 이행으로의 직결보다는 책무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돕고, 효율성을 높이는 수준에서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0년 이후 지난 근 15년간 목격하였듯,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특정 목표에 한해서는 유엔 개발목표 설정을 통한 긍정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으나, 이는 그 이외의 다수목표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은 아님을 가늠할 수 있다 (Clemens, Kenny and Moss, 2007). 오히려, 개발목표란 피츠제럴드의 작품 ‘위대한 개츠비’ 상의 녹색 불빛처럼, 특정 결과에 도달하려는 개발목표 참여자들이 분투하기 위한 상징적인 집수점(point of concentration)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해석은 새천년개발목표와 뒤이은 2015년 이후의 개발목표, 그리고 2030년 이후 새롭게 설정될 개발목표의 역할을 모두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지향점이 아닌, 단순히 도구 서로 활용한다는 관점의 일환이다. 단기간 내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기대목표에 대한 ‘잠재적 기대비용(potential expectation costs)’을 줄이고,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원조피로를 넘어서 개발목표 이행 피로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발목표의 역할과 기대수준, 그리고 무엇보다 책무성 검토의 무게에 대한 재평가가 앞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 문헌

해외문헌

- Clemens, Michael A., Kenny, Charles J., Moss, Todd J. (2007). "The Trouble with the MDGs: Confronting Expectations of Aid and Development Success," *World Development* 35(5): 735-751.
- de Renzio, Paolo (2006). "Aid, Budgets and Accountability: A Survey Article," *Development Policy Review* 24(6): 627-645.
- Ebrahim, Alnoor and Weisband, Edward (eds.) (2007). *Global Accountabilities: Participation, Pluralism, and Public Et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s, Michael and Hulme, David (1996). "Too Close for Comfort? The Impact of Official Aid o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World Development* 24(6): 961-973.
- Fox, Jonathan A. and Brown, L. David (eds.) (1998). *The Struggle for Accountability: The World Bank, NGOs, and Grassroots Movements*. Cambridge, MA: MIT Press.
- Goetz, Anne. M. and Jenkins, Rob (2002). "Voice, Accountability and Human Development: The Emergence of a New Agenda," Human Development Report Office, Background paper for HDR 2002. New York: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 Grant, Ruth and Robert Keohane (2005). "Accountability and Abuses of Power in World Politic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99(1): 29-43.
- Keohane, Robert (2003). "Global Governance and Democratic Accountability," in David Held and Mathias Koenig-Archibugi (eds.), *Taming Globalization: Frontiers of Governance*. Cambridge: Polity Press.
- Kim, Taekyoon (2011). "Contradictions of Global Accountability: The World Bank, Development NGO, and Global Social Governance,"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8(2): 23-47.
- Mulgan, Richard (2000). "'Accountability': An Ever-Expanding Concept?," *Public Administration* 78(3): 555-573.
- Radelet, Steven (2006). "A Primer on Foreign Aid,"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Working Paper 92.
- Steets, Julia (2010). *Accountability in Public Policy Partnerships*, Palgrave Macmillan.

United Nations (2014). “The Road to Dignity by 2030: Ending Poverty, Transforming All Lives and Protecting the Planet,” Synthesis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Post-2015 Agenda.

United Nations Open Working Group (2014). “Open Working Group propos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United Nations Document A/68/970.

웹사이트

United Nation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http://www.un.org/millenniumgoal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nd post-2015 Development Agenda. <http://www.un.org/en/ecosoc/about/mdg.shtml>

EDCF

Ⅲ. 원조와 개발 논단

한국의 발전경험과 개발협력

박명호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

한국외대 상경대학 교수/학장

한국의 발전경험과 개발협력¹⁾

박명호

한국개발정책학회 회장
한국외대 상경대학 교수/학장

1. 국제개발원조와 지식공유

국제개발원조는 양차 대전 이후 전쟁 피해국과 신생 독립국의 재건 지원 차원에서 시작되었다. 2차 대전 이후 1990년대를 제외한 전 시기에 걸친 지속적인 원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여건은 별로 개선되지 못하였다. 개발협력의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으면서 점차로 수원국의 제도 및 정책 역량 강화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었다. 특히, 선진국으로부터의 일방적인 공여를 지양하면서 개도국 간 자원 및 지식공유를 통한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한다는 점에서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은 수원국 중심의 국제개발협력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지식공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세계은행과 OECD는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 사업을 시행하였다. 지식관리는 과거 선진국이 쌓은 공여 경험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정책입안자, 실무자, 연구자 등 다양한 개발관련 인력들이 온라인에서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식관리는 공여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지식 축적 및 관리보다는 그동안 각국이 수원국에서 진행했던 공여프로그램의 소개라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녔다. 그러다가 최근 OECD는 금융지원 및 기술협력에 이어 지식공유를 개발협력의 제 3의 축이라 칭하며 새로운 차원의 지식공유 사업을 추진 중이다. OECD는 2013년에 한국과 독일의 개발협력 경험 노하우를 조합하여 지식공유연대(Knowledge Sharing Alliance, KSA)를 만들었고 현재 KSA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지식공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1) 본고는 KSP 10년사, 거버넌스 연구 : 지표개발 및 응용 등의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한국의 국제 개발협력 사업은 1982년 KDI의 국제개발 교류 협력 프로그램(International Development Exchange Program)과 함께 시작하였다. 국제개발교류 협력프로그램은 개도국의 주요 인사를 초청해 한국의 개발경험을 알리고 그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이후 1987년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1991년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설립하면서 국제 개발협력 사업은 본격화 되었다. 정부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발협력 사업을 단순히 빈곤국에 대한 경제 지원뿐만 아니라 중소득국과 자원부국 등 다양한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정부는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협력대상국의 여건과 정책수요를 충실히 반영하는 새로운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2004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사업이 출범하였다. KSP는 지식공유 및 정책자문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력대상국과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려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 협력 사업이다. 기존의 원조사업이 금융지원, 물적 공여, 기술지원을 통한 절대빈곤 완화에 기여하였다면 KSP는 수원국의 역량 개발 및 주민 의식 함양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개발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하여 학계의 가장 큰 관심의 하나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개도국에 정책자문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책자문 사업은 이론적 관점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입장에서 매우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특정 국가의 역사적 발전 경험을 토대로 하는 정책자문사업의 중요성은 이미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도 강조되었다.

II. 한국의 발전경험

한국의 발전과정은 역사적으로 매우 특수한 상황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한국의 발전경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 정책자문 사업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한국의 발전경험이 협력대상국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우리의 특수한 발전경험에 대한 성공 및 실패 요인에 대한 보편적인 연구를 토대로 협력대상국의 현지 상황을 고려해 정책 자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발전과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어서 어떻게 하면 현지 상황을 고려한 정책자문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

1. 제조업 위주의 고속 성장

한국의 발전경험 중 과연 무엇이 협력대상국의 정책 및 제도 관련 역량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자. 우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인정받는 직접적인 이유는 한 세대 이상에 걸친 장기적인 경제성장이라 할 수 있다. 성장의 내용 측면에서 볼 때 초기에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였지만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민간 중심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ngus Maddison (2010)이 작성한 장기시계열 통계를 가지고 한 세대에 걸쳐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한 나라를 찾아보았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가정하고 한 세대에 걸쳐 국민소득의 규모가 5배 가량 증가하려면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률은 5.5% 가량이 되어야 한다.

1950년 이후 전 세계의 국가를 대상으로 30년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이 5.5% 이상 증가한 나라는 11개국으로 나타났다. 11개 국가 중에서 적도기니, 오만, 리비아, 보츠와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원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한국, 타이완, 중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은 모두 아시아 국가이다. 아래의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30년 기간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시기는 1965년에서 1995년 기간으로 당시 연평균성장률은 7.0%에 달했다. 그 결과 동 기간 1인당 국민소득은 1,436달러에서 11,850달러로 7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1〉 1950년 이후 한 세대에 걸쳐 고속 성장한 국가

(단위 : 1990 International Geary-Khamis dolla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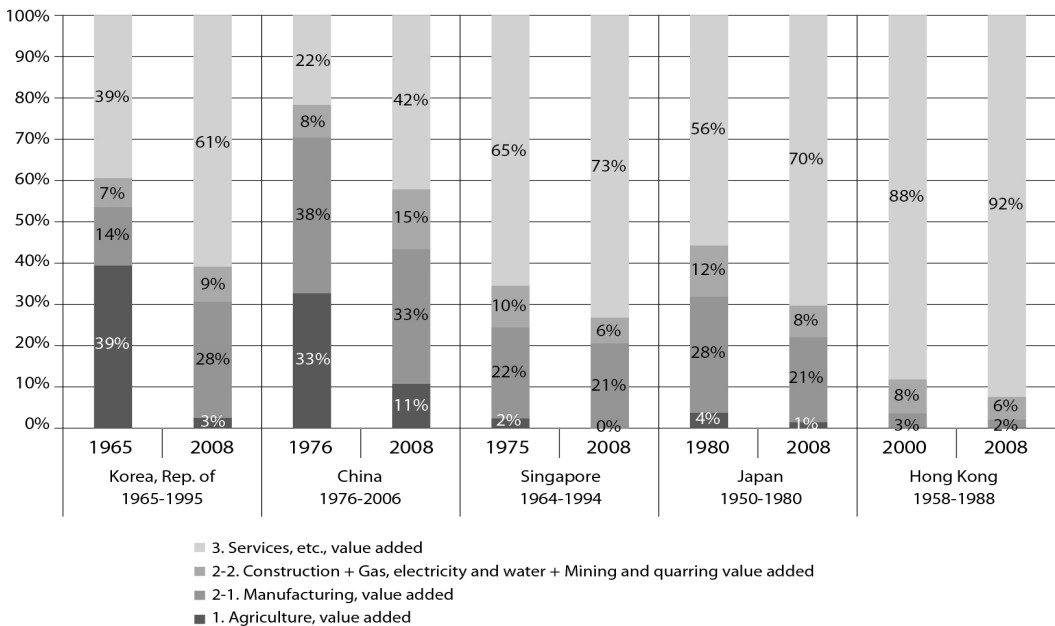
순위	국가명	고성장기간(30년 단위)				2008년 1인당GDP	국부대비 자연자원 비율
		기간	시작년도 1인당GDP	마지막년도 1인당GDP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1	Equatorial Guinea	1974-2004	1,128	16,416	8.9	22,049	0.309
2	Oman	1955-1985	766	6,545	7.1	8,332	0.523
3	Libya	1950-1980	857	7,272	7.1	2,994	--
4	South Korea	1965-1995	1,436	11,850	7.0	19,614	0.011
5	Botswana	1960-1990	403	3,304	7.0	4,769	0.092
6	Taiwan	1963-1993	1,545	11,929	6.8	20,926	--

순위	국가명	고성장기간(30년 단위)				2008년 1인당GDP	국부대비 자연자원 비율
		기간	시작년도 1인당GDP	마지막년도 1인당GDP	1인당 GDP 연평균 증가율		
7	China	1976-2006	85	6,048	6.5	6,725	0.209
8	Singapore	1964-1994	2,541	18,005	6.5	28,107	0.000
9	Japan	1950-1980	1,921	13,428	6.5	22,816	0.004
10	Saudi Arabia	1950-1980	2,231	13,217	5.9	8,435	0.664
11	Hong Kong	1958-1988	2,924	16,716	5.8	31,704	0.000

출처 : Angus Maddison, 2010 자료를 토대로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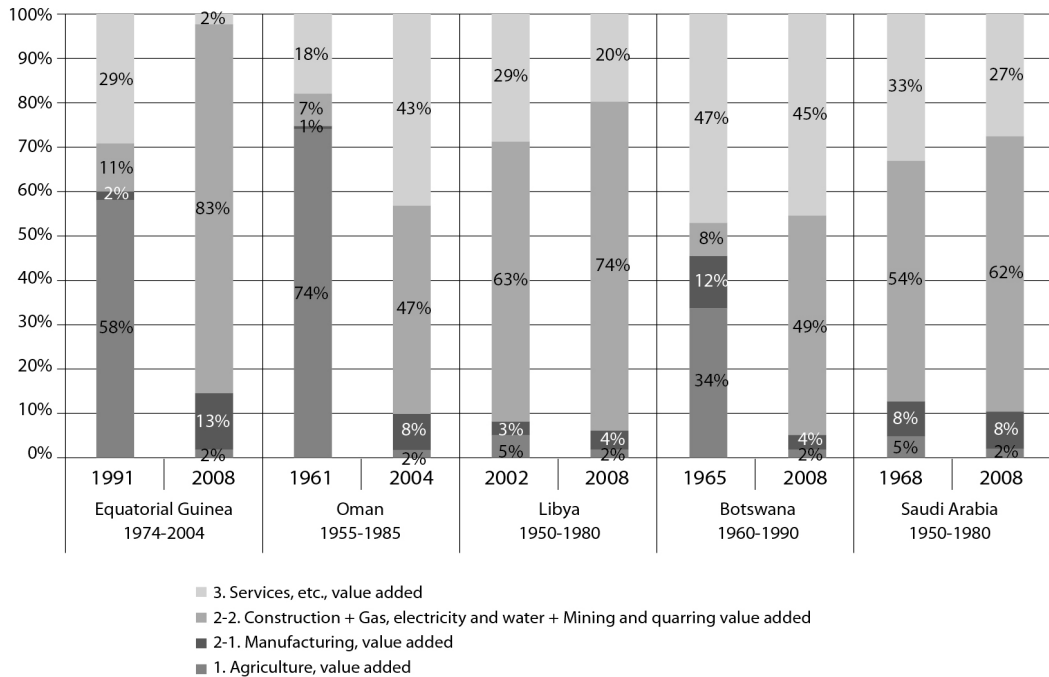
아시아 국가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주된 이유의 하나는 이들 국가가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아시아 국가 중 제조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싱가포르도 국민소득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를 넘으며 (그림 1 참조) 한국은 2013년 기준 31.1%로 중국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은행, 2014: 24).

〈그림 1〉 고속 성장국가의 산업구조 변화 : 산업화 성공 국가



출처 : WDI 자료를 토대로 계산

〈그림 2〉 고속 성장국가의 산업구조 변화: 자원부국



출처 : WDI 자료를 토대로 계산

한편, 한 세대에 걸쳐 고속성장을 이룬 국가 중 적도 기니, 오만, 리비아, 보츠와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자원부국은 국민소득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산업화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그림 2 참조). 그리고 이들 국가의 경우 자원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고속성장 시기가 지나면 성장세의 둔화 또는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한 세대에 걸쳐 고속성장을 이룬 국가는 자원부국을 제외하고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성과는 가장 괄목할만하다. 1965년에서 1995년까지 30년 동안의 고속성장 시기이후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도 유연성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산업화 시기 이후에는 민주주의 측면에서도 성공적이었기 때문이다.

2. 민주주의의 달성

한국의 민주주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한국의 민주주의 전통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역사적으로 매우 짧다. 그렇지만 한국의 민주주의는 경제성장에 결코 뒤지지 않는 성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의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는 대부분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므로 이런 잣대로 한국의 민주주의를 평가하는 경우 한국을 포함한 비 서방 국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수준 또는 개선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EIU의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를 살펴보았다. EIU의 민주주의 지표는 비교적 최근인 2007년에 만들어졌으므로 장기 추세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일국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파악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EIU의 민주주의 지표 작업을 총괄하였던 Laza Kekic (2007)에 따르면 EIU의 민주주의 지표는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그리고 정치 문화로 구성된다. 동 지표는 전 세계 192개 국가 중 27개 소규모 국가를 제외한 165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조사한 결과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국가는 20여개 국가에 그친 반면,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가 50여개 국가로 나타났다. 나머지 절반의 국가는 독재 및 하이브리드 형태로 구분되었다.

민주주의 지표를 처음으로 만든 2007년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완전한 민주주의에 속하는 국가는 스웨덴, 아이스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룩셈부르크, 호주, 캐나다, 스위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독일, 오스트리아, 몰타, 스페인, 미국, 체코, 포르투갈, 벨기에, 일본, 그리스, 영국, 프랑스, 모리셔스, 코스타리카, 슬로베니아, 우루과이 등 28개 국가로 조사되었다. 이들 국가는 대부분 OECD 회원국이지만 모리셔스, 코스타리카 등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도 포함하였다. 한편 한국은 54개 국가로 구성된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 한국의 순위는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 중 3위로 전체 민주주의 국가 순위로는 30위에 해당하였다.²⁾ Democracy Index 2008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2)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칠레, 한국, 타이완, 에스토니아, 이태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IU(2007) 참조

국가를 30개 선정하였고, 한국은 그 중 28위를 기록하여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았다. 이후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에 속하며 민주주의 지수 수준 역시 20위 가량으로 개선되었다.

결과적으로 비교적 민주주의 정의를 까다롭게 정의하여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민주주의 수준을 측정하는 EIU의 민주주의 지수를 보더라도 한국의 경우 완전한 민주주의를 이룬 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이와 같이 한국은 해방 후 70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라 할 수 있다. 한국이 개도국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은 위기관리 능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성장과정에서 수차례의 위기를 경험하였다. 한국은 1970년대 초반에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 처했다. 한편으로 당시 한국의 대다수 기업은 급속히 증가한 사채의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경제 체제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사채동결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생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에도 정부 주도하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위기를 극복하였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정부는 강도 높은 4대 개혁 조치를 도입하였고, 국민 역시 금 모으기 운동 등을 전개 국제사회에 강한 인상을 남겼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에도 한국은 위기관리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받는다. 선진국 중 상당수의 국가는 신용등급이 하락했지만 한국의 신용 등급은 상승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무역의존도가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의 재정 위기를 겪으면서도 신용 등급의 향상을 이루었다는 점은 특히 높이 평가받는다.³⁾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위기관리 능력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보다 나은 성과를 보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가하였다.

3) OECD 34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2007년 말부터 2012년 말까지 한국의 신용등급은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기준 가장 많은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한국에 대한 무디스 신용등급은 A2에서 Aa3로 2계단 올랐고 S&P는 A에서 A+로, 피치는 A+에서 AA-로 각각 1계단 높아졌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경제의 지속적 성장뿐만 아니라 대외 측면에서 안정성을 유지한 결과 OECD 회원국 가운데서도 시장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우수한 성과를 드러냈다. 그리고 시민사회가 성숙하면서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세계인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적으로는 증가하는 가계 부채, 신용불량자를 포함한 새로운 빈곤층의 확대, 성장잠재력 약화 등 국내적으로는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고속성장을 이룩하였던 동아시아 국가 중 중국, 홍콩, 싱가포르의 발전경험은 경제 규모, 사회체제 등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개도국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민주화 그리고 위기 극복 역량을 모두 보여준 한국은 개도국에게 유용한 모델로 부각된다. 더욱이 한국은 대다수 개도국과 유사하게 피식민 지배 및 내전을 겪은 상황에서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개도국에게 희망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선진국과 차별화 되면서도 개도국에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은 과거 선진국이 전개하였던 금전적 지원 및 기술협력 중심의 개도국 지원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우리의 발전경험을 토대로 지식 공유 및 협력 중심의 개도국 지원을 주도하기를 기대한다.

Ⅲ. 한국의 위상 재점검 : 거버넌스 관점에서 바라보기

한국은 지난 70년 기간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다. 특히 성장, 위기관리의 측면에서 놀라운 성과는 한국의 시장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은 경쟁력을 갖춘 시장경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인의 높은 시민의식은 한국 사회에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개방화 및 선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아직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다 체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최근 KDI는 거버넌스 관련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중에서 박명호 외 (2015)는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표체계를 수립하였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위상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⁴⁾ 한 국가의 역량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박명호 외 (2015)에서는

거버넌스의 연구범위를 국가기관, 시장, 시민사회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국가기관역량은 입법, 사법, 행정 역량으로 구성되고, 시장은 산업경쟁력, 시장기반 및 규제로 구성된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사회자본, 참여 및 복지/분배로 구성된다. 이를 토대로 세부 지표내용을 만들어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의 영역별 지수값 및 연평균 성장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5년 이후 지금까지의 연평균성장률을 비교해보면 시장영역은 연평균 2.37%의 증가율을 기록해 가장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어서 국가기관역량과 시민사회가 각각 연평균 1.24%, 0.19%를 기록하였다. 한편, 시기별로 살펴보면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과를 보였지만 국가기관 역량은 2000년대 초반에 가장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정부가 주도하였던 개혁 조치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시민사회의 경우 전체적으로 미흡한 성과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 한국의 거버넌스 영역별 연평균 변화율

구 분	평 균 값			연평균 변화율 (%)		
	연도	OECD	한국	기간	OECD	한국
국가기관 역량	1995년	0.575	0.433	1995-2000	0.19	-3.15
	2000년	0.580	0.370	2000-2005	0.85	6.21
	2005년	0.606	0.505	2005-2012	0.01	0.82
	2012년	0.606	0.535	1995-2012	0.31	1.24
시장	1995년	0.376	0.406	1995-2000	2.36	1.43
	2000년	0.423	0.436	2000-2005	1.50	2.46
	2005년	0.456	0.493	2005-2012	1.56	2.96
	2012년	0.509	0.607	1995-2012	1.78	2.37
시민사회	1995년	0.443	0.295	1995-2000	0.22	0.21
	2000년	0.448	0.298	2000-2005	-0.19	-1.20
	2005년	0.444	0.280	2005-2012	-0.05	1.16
	2012년	0.442	0.304	1995-2012	-0.01	0.19

출처 : 박명호 외, 2015: 145

4) OECD 31개국을 대상으로 1995년에서 2012년 기간 패널 데이터를 LSM 방법으로 정규화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의 위상을 OECD 회원국 내 순위로 파악한 결과⁵⁾ 한국의 국가기관역량은 2012년 15위/22개국(위로부터 68.2%)로서 전체 대상국 가운데 하위권에 속하였다. 이는 법적역량과 행정역량이 모두 하위권인 23위(74.2%)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장역량은 2012년 5위/31개국(16.1%)로서 3개의 대분류 영역 중 가장 높은 순위를 보여주었다. 특히 중분류 산업경쟁력은 미국에 이어 2위(6.5%)를 차지하여 시장의 상위 수준 유지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 시민사회의 역량은 2012년 18위/21개국(85.7%)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중분류인 복지/형평은 전 기간 중 31개국 중 28위(90.3%)에 머물러 시민사회 지수 순위 향상을 억제하였다.

한편, 국가기관, 시장, 시민사회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변수들 간의 시차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인 교차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1인당 국민소득과 국가기관 역량 영역의 중분류 지수인 입법역량, 행정역량, 정치역량 간의 교차상관 계수를 살펴본 결과 입법과 행정영역의 역량 발전은 소득의 증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으나 정치역량의 발전은 여타 국가기관역량의 발전보다는 더디게 일어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장역량과 국가기관역량 간의 교차상관관계의 경우 시장과 입법역량, 시장과 행정역량은 동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장은 정치역량에 선행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시장역량이 정치역량을 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시민사회 역량은 입법역량, 행정역량, 그리고 정치역량 모두에 후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밖에도 거버넌스가 소득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2단계 추정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추정 결과 국가기관역량, 시장, 시민사회 모두 국민소득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다 높은 수준의 거버넌스를 보유한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높은 일인당 국민소득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표체계를 활용하여 정책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한국의 순위와 위상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9개 소분류에서 선택한 9개 정책 변수를 대상으로 2012년 Raw Data 값을 10% 증가시켜 변화된 한국의 순위 및 위상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경우 정책 변수가 10% 개선되었을 때 한국의 순위는 다소 상승하지만 한국의 위상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는 한국의 거버넌스 위상을 향상시키는데 10%의 개선만으로는

5) 지수별로 대상국가수가 다른 경우 있어 순위백분율도 표시하였다.

6) OECD는 회원국의 수준을 상중하로 나눌 때 상위 30%, 중간 40%, 하위 30%로 구분한다. 위상변화는 지표의 수준을 10% 개선시킬 때 과연 중간 또는 하위에 속하는 지표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가능한지 살펴보는 것을 의미한다.

부족함을 시사한다. 그러나 시장규제와 고용률을 개선하는 경우 한국의 순위를 높이고 위상 제고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지표를 활용한 거버넌스 연구는 한국의 위상을 증거에 기반하여 보여주고 있다.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 결과 한국의 시장성과는 국가기관 역량 및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비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성과를 구성하는 요인 중 산업경쟁력은 최상위권이지만 시장기반이나 규제는 중위권으로 산업경쟁력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경쟁력은 시장 고유의 역량이라는 점에서 시장 자체의 역량을 보여준다. 그러나 시장기반은 시장과 시민사회와 교감이 요구되는 영역이고 규제는 국가기관과 교감이 필요한 영역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가기관과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요청된다. 그리고 교차상관분석에서 확인하였듯이 시장역량은 행정, 입법 및 정치역량과 일정한 관계를 갖고 움직인다. 이는 결국 시장 하나만 성장해서는 국가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OECD 국가 중 선도적인 국가가 되려면 국가기관 및 시민사회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임을 새삼 보여준다.

IV. 마무리

한국의 협력대상국과 지식공유 사업은 한국 경험의 일방적인 전달 사업이 아니다. 한국은 협력대상국과의 지식공유를 통해 한국의 위상을 다시 점검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 지속적인 고도성장,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민주주의의 달성을 이루었다고 평가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룬 성과를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시장 고유의 영역을 제외하고는 아직 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거버넌스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국가기관의 역량 강화 및 보다 성숙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한층 더 노력해야 한다.

한국의 지식공유사업은 협력대상국에게 우리의 발전경험과 관련된 지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러므로 과거 발전과정에서 가장 우수한 성과를 보였던 분야에서의 성공 요인을 중심으로 지식공유사업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부 개도국의 경우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제 문제만을 분리해서 문제를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물론 시장성과를 제고시키기 위한 경제성장 전략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일부 자원부국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기간에 걸친 고속성장은

조건만 허락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성장에만 치우친 정책만으로는 발전을 이루는데 한계를 지닐 수 있다. 경제성장은 국가기관의 역량강화 및 성숙한 시민사회의 함양이 동반될 때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방향의 정책자문은 협력대상국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요청되는 정책 방향이라는 점에서 지식 공유 사업은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참고 문헌

해외문헌

Laza Kekic (2007).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s index of democracy, EIU.

Maddison Angus (2010). Historical Statistics of the World Economy: 1-2008, AD.

국내문헌

박명호 외 (2015). 거버넌스 연구: 지표개발과 응용,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은행 (2014). 알기 쉬운 경제지표해설, 한국은행.

웹사이트

EIU. Democracy index, 각년도.

WDI. Manufacturing, Value Added.

EDCF

IV. 공적개발원조기관 분석

중국의 대외원조와 중국수출입은행의 유상차관

이지언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선임조사역

중국의 대외원조와 중국수출입은행의 유상차관

이지언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선임조사역

I. 서론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설립과 동시에 대외원조를 시작하여 원조역사가 60년이 넘었다. 이러한 중국의 원조역사에서 대외원조가 본격화된 시점은 '94년 중국수출입은행이 설립되어 유상차관이 도입된 이후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중국 ODA에서 유상차관이 가지는 의미가 크다 (권율, 박수경, 2010: 12). 최근에도 중국정부는 일대일로(一帶一路)¹⁾ 국가전략관련 유상원조 규모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²⁾하는 등 향후 중국수출입은행 유상차관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중국 특색의 유상차관운영방식은 개발금융 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도모하고 있는 EDCF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의 원조역사와 원조현황, 유상원조 운영현황, 그리고 특히 그 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중국수출입은행의 유상원조 업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국의 원조

1. 중국 대외원조의 역사

중국의 대외원조는 일반적으로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 원조정책과 시스템의 큰 변화가 있었던 1995년 이후, 2000년 이후 대외원조 발전 심화시기로 구분하지만, 본고에서는 개혁개방 이전 대외원조 원칙이 정립된 시기를 재구분하여 모두 5단계의

1) 일대(一帶)는 중국 중서부와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신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일로(一路)는 중국 남부와 동남아를 연계하는 해양실크로드를 의미하는 시진핑 정부의 대내 개발 및 대외 진출 국가전략으로 인프라구축을 통한 아시아 국가간 연결성(Connectivity) 강화가 핵심과제임

2) 2014. 12. 10자 中国新闻网 보도에 따르면 12월 8일, 상무부가 개최한 《대외원조관리방법》 설명회 석상에서 상무부 대외원조사(援外司) 부사장인 俞子荣이 국가전략 및 수원국의 수요에 따라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관련 중점수원국에 대한 원조확대방침을 천명함

전개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각 단계는 대외원조의 시작시기 (1950년~1963년), 대외원조 이념의 정립시기 (1964년~1978년), 대외원조의 조정 및 초기 개혁시기 (1979년~1994년), 대외원조의 개혁 심화시기 (1995년~1999년), 대외원조의 전방위 발전시기 (2000년~현재)로 볼 수 있다.

가. 대외원조의 시작 (1950년~1963년)

중국은 1950년 신중국 설립 직후 反미, 反제국주의 외교노선에 따라 북한 및 베트남에 대한 군사 및 물자원조 제공을 시작으로 대외원조를 시작하였다. 1955년 인도네시아 반동에서 개최된 아시아 아프리카 컨퍼런스를 계기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민족해방운동(National Liberation Movement) 지원에 관심을 가지면서 1958년 10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중국의 주요 원조대상국은 독립투쟁 중이거나 신생독립국인 저개발 사회주의 국가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기도 하였다.³⁾ 이 시기는 원조에서도 사회주의 이념이 중요한 가치로 작용했던 시기로 원조시작 이후 1964년까지의 총 원조금액 58.9억 위안 가운데 88%에 해당하는 52억 위안이 사회주의 국가에 제공되었다.

나. 대외원조 원칙의 수립 (1964년~1978년)

1960년대 중국과 소련의 이념대립⁴⁾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소련의 수정주의에 반대 입장에 섰다. 국제무대에서의 고립을 피하기 위하여 3세계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강화 하였고 중국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역시 본격화되었다.⁵⁾ 특히, 1971년 중국이 아프리카 국가들의 지원에 힘입어 UN에 재가입한 이후 1978년까지 중국의 대외 원조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드라마틱한 증가세를 보였다. 탄자니아-잠비아 간 철도건설사업 10억불 지원 등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규모도 크게 확대되었다. 그러나 당시 원조규모가 한 해 국가재정의 6.92%에 달하는 등 (Global Environmental

3) 중국은 1956년 6월 21일 캄보디아 정부 앞 경제원조제공을 승인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신흥독립 국가에 대한 원조를 시작함

4) 마오쩌둥(毛澤東)의 교조주의(教條主義)와 흐르시쇼프의 수정주의(修正主義)간의 대립으로 소련이 당시 경제정책 실패로 인해 서양식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경제개혁을 시도하자 공산주의 원리 이념정강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중국과 첨예한 이념대립이 발생함

5) 중국은 1956년 5월 30일 이집트와의 외교관계 수립을 시작으로 1970년까지 20여개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관계를 수립함. 마오쩌둥은 '혁명에 성공한 인민으로서 현재 해방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는 인민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 중국 국제주의의 의무'임을 강조했으며, 1974년 2월 잠비아 Kenneth Kaunda 대통령과의 회담 '3개의 세계' 이론을 언급하고 제3세계 단결을 중국의 국제외교 전략으로 결정함

Institute, 2013: 80), 국가의 경제역량을 초과하는 수준이 되자 1975년 및 1977년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대외원조의 비중을 낮출 것을 결의하기에 이르렀다. 1978년 중국은 베트남과 알바니아 등에 대한 원조를 중단하였으며 대신 상대적으로 지출부담이 적은 기술협력 원조를 확대하였다. 한편, 이 시기는 중국이 대외원조의 원칙을 정립한 시기로, 1964년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는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 순방시 평등, 자력갱생 등 오늘날까지 중국 대외원조의 기본원칙이 되고 있는 ‘중국 대외원조 기술원조 8항 원칙(中國對外經濟技術援助8項原則)’을 발표하였다.

다. 대외원조의 조정 및 초기 개혁 (1979년~1994년)

1978년말 개혁개방과 더불어 중국의 원조정책에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1985년 덩샤오핑(鄧小平) 국가주석이 개발도상국가와의 협력 확대를 주문하면서 중국은 대외원조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덩샤오핑의 이상주의 및 실용주의 지도사상을 좇아 사회주의 국가와만 교류해야 한다는 과거의 이념적 구속에서 탈피하여 보다 많은 국가들과 경제 및 기술원조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94년 말 원조대상국은 102개국으로 확대되었다. UN 개발기구의 원조사업도 지원하는 등 다자원조에도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는 개혁개방 이후 국내 경제성장 필요성 및 국제수지 적자 부담으로 대외원조의 우선순위를 수원국내 중소규모의 생산형 사업, 기술협력과 인적교류협력 분야에 두던 시기였다. 이에 따라, 원조규모는 축소되었으나 수원국과 원조사업의 수는 증가하였다. 또한, 생산형 사업을 우선분야로 장려하면서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으며,⁶⁾ 증가추세인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시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담당했던 대외경제무역부는 1983년 12월 《대외 경제원조 사업책임제 집행방법(對外經援項目承包責任制潛行辦法)》을 제정하고 투자책임제를 추진하는 등 원조사업 관리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였다.

6) '79년에서 '85년은 '71년부터 '78년 기간 대비 원조에서 개발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37%에서 78%까지 상승함

라. 대외원조의 개혁 심화 (1995년~1999년)

원조사업의 관리를 위한 개혁의 움직임은 앞서 1993년에 시작되었다. 당시 14차 공산당 중앙위원회를 통해 경쟁입찰제도, 상벌제도, 원조사업에 대한 계약책임제 등이 도입되었으며 무이자차관 상환금액을 재원으로 하는 대외원조 합작사업 기금⁷⁾이 설립되었다. 이후 1995년 대외원조관련 국가회의⁸⁾는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장기 저리의 유상차관업무 도입을 결정하였다. 중국의 유상차관은 원조에 필요한 자금을 중국수출입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되 저리 운용에 따른 이자차액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그 동안 국가재정에만 의존했던 원조자금 조달방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원조규모 확대추세 및 원조구조에서의 유상원조의 비중 변화가 설명해 주듯이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유상차관 도입은 중국 대외원조사에 새로운 국면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마. 전방위 발전 (2000년~현재)

2000년 이후 중국의 대외원조는 자원 확보, 해외시장 개척,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확립이라는 중국의 원조동기와 맞물려 국가의 경제정책 및 외교전략과 더욱 견고하게 연계되어 추진되었다. 이 당시에는 중국 대외원조 발전 계기가 되는 국제적인 사건들이 있었는데 우선 2000년 9월, 2015년까지 전세계 빈곤율을 1990년 대비 50% 감축시킨다는 UN의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그것이다. 중국은 MDGs 선언 직후 이와 연계된 개발원조 목표를 신속하게 수립·발표하여 국제 원조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드러내었다.⁹⁾ 둘째, 2000년 10월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개최를 계기로 아프리카의 경제발전과 원조문제를 역내 협의체의 의제로 포함시켰다. 포럼은 2000년 이후 매 3년마다 개최되었는데, 이로써 중국은 전체 아프리카 지역협의체와의 직접적인 대화채널을 확보하였고 효율적인 지역원조 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¹⁰⁾ 또한, 중국의 대외원조는 자원의 확보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7) 동 기금은 원조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자국기업의 해외투자 촉진을 위하여 중국의 중소기업과 수원국 기업간 제조업 합작 또는 합자법인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됨(본고의 IV. 중국유상차관의 특징과 시사점 참조)

8) 국무원이 소집한 동회의에서는 ①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한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 도입을 통한 원조자금조달 확대, ② 경쟁력 있는 중국기업과 수원국 기업간 원조사업에 대한 합작투자 추진, ③ 무역확대와 플랜트 수주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원조와 투자를 결합하는 대외원조전략을 실시함으로써 아프리카 시장을 개척한다는 결정을 내림(張海冰, 發展引導型援助, 中國對非洲援助模式研究 p.143)

9)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2005년 UN 창립 60주년 고위급회담에서 MDGs 달성을 위한 5가지 행동계획을, 원자바오 총리가 2010년 UN 고위급회담에서 6가지 개도국 지원방안을 발표

10)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성공적인 지역협력 메커니즘을 다른 지역에도 적용하고자 중국-아세안 정상회담, 상해협력 기구, 중국-카리브해, 중국-태평양도서국가, 중국-포르투갈어사용국 경제무역협력포럼 등을 잇따라 설립하였으며 지역원조는 중국 대외원조의 큰 특징이 되고 있음

위하여 국가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진출정책(走出去)¹¹⁾과도 깊은 연관성을 보여 준다. 이 시기에는 대내외 정책과 결합한 전방위적인 대외원조를 전개함으로써 원조 규모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2004년부터 2009년 기간 중 원조규모는 연평균 29.4%의 증가세를 보였다.¹²⁾

이상을 통해 살펴본 신 중국 수립이후 대외원조 정책은 단계적인 변화를 겪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대외원조의 목적이 이념적, 정치적인 색깔을 버리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유상차관 도입으로 원조의 방식 및 내용이 다양화되었다. 셋째, 중국은 평등과 상호이익, 내정불간섭 등 중국특색의 원조원칙을 수립하였다. 넷째, 중국의 대외원조와 경제협력은 무역 및 투자와 결합하여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 중국 대외원조의 원칙 및 관련규정

가. 대외원조의 기본원칙

중국이 외교무대를 통해 밝혀 온 원조원칙은 호혜평등, 상호이익, 내정불간섭, 수원국의 자력갱생 등으로 1964년 1월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의 아프리카 순방 당시 가나공화국 기자간담회 석상에서 대외경제기술원조 8항 원칙으로 최초 언급되었다. 이후 1983년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 4대 원칙에서는 평등과 상호이익, 실용, 다양한 형식, 공동발전을, 1996년 아프리카 국가와의 5대 협력원칙에서는 진정한 우정, 동등한 입장 및 내정불간섭, 상호이익 추구 및 공동발전, 긴밀한 대화와 협력, 미래지향을 주장하였다. 2011년 최초 발행된 중국의 원조백서에서도 중국 원조의 특징을 수원국 자체의 개발역량 지원, 정치적 조건 없는 원조, 평등, 상호이익 및 공동발전, 실용주의, 개혁과 혁신으로 설명하는 등 상기 원조원칙을 일관되게 재확인하고 있다.

11) 走出去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중국제품의 해외진출 장려 정책으로 1992년 장쩌민 국가주석이 14차 당 보고에서 ‘兩個市場, 兩種資源(두 개의 시장, 두 가지 자원)’을 주장하면서 시작됨. 개도국에서 진행되는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등 대규모 원조사업은 중국산 설비의 수출, 중국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공사 수주, 용역 및 서비스 해외진출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

12) 중국상무부 대외원조정책 소개자료 (2011년)

Box 1. 대외경제기술원조 8항 원칙

1. 중국은 평등과 상호이익의 원칙하에 원조를 제공한다. 중국은 원조를 일방적으로 주는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상호적인 것으로 본다.
2. 중국은 대외원조를 제공함에 있어 수원국의 주권을 엄격하게 존중하고 어떠한 조건이나 특권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중국이 무이자 또는 저리차관 방식으로 경제원조를 제공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상환기일을 연장하는 등 수원국의 부담을 최대한 감축시킨다.
4. 중국의 대외원조 제공목적은 수원국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조성하기보다 수원국의 점진적인 자력갱생, 경제적인 독립발전에 있다.
5. 중국정부는 투자금액이 적고 회수가 빨라 수원국 정부의 수입이 증가하고 자금을 축적할 수 있는 건설사업을 지원한다.
6. 중국정부는 자체적으로 생산 가능한 장비와 물자 가운데 품질이 가장 우수한 제품을 국제시장 가격으로 제공하며, 만약 중국정부가 제공한 장비나 물자의 규격과 품질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교환 또는 환불을 보증한다.
7. 중국정부가 특정한 기술원조를 제공하는 때에는 수원국내 기술자가 해당기술을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8. 중국정부가 수원국에서 진행되는 건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한 전문가와 수원국의 전문가는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출처 :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概論 (1949-2000) p. 194, 필자번역

나. 원조관련 법규

중국은 60년 이상의 원조역사에도 불구하고 원조와 관련된 통일된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014년 12월 대외원조와 관련 최초의 통일규정인 《대외원조관리방법 (對外援助管理辦法)》이 제정되었다. 동 규정은 내용면에서 여전히 개발사업 관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으나 동시에 원조의 정의, 대상, 기본원칙, 담당부서와 업무, 원조방식, 절차, 사업관리, 법률책임 등 기초적이면서도 포괄적인 사항을 담고 있어 원조규모 확대¹³⁾에 따른 원조실시의 제도화, 사업관리의 체계화 및 규범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과거 사업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매관리, 참여기업 관리와 관련 실무사항들이 부령(部令), 지침, 통지 형태로 남발되었기 때문에 관련규정을 조회하기도 쉽지 않고 규정별로 상충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번 대외원조관리방법을 계기로 향후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는 원조관련 규정들도 정비되고 상위법인 조례 및 조례 세칙이 곧 개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 중국의 대외원조(2014)에 따르면 2010-2012년 기간중 대외원조금액은 1950-2009년 기간중 원조실적의 약 3분의 1 수준으로 중국의 원조규모가 크게 확대 추세임을 알 수 있음

III. 중국의 원조체계

1. 원조담당기관

중국의 대외원조는 중국공산당 인민대표대회와 국무원을 중심으로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중국수출입은행과 같은 원조집행기관의 유기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실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무부의 14개 사(司)와 국(局), 재정부와 외교부의 3개 하부조직, 23개 부처별 위원회 및 지방정부 상무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부부처 간 협의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가. 상무부

상무부(Ministry of Finance and Commerce, MOFCOM)는 2003년 대외경제무역 합작부로부터 원조업무를 인계받았다. 상무부내에서는 2008년 설립된 대외원조사(Department of Foreign Assistance)¹⁴⁾가 원조정책의 수립과 집행, 원조프로그램의 계획 및 추진, 정부간 협상, 원조사업 및 정부간 원조협약(Framework Agreement)에 대한 서명, 원조프로그램의 준비, 원조사업 실행 및 관리감독을 담당, 중국 대외원조 업무의 총괄 창구라 할 수 있다. 대외원조사는 14처 및 1개실(판공실, 종합처, 계획정보처, 법규처, 질량감독처, 국제교류합작처, 인력자원개발처, 아주1처, 아주2처, 아프리카1처, 아프리카2처, 아프리카3처, 서아시아/북아프리카/유럽처, 라틴아메리카처, 남태평양처)로 구성되어 있다.

〈표 1〉 중국의 대외원조 사업관리 관련 실무규정

구분	규정
상무부	대외원조 개발사업 시공임무 실시기업 자격인정방법 (對外援助成套項目施工任務實施企業資格認定辦法)
	대외원조 물자사업 실시기업 자격인정방법 (對外援助物資項目實施企業資格認定辦法)
	대외원조 개발사업 관리방법 (對外援助成套項目管理辦法)
	대외원조 개발사업 고찰관리규정 (對外援助成套項目考察管理規程)
	대외원조 개발사업 시공관리규정 (對外援助成套項目施工管理辦法)

14) 對外援助司이며 援外司라는 약칭을 사용함. 시는 우리나라 정부조직과 비교했을 때 局에 해당

	대외원조 개발사업 감찰설계 관리방법 (對外援助成套項目監察設計管理辦法)
	대외원조 개발사업 시공임무 입찰자격 심사규칙, 대외원조 개발사업 시공임무 평가업무 규칙 (對外援助成套項目施工任務投標資格審查工作規則, 對外援助成套項目施工任務評標工作規則)
	대외원조 개발사업 인원관리 실시허가 등기업무에 대한 통지 (商務部關於加強援外成套項目人員管理實施備案登記有關工作的通知)
	대외원조 개발사업 안전생산 관리방법 (對外援助成套項目安全生產管理辦法)
	대외원조 교육사업 관리규정 (對外援助培訓項目管理規定)
	대외원조 물자사업 관리방법 (對外援助物資項目管理辦法)
	청년지원자 선발관련 잠행관리방법 (援外青年志願者選派和潛行管理辦法)
재정부	대외원조 개발사업 시공감리비용 표준내부 잠행규정에 관한 통지 (對外援助成套項目施工監理取費標準內部暫行規定的通知)
	양허성차관 이자보조 잠행관리방법 (優惠貸款貼息潛行管理辦法)
	대외원조 개발사업 재무관리방법 (對外援助成套項目財務管理辦法)
위생부	의료원조인원 관리방법 (關於援外醫療工作人員管理辦法)

출처 : 각 부처 홈페이지

상무부 산하기관인 국제경제합작사무국(國際經濟合作事務局)¹⁵⁾은 17개의 하부조직(판공실, 종합심사실, 행정재무처, 제도감독처, 기술경제자문처, 사업예산관리처, 입찰관리처, 자질심사처, 아세안/남아시아처, 아주처, 동남아프리카처, 중앙아프리카처, 서아프리카처, 서아시아/북아프리카/유럽처, 미주대양주처, 가격심사관리처, 정보화관리처)에서 원조사업의 입찰, 원조기업 자격심사 등 원조실무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83년 설립된 상무부 산하기관인 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China International Center for Economic and Technical Exchange)¹⁶⁾는 중국 및 UN개발계획(UNDP), UN공업발전기구와의 협력업무를 담당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일반물자사업 입찰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5) 홈페이지내 공식영문명칭 없으며 合作司 라는 약칭을 사용함

16) 국제경제기술교류센터(国际经济技术交流中心)

이밖에도 국제무역경제합작연구원(Chinese Academy of International Trade and Economic Cooperation),¹⁷⁾ 국제상무관원연수학원(The 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 Officials)¹⁸⁾ 등이 각각 대외원조의 연구, 원조업무 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나. 외교부

외교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는 중국의 외교정책의 틀에 기초하여 원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원조와 관련한 다양한 부처간 협의체에 참여하는 한편, 국별 대외원조 전략 등을 국무원에 보고한다. 중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외교부는 특히 우대구매자금용으로 지원하는 대규모 원조사업에 개입한다고 한다. 실무적으로 우대구매자금용 사업은 국가간 정상회담 등 외교행사 준비와 관련 대규모 원조사업 수요가 발생하면 우선 외교부가 정치외교적 이익을 고려하여 국가별 원조방향 또는 지원분야, 추천사업을 정하고, 상무부가 수출입은행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검토한 뒤 관련 원조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중국수출입은행이 사업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 밖에 외교부는 원조업무 분야에서 군사원조와 긴급구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Box 2. 중국정부 내 원조관련 협의체

- 2000년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후속조치위원회로 21개 부처가 참여. 2003년, 2005년, 2008년, 2010년 4차례 회의 개최. 현재 외교부, 상무부, 재정부, 중국공산당중앙위원회 국제연락부 등이 포함된 27명의 성원으로 구성
-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 3개부처 대외원조업무 연동회의
- 상무부와 지방정부간 대외원조협력위원회
- 상무부 내 14개 부처 대외원조협력위원회
-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 자금, 감사,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대외원조사업감사위원회
- 상무부 대외원조사와 중국수출입은행 양허차관부간 연석회의
- 상무부, 외교부, 재정부 및 공산당중앙위원회 국제연락부, 국방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공안부, 국토자원부, 정보신식부, 농업부, 건강부(보건부)로 구성된 장관급 대외원조회의
- 상무부, 외교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간 긴급구호활동 연동회의

출처 : 黄梅波,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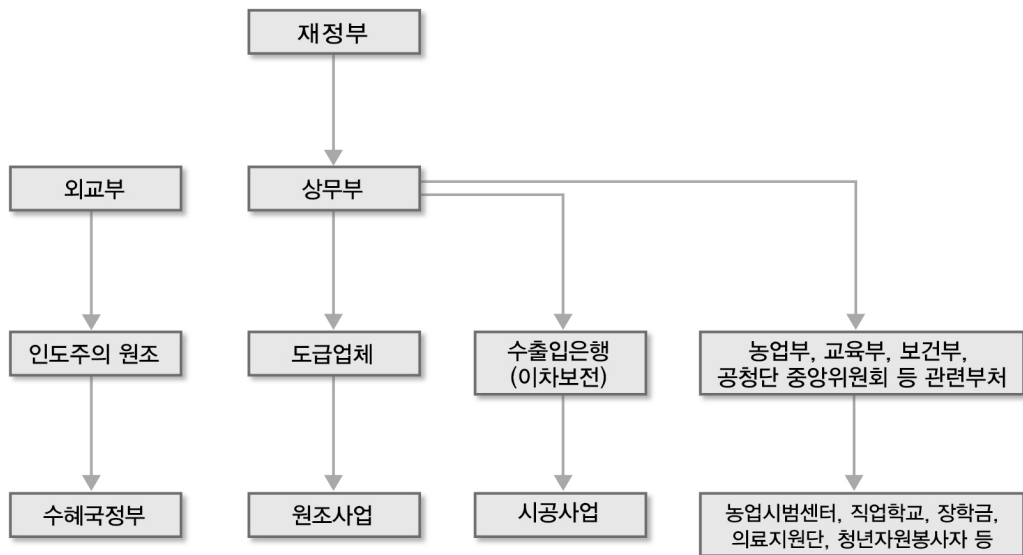
17) 상무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다른나라의 경제, 무역, 투자, 원조 등과 관련한 국별경험전략보고서 등을 발표

18) 상무부 산하 연수기관(商务部国际商务官员研修学院)

다. 재정부

재정부(Ministry of Finance)는 원조자금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을 관리한다. 2014년 상무부 예산보고에 따르면 상무부 앞 원조예산 배정액은 211억 위안으로 상무부의 연간 예산총액 257억 위안의 약 80%를 차지하였다. 재정으로 지원된 자금은 대부분 무상차관과 무이자대출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한편, 재정부는 원조분야 업무 가운데 채무탕감과 다자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그림 1〉 중국 대외원조자금의 지급과정



출처 : 周弘, 2008: 42, 권율, 박수경, 201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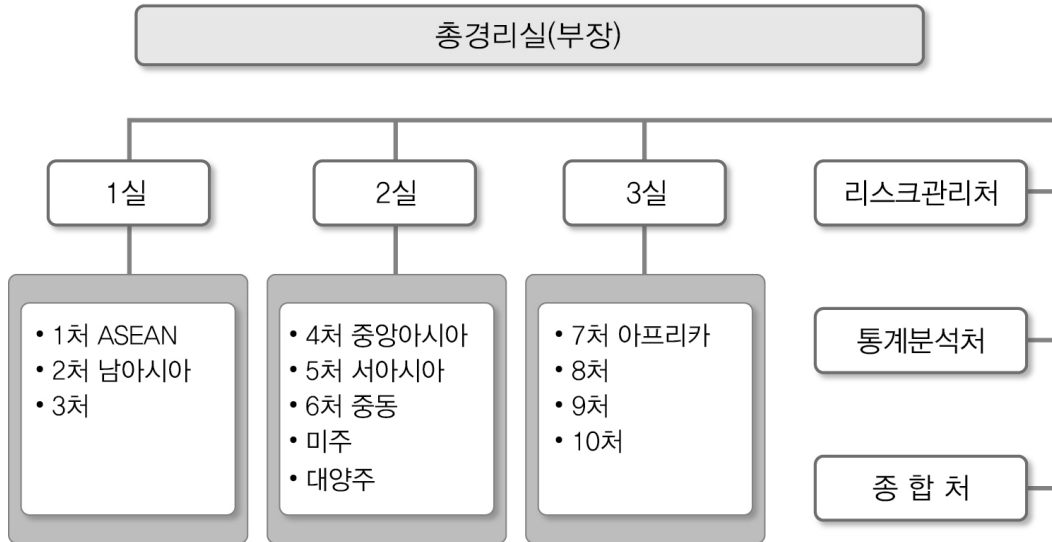
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수출입은행은 1994년 설립된 국무원 산하 국책금융기관으로서 자본재 수출 등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위한 수출신용기관이다. 자산규모는 약 2조위안(2013년 말 기준)이며 2014년말 현재 26개 부서, 25개 지점,¹⁹⁾ 2개의 해외사무소를 두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1995년부터 유상차관 업무를 취급해온 국내 유일의 유상차관업무 수탁기관으로 차관사업의 평가와 심사, 대출집행,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유상차관의 연간 대출규모는 중국인민은행이 상무부, 외교부, 중국수출입은행과 협의한 이후 국무원의 승인을 받고 있다.

19) 해외에 소재한 파리지점을 포함함

〈그림 2〉

양허차관부 조직도



출처 : 중국수출입은행 양허차관부 업무소개자료 (2013. 12. 11.)

마. 기타

기타 다수의 정부부처가 직간접적으로 원조업무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의료지원팀의 파견과 훈련 및 평가를, 농업부는 농업분야 원조사업의 심사를, 과학기술부는 개도국 기술지원 사업을 검토한다. 교육부는 교육원조사업과 외국학생장학제도 등을 담당한다. 공자학교(孔子學校)의 본부인 중국국가한어국제화 추진판공실(The office of Chinese language Council International)²⁰⁾에서는 중국어 교사 자원봉사자의 선정과 파견 업무를 담당한다. 젊은 자원봉사자 연합(The Chinese Young Volunteers Association)은 공산당청년연맹(共產主義青年團)과 민정부(ministry of civil affairs)의 지도·감독하에 해외파견 자원봉사인력의 선정과 훈련, 파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²¹⁾

20) 中国国家汉语国际推广办公室

21) 상무부가 2008년 개최한 원조관련 정부회의 참가부처는 24개였고 2012년 3월 개최한 원조관련 전체회의 참석 대상부처는 33개에 이른다. 이와 같이 정부 대부분의 부처가 원조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원조관련 각 부처/기구의 기능

구분		원조관련 기능
중앙부처	상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원조계획 초안 수립 - 차관 협상 및 계약체결 - 장기 원조계획 준비 - 원조사업의 모니터링 - 원조방식의 개혁
유관부처	외교부 정책계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원조계획 준비에 협조 - 경제 군사 원조의 부처별 협조 - 공산당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앞 정책 제안
	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자금 조달 및 집행계획 수립 - 원조기금의 관리
	농업부, 과학기술부, 교육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훈련, 파견인력 선발 등 의료지원, 농업기술 지원 등 부처별 관련 무상원조 사업 실행
	중국수출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성차관의 심사 및 대출
	중국국가개발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아프리카 개발기금 등 특별기금 수탁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무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할지역 정부 원조사업 관련 중앙부처와의 협력
해외정부망	수원국 대사관, 수원국내 경제대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조사업의 관리 - 수원국내 원조사업의 홍보

출처 : 필자 작성

2. 원조의 운영

가. 원조자금의 종류

중국의 원조자금은 무상원조(Assistance Grant), 무이자대출(Interest-free Loan), 유상차관(Concessional Loan)으로 구분된다. 무상원조는 병원, 학교, 주택, 상하수처리 시설 등 수원국내 중소규모 복지시설건설 사업 등을 지원한다. 무이자대출은 공공 시설 건설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지원한다. 유상차관은 대외양허성 차관 (Government Concessional Loan)²²⁾과 우대구매자금음(Preferential Buyer's Credit)²³⁾의 두 종류가 있는데 주로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중소규모의 생산형 원조사업 지원에 사용된다.

22) 양허성차관(對外優惠貸款)은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개발도상국 정부에 제공하는 원조성격의 중장기 저리대출

23) 우대구매자금음(優惠買方出口信貸)은 중국수출입은행을 통하여 수출구매자금음 형식으로 개발도상국 정부에 지원 하는 일정 양허조건을 갖춘 대출

나. 원조방식

중국의 원조방식은 개발사업(Turnkey projects), 일반물자지원(General in-kind aid), 기술협력(Technical cooperation), 인력자원개발협력(Human resources development & cooperation), 의료지원(Foreign aid medical team), 긴급구호(Humanitarian emergency relief), 자원봉사(Volunteers), 채무탕감(Debt relief)으로 구분된다.

(1) 개발사업

중국은 최초 개발사업인 1954년 하노이-무난쿠안(Mu-nan Kuan) 철도 건설사업을 시작으로 1980년대 전체 원조지출의 70%가 개발사업에 투입될 정도로 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지원하여 왔다. 중국의 원조백서에 따르면 유상차관을 제외한 개발사업 원조건수는 2012년 말 누적 기준 2,605건이다.²⁴⁾

(2) 일반물자지원

중국이 원조 초기에 활용했던 지원방식으로 주로 기계, 의료장비, 의약품, 식량, 계측기 등을 공급한다. 2000년 이후 취급실적이 증가하여 총 지원건수는 2012년 말 누적기준 1,318건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2000년 이후 중국의 일반물자지원 취급건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2012
건	70	113	85	89	75	103	87	64	136	81	109	306

출처 : 2001-2003 중국대외무역연감, 2004-2011 중국상무연감, 중국의 대외원조, 2014

(3) 기술원조

기술원조는 개발사업과 연계되거나 별도로 추진되기도 하는데 주로 공업생산기술, 농업경작과 파종, 수공업, 문화교육, 의료, 공공보건, 청정에너지 개발 분야의 협력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은 2009년까지 60만 명의 기술전문가를 해외에 파견하였다.

24) 중국의 대외원조(2012년)의 개발사업 지원실적 225건(2009년말 현재 누적기준) 및 중국의 대외원조(2014년)에서 발표된 2010-2012년 개발사업 실적 580건의 합계

〈표 4〉

2000-2010 중국의 기술원조사업 취업건수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건	31	32	23	43	60	64	36	27	117	145	106

출처 : 2001-2003 중국대외무역연감, 2004-2011 중국상무연감, China's Going Global p. 95 재인용

(4) 인력자원개발협력

중국의 인력자원개발협력은 1953년 2,500명의 북한 인턴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실시로부터 시작되었다. 이후 중국은 UN 개발프로그램인 개도국간 기술협력 (Technical Cooperation among Developing Countries, TCDC)에 관심을 가지고 개도국 공무원 연수, 기술훈련, 유학생 프로그램, 해외연수, 자원봉사, 단기교환연수 방식으로 인력자원개발협력을 진행해오고 있다.²⁵⁾ 중국의 인력자원개발협력은 경제, 문화, 외교, 정당, 행정, 감사, 교육기술, 환경 등 20여개가 넘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특히 공무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인력의 파견 또는 초청연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7월말 현재 52개 국가의 공무원 16,099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2010년 이후 개도국 공무원 연수 실시 누적인원은 7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²⁶⁾

(5) 의료지원

1963년 알제리에 최초 의료지원팀 파견이후 2012년 말까지 파견된 의료인력 수는 24,6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²⁷⁾

(6) 긴급구호

중국의 원조초기 긴급구호는 중국인민구제총회(Chinese People's Relief Administration), 중국적십자사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지원규모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천재지변, 질병확산 등에 대응하여 긴급구호 규모를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인도양 쓰나미 발생 직후에는 피해국가에 7억 위안을 제공하였고 이후 북구

25) 공무원 파견연수는 주로 1998년부터 경제관리, 도시계획, 교통운수, 자원개발 등 30여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무부 국제상무관원연수학원에서 실시함

26) 新华网 (2014. 8. 25), ‘中国已举办近700期发展中国家官员研修班及研讨会’

27) 2009년까지 파견된 의료인력 21,000명(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China's Going Global, p. 97)과 중국의 대외원조(2014)를 통해 발표된 2010-2012 기간 중 의료지원인력 3,600명을 합산함

작업에도 6.6억 위안을 제공하는 등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약 200건의 긴급구호 사업을 지원하였다.

(7) 자원봉사

2002년 5월 라오스에 최초 자원봉사단을 파견하였으며 이후 중국어 교사 자원 봉사자를 중심으로 자원봉사 인력 파견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어 교사 자원봉사인력 파견은 2003년에 시작되었는데 2012년까지 파견실적은 70여개국 14,590명에 이르고 있다.

(8) 부채탕감

중국정부는 2000년 이후 채무의 적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채무빈국(HIPCs), 최빈국(LDCs)에 대하여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09년까지 50개국에 제공된 약 256억 위안 상당의 부채를 탕감하였으며,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에도 탄자니아, 잠비아 등 9개 최빈국의 채무 14.2억 위안을 탕감하였다.

〈표 5〉 중국정부의 부채탕감 실적 (2009년말 누적)

지역	국가수	채무건수	탕감부채금액(억 위안)
아프리카	35	312	189.6
아시아	10	41	59.9
라틴아메리카 등	2	14	4.0
대양주	3	13	2.3
계	50	380	255.8

출처 : 중국의 대외원조, 2011

3. 원조실적

가. 원조규모

중국의 대외원조 실적은 2011년 최초 발표한 원조백서²⁸⁾를 통하여 비로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2012년말 현재 누적기준 원조총액은 3,456.3억 위안으로 무상원조 1,385.2억 위안, 무이자차관 838억 위안, 유상차관은 1,233.1억 위안을 기록하였다.²⁹⁾

나. 원조관련 재정지출

2011년 중국의 원조관련 재정지출은 159억 위안으로 2000년 실적과 비교하였을 때 매년 12.74%씩 증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 기간 중에는 연평균 19.5%라는 높은 증가율을 시현하였다.

〈표 6〉 중국의 원조지출 2000-2011

(단위 : 억 위안, %)

구분	원조금액	증가율(%)	재정지출	원조지출/ 재정지출	GNI	원조지출/ GNI
2000	45.88	17.0	15,886.50	0.289	98,000.5	0.047
2001	47.11	2.7	18,902.58	0.249	108,068.2	0.044
2002	50.03	6.2	22,053.15	0.227	119,095.7	0.042
2003	52.23	4.4	24,649.95	0.212	135,174	0.039
2004	60.69	16.2	28,486.89	0.213	159,586.7	0.038
2005	74.70	23.1	33,930.28	0.220	185,808.6	0.040
2006	82.37	10.3	40,422.73	0.204	217,522.7	0.039
2007	111.54	35.4	49,781.35	0.224	267,763.7	0.042
2008	125.59	12.6	62,592.66	0.201	316,228.8	0.040
2009	132.96	5.9	76,299.93	0.174	337,313.4	0.039
2010	136.14	2.4	89,575.38	0.152	400,041.2	0.034
2011	159.09	16.9	109,247.79	0.146	479,576.1	0.034

출처 : 국가통계국 (www.stats.gov.cn), 재정부 2011년 전국공공재정지출결산표 (www.mof.gov.cn)

28) 국무원신문판공실, 중국의 대외원조(2011)

29) 2009년 말 기준 누적총액 2,562.9억 위안(무상원조 1,062억 위안, 무이자차관 765.4억 위안, 유상차관 735.5억 위안)에 중국의 대외원조(2014)를 통해 발표된 2010-2012 기간중 원조총액 893.4억 위안(무상원조 323.2억 위안, 무이자차관 72.6억 위안, 유상차관 497.6억 위안)을 합산함

원조관련 재정지출 실적과 관련하여 특이한 점은 재정으로 이차보전을 하는 유상차관 지원금액이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원조관련 정부예산이 중국의 원조실적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수출입은행이 1억 위안의 유상차관을 2%에 제공하고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금리가 5%인 경우, 정부 원조예산 지출실적에는 우대금리와 기준금리 차이로 발생하여 정부가 보전해야 할 3백만 위안의 차액만 계상된다. 따라서, 중국의 대외원조 실적을 다른 공여국들의 실적과 비교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앞서 살펴본 원조관련 재정지출의 높은 증가율은 2005년 이후 급속한 유상차관 지원실적 증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가늠해 볼 수 있다.

IV. 중국수출입은행의 유상차관³⁰⁾

1. 개요

가. 유상차관의 탄생

대외적으로 1990년대 초반 당시 원조시장은 원조국이었던 구소련의 쇠락, 중동 산유국의 원조 감소 등으로 일부 선진국의 독점이 심화되었다. 반면 수원국인 개발도상국의 경제규모가 확대되면서 소규모 무상원조만으로는 주민의 수입증가, 취업률 제고 등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원조시장이 소수 선진국들에 의해 독점되면서 원조자금에 부가되는 민주화 등 조건들도 수원국의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의 제약조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대내적으로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내 경제성장 압력 및 국제수지 적자 부담으로 원조규모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국내외 환경하에 1995년 5월 국무원은 원조체계 개혁³¹⁾을 통해 정부의 이차보전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자금을 동원하는 중국식 유상차관이 도입되었다. 중국정부는 1995년 7월 짐바브웨이 정부와 유상차관 제공을 위한 최초의 협의(Framework Agreement, F/A)를 체결하였고, 1995년에만 모두 11건의 F/A를 체결하였다. 최초의 유상차관은 1995년 12월 차관계약을 체결한 수단석유개발사업으로 이후 유상차관 지원실적이 급속히 증가하여 2009년까지 121개국 앞 580건의 유상차관이 지원되었다.

30) 본 장의 내용은 중국수출입은행 국제업무부 직원(Mr. Liu Shou Feng, Ms. Liu Chen)과의 인터뷰(2015. 1. 5자 등 3회)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음

31) 국무원의 대외원조업무개혁관련 문제에 대한 회신(國務院關於改革援外工作有關問題的批復)

나. 유상차관의 종류

유상차관은 정부 양허성차관과 우대구매자금융 두 종류가 있다. 정부 양허성차관(Government Concessional Loan)은 정부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외에 제공되는 원조성격의 중장기저리대출이다. 우대구매자금융(Preferential Buyer's Credit)은 외교 수요에 따라 중점국가와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자신용형식으로 제공되는 우대대출이다. 우대구매자금융은 수출신용이 외교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유상차관에 포함되었다. 2001년 후진타오(胡锦涛) 당시 국가부주석은 이란 방문 시 5억불의 구매자금융 제공을 승인하였다. 2002년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은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중국방문 기간중 4억불의 구매자신용 제공을 승인하였고 이 당시 최초로 우대구매자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2004년 재정부, 외교부, 상무부, 인민은행이 공동으로 《우대수출구매자금융관리잠행방법(優惠出口買方信貸管理潛行辦法)》 규정을 제정하면서 우대구매자금융은 공식적으로 중국수출입은행의 유상차관 상품으로 편입되었다.

〈표 7〉 양허성 차관 및 우대구매자금융의 비교

구 분	양허성 차관	우대구매자금융
기장통화	위안화	달러화
융자비율	100%	85%
관련부처	對外援助司(상무부) 行政政法司(재정부)	合作司(상무부) 金融司(재정부)
정부간협약	F/A	없음

출처 : 중국수출입은행 유상차관 업무소개자료 (2013. 12. 11.)

다. 재원의 조달

유상차관의 재원은 국가재정 및 중국수출입은행의 조달 자금으로 충당하며 초기 각 재원의 구성비는 대략 1:2 수준이었다.³²⁾ 은행이 조달한 원금의 우대이율과 중앙은행이 고시하는 기준이율간의 차액은 상무부가 재정부의 승인을 받은 원조예산으로 보전한다. 원조예산으로 지원한 유상차관의 이자수익은 은행이 조달한 원금의 우대이율과 기준금리간의 이차, 유상차관 집행관련 비용을 보전한 이후 잔액은 다시

32) 黃海波(2010), 中國政府對外優惠貸款的發展歷程與前景, 현재 유상차관 원금은 대부분 중국수출입은행이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차관의 원금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대출조건도 원조예산 조달 원금에 대해서는 F/A 체결 시 정부간 협상을 통해 정하고, 은행 조달 원금에 대해서는 중국수출입 은행과 차주가 개별차관계약을 통해 결정한다.³³⁾

라. 주요 지원조건

유상차관의 지원조건은 구체적으로 공개된 바 없으나 중국의 관련규정³⁴⁾상 대출 금리는 5% 이하, 거치기간 이후 상환기간은 15년 이내로 운용토록 되어있다. 아래 <표 8>과 같이 실제 수원국 대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유상차관 금리는 1990년대 5.2%에서 2008년의 3%까지 조정되어 왔으며 대출기간 역시 점차 장기화되면서 중국 유상차관의 양허수준이 높아져 왔음을 알 수 있다.³⁵⁾ 차관금액은 양허성 차관의 경우 2,000만 위안 이상, 우대구매자금용은 200만불 이상이어야 하며 양자 모두 50% 이상 구속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표 8> 1990-2008 외국정부대출과 정부보증대출조건 (수원국 대상 조사)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8
이자율(%)	5.2	5.8	4.7	3.6	3.0
대출기간(年)	23.5	19.3	20.5	22.1	23.8
거치기간(年)	6.7	5.3	5.1	5.7	6.7

출처 : World Bank, 2010: 34

2013년말 현재 유상차관의 대출금리는 2~3%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기간은 15~20년으로 과거에 비해 조건이 완화되었다. 이자상환은 연 2회³⁶⁾이며 일반대출과 같이 관리비와 승인수수료가 부과된다. 양허성 차관과 우대구매자금용 모두 차주는 수원국 정부(재정부) 또는 중앙은행이며, 정부가 지정한 별도기관이 차주가 되는 경우 수원국 정부(재정부) 또는 중앙은행이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

33) 중국수출입은행이 조달하여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서도 차관한도는 F/A에서 결정

34) 중국수출입은행의 중국수출입은행 정부양허차관업무처리관련 잠행방법(中國進出口銀行辦理中國政府對外優惠貸款業務潛行辦法)에 관한 통지(2003)

35) 대출기간은 대출자금의 사용기간, 거치기간, 상환기간을 의미하며 상환기간은 거치기간 종료이후 개시됨

36) 양허성 차관의 이자상환일은 매년 3월 21, 9월 21일로, 우대구매자금용의 이자상환일은 매년 1월 21일, 7월 21일임

마. 지원 대상국가 및 사업

유상차관의 지원대상 국가는 상무부가 연간 원조자금 목표와 국가별지원정책 수립 시 중국과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치외교적 목적과 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때 상환능력 여부가 중요한 평가기준이 되며 지원대상국은 다시 일반국가와 중점지원국가로 분류하여 지원조건을 차별화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 내부에서는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남태평양 도서국가, 카리브해 및 라틴아메리카 지역은 전통적으로 양허성 차관과 우대구매자금용 중점 지원국가로 분류하고 있고,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 국가들에 대해서는 우대구매자금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Box 3. 지원대상사업기준

1. 사업소재국 정국이 안정되고 경제상황이 비교적 양호하며 대출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국가
2. 중국 및 수원국 정부의 허가를 득한 사업
3. 사업의 경제적효과가 인정되고, 차입자의 신용도가 양호하며, 차주의 상환능력 또는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사업
4. 원칙적으로 대출신청금액이 200만불 또는 상당 위안화 이상인 사업
5. 원칙적으로 설비, 원자재, 기술 또는 서비스의 중국 조달비중이 50% 이상인 사업

출처 : 중국 수출입은행 대외양허차관 잠행방법(中國進出口銀行對外優惠貸款潛行辦法, 進出口銀行發) 2000년 제26호

2. 유상차관 지원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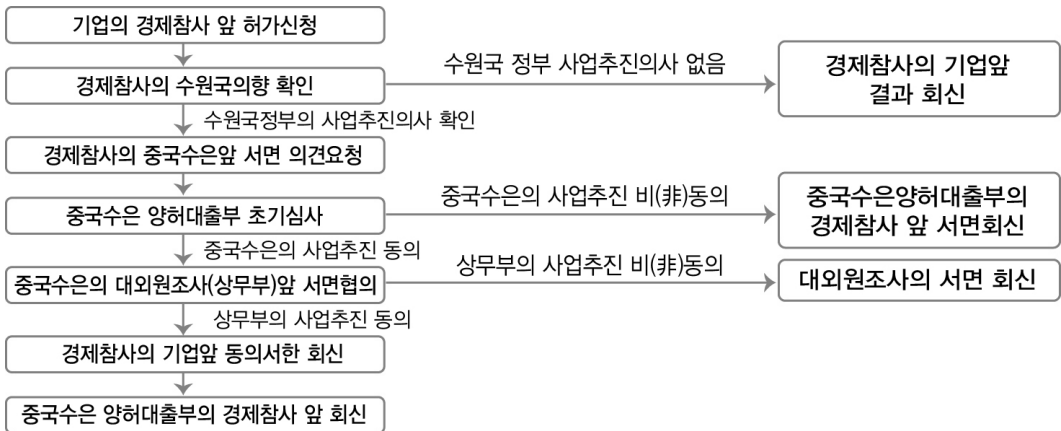
가. 사전심사

유상차관의 기존 업무흐름은 사업심사승인, F/A 및 차관계약체결, 대출집행과 사후관리, 완공보고 단계를 거쳐 실행되는데, 최근 사전심사제도가 도입³⁷⁾되었다. 사전심사는 기업의 일방적인 원조사업 추진이나 수원국 앞 압력행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상무부의 《대외유상차관의 명확한 국별정책관리 및 사전업무순서에 관한 통지 (關於進一步明確援外優惠貸款國別政策管理和前期工作程序的通知)》에 근거하고 있는데, 우선 기업이 수원국 공관 등을 통하여 제출한 원조사업과 관련 수원국 정부의

37) 2013. 12. 31자 시행

동의 여부를 확인한 이후 중국수출입은행이 사업에 대하여 사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추진 배경과 필요성, 사업의향서, 사업분야, 추정사업비, 기업자격 및 동종사업 수행경력, 사업실시계획을 검토하고, 국별원조정책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필요성, 해당분야 시장진입장벽 여부, 기타 사업 위험을 심사한 후 결과를 상무부 앞 보고하여야 한다. 상무부가 신청사업에 대해 이의가 없을 경우 중국수출입은행은 사업에 대한 사전접수를 수리하며 수리결과는 수원국 소재 공관 상무관실 또는 경제참사를 통해 기업에 통지한다.

〈그림 3〉 유상차관 사전심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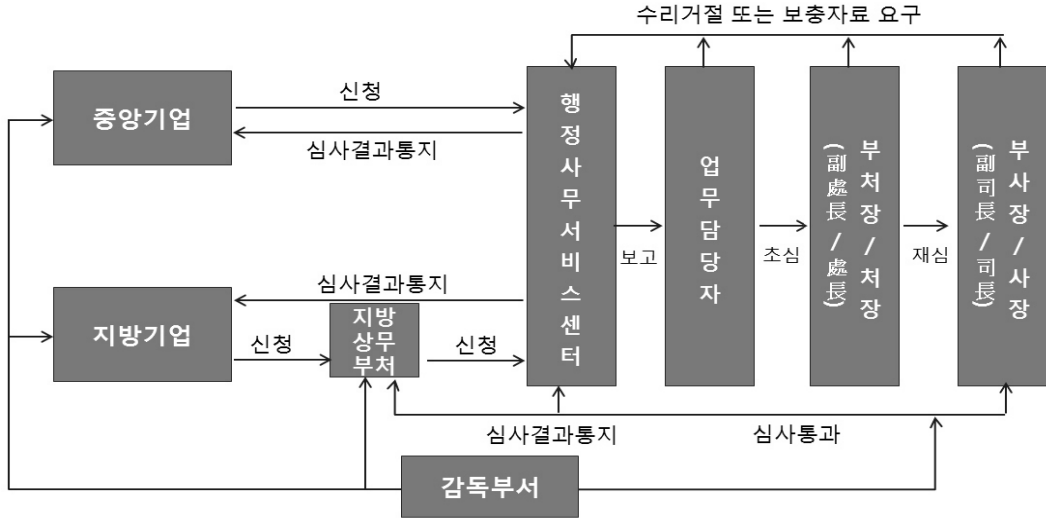
출처 : 중국수출입은행 국제업무부(Mr. Liu Shou Feng)와의 인터뷰 내용을 토대로 필자 작성

나. 원조참여자격 심사제도

중국은 원조사업의 외교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자국 기업들 간의 과열 경쟁 및 원조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 금지 목적으로 기업의 원조사업 참여를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원조사업 참여자격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원조사업을 시공과 재화 및 서비스 공급 분야로 구분하여 개발사업 참여 시공사는 《대외원조개발사업시공임무 실시기업자격인정방법(상무부령 [2004] 제9호)》에 따라, 일반물자사업은 《대외원조물자사업실시기업자격인정방법(상무부령 [2011] 제2호)》을 근거로 기업을 심사하고 등급을 부여한다. 기업은 상무부 대외원조사(援外司)로부터 부여받은 등급에 따라 해당 업무범위 내에서만 원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상무부는 공상행정관리부처에 등록되어 독립법인 자격을 갖춘 중견 또는 대기업 가운데 경영, 재무상황, 신용도 등을 심사³⁸⁾하여 원조참여 가능기업 목록을 발표하는데, 원조사업에 참여하려면 통상

개발사업 참여희망 기업의 경우 대외공사운영권과 해당 시공분야 최고급(1급)의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일반물자사업 참여 희망기업은 대외무역경영권(對外貿易經營權)³⁹⁾을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그림 4〉 원조사업 참여기업 자격심사



출처 : 상무부 홈페이지 (www.mofcom.gov.cn)

다. 사업승인 및 지원절차

사전접수를 마친 차관사업은 수원국 정부 또는 기업⁴⁰⁾이 수원국 소재 공관 경제 참사의 동의서를 받아 중국정부 앞 사업승인신청을 한다. 상무부는 사업승인신청이 접수되면 국별지원전략 등 내부지침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이후 중국수출입은행 앞 해당사업의 승인을 추천한다. 중국수출입은행은 수원국 정부 또는 관련기업의 신청서류⁴¹⁾를 검토한 이후 현지실사 등 본심사에 착수하게 된다.

38) 신청기업의 출자자는 중국국적이어야 하며, 직전 2년 동안의 매출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이어야 함

39) 재화, 서비스 등의 수출입 허가권

40)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중국 또는 수원국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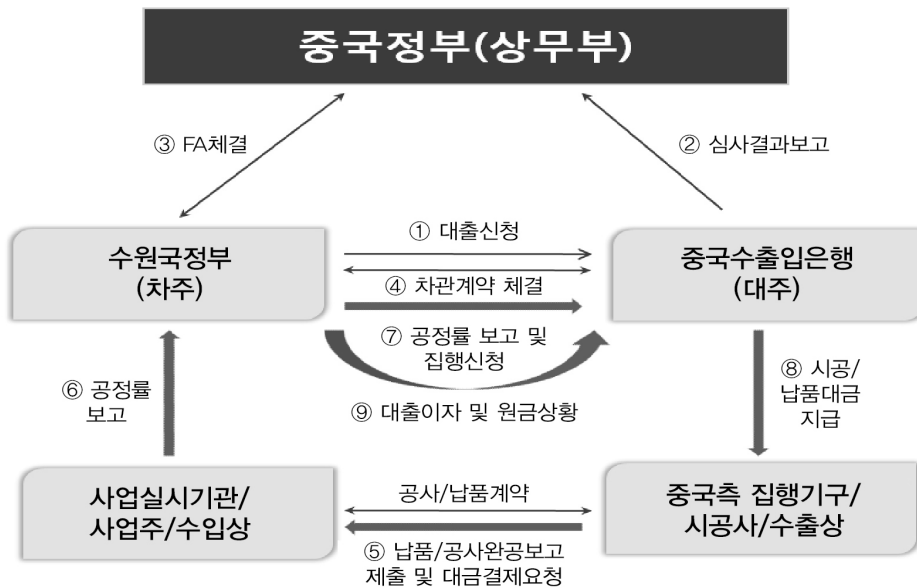
41) 사업추진과 관련 수출입, 세금, 외환관리 관리 규정 및 정책 자료, 수원국 정부가 승인한 사업건의서 또는 F/S 보고서(사업필요성, 목적과 목표, 투자개요, 사업내용 및 범위, 기술타당성, 경제적타당성, 사회효익 등 자료 포함), 사업참여 기업간의 상무계약서 및 기타 계약서, 차관자금 최종 사용자(사업참여 기업) 소개자료, 공상행정국 등기 자료(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회계보고, 원조사업 참여자격 인증서류, 국내외 업무수행실적, 기타 중국수출입은행이 요구하는 자료

차관사업의 심사사항은 수원국와의 외교관계, 수원국의 정치안정성, 양국정부의 인허가 여부, 수원국의 장단기 경제발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의 기술타당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효율성, 환경영향평가, 중국기업의 사업참여 여부 및 중국산 비중 기준(50% 이상) 부합여부, 재원조달의 안정성(대응자금의 투입여부) 등으로 중국 수출입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 컨설팅사 등의 F/S를 의뢰하기도 한다.

차관신청금액에 따라 심사단계에 차이가 있으며 차관신청금액 5억 위안 미만 사업은 양허차관부 내 해당사업 담당 처와 부서 내 평가실 등 2단계의 승인과정을, 5억 위안 이상 사업은 추가적으로 중국수출입은행 신용평가실까지 3단계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심사보고서는 상무부 대외원조사, 합작사, 재무사, 해당 지역사의 비준을 받아야 최종 승인이 되며, 양허성 차관은 대외원조사가, 우대구매자 금융 신청건은 합작사가 부처 내 의견을 조율하여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그림 5〉 중국의 양허성 차관 지원절차



출처 : www.baidu.com (2014. 12. 18자 검색)

- ① 수원국 정부 또는 기업이 상무부 앞 차관을 신청하며 중국수출입은행에 관련 서류 사본 송부

- ② 중국수출입은행은 심사보고서를 상무부 앞 제출하고 수원국 정부와 구매방식 결정
 - 구매절차에 따라 공급자가 결정되면 수원국 측 사업실시기관 및 중국측 유상차관 참여기업간 상무계약 체결(유상차관계약 체결이 해당 사업계약 효력발생 조건이 되도록 조항 추가)
- ③ 중국정부(상무부) 및 수원국 정부간 F/A 체결
- ④ 중국수출입은행은 중국과 수원국 정부와의 F/A에 근거하여 개별 유상차관 계약을 체결
- ⑤ 중국측 시공사/수출상은 공정률 등 계약요건에 따라 차관자금의 집행을 요청
- ⑥ 수원국 측 사업실시기관은 수원국 정부에 공정/납품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대금의 집행을 의뢰
- ⑦ 수원국 정부(차주)는 중국수출입은행 앞 자금집행을 의뢰(취소불능 대출집행 신청서 제출)
 - 중국수출입은행은 공정보고 및 대응자금 우선투입여부를 확인한 이후 집행하며 완공시에는 공관 상무관실 또는 경제참사의 완공보고 이후 집행 가능
- ⑧ 중국수출입은행은 중국측 공급기업 앞 대금을 지급하고 수원국 앞 집행사실 통보
- ⑨ 수원국 정부는 중국수출입은행 앞 원금 및 이자 상환

우대구매자금융의 승인은 먼저 수원국정부와 은행이 MOU 또는 협정을 체결한 이후 신청 사업을 심사하여 개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단계(①MOU 체결, ②사업승인 신청, ③심사, ④개별대출계약 체결, ⑤대출실행, ⑥사후관리)를 거치며 정부간 F/A 체결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양허성 차관 지원절차와는 차이가 있다.

라. 유상차관 지원실적

유상차관 지원건수는 2009년까지 79개 국가에 325건이 제공되었으며 이 가운데 개발사업 차관이 142건으로 개도국의 교통, 통신, 전력 등 기초설비에 제공되었으며 8.9%는 석유 광산 등 자원개발에 사용되었다.⁴²⁾ 지원금액은 2010년에서 2012년까지 3년 동안 497.6억 위안이 집행되어 같은 기간 중국 전체 원조의 55.7%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원조통계에서 공개되는 유상차관 금액은 차관원금 일부와 중국 수출입은행이 조달한 원금의 우대금리와 중앙은행 고시 기준금리와의 차이를 보전

42) 가장 최근의 통계에 따르면 유상차관 지원실적은 2012년까지 121개 국가를 대상 580건임

하는 이자보조금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유상차관 규모와는 차이가 크다. 유상차관 지원규모와 관련, 2011년 중국의 WTO가입 10주년 기념 고위급회담 석상에서 당시 후진타오(胡锦涛) 국가주석은 과거 10년, 즉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재정지출금액을 포함하여 제공한 유상차관 총규모가 1,700억 위안 이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⁴³⁾ 중국수출입은행은 유상차관 지원실적에 대한 질의에 양허성 차관과 우대구매자금융을 합한 유상차관 지원실적이 2005년 이후 매년 30%를 초과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표 9〉 지역별 우대구매자금 융인 규모

구분	수원국 정부와의 승인액
아프리카	20억불(2006년), 100억불(2009년), 200억불(2012년)
중양아시아	9억불(2003년), 12억불(2006년), 50억불(2009년), 100억불(2012년)
ASEAN	70억불(2005년), 55억불(2009년), 40억불(2011년)
남부아시아	미공개
중동유럽	100억불(2012년)
라틴아메리카, 몽골, 남태평양	미공개

출처 : 중국수출입은행 양허차관부 업무소개자료 (2013. 12. 11.)

V. 중국 유상차관의 특징과 시사점

1. 유상차관의 특징

가. 기업주도형 사업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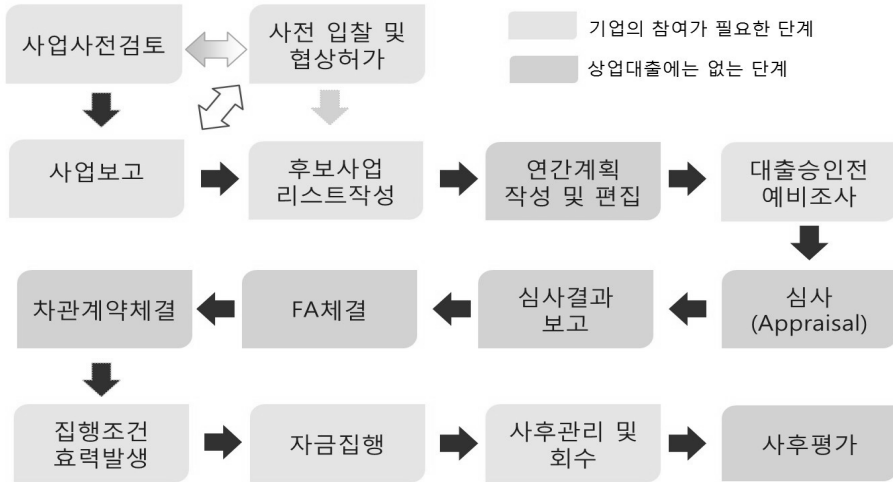
중국의 유상차관은 기업이 사업발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중국 정부는 적합한 사업발굴이 원조사업 성공의 기초라고 보고 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전국대외원조공작회의 등 원조관련 정부협의체에도 기업의 참석을 허용하는 한편 기업으로 하여금 사전심사를 통과한 사업이 수원국 후보사업목록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도록 수원국 정부와의 적극적인 사업협의를 장려하고 있다.⁴⁴⁾ 이와 같은 중국기업의 주도적인 역할은 원조사업 참여기업 자격심사제와 양허성

43)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2013: 90

44) 喬勇, 優貸項目運作簡介, 中鐵1局海外事業部

차관 사전심사제도⁴⁵⁾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에도 불구하고 유상차관 사업 발굴 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있다.

〈그림 6〉 유상차관 지원절차 및 기업의 참여수준



출처 : 중국대외시공사협회 홈페이지(www.chinca.org) 및 중국수출입은행 양허차관부 업무소개 (2013. 12. 11.)

나. 유상원조의 증가

중국의 원조총액은 2009년 누적기준 무상원조 1,062억 위안, 무이자대출 765.4억 위안, 유상차관 735.5억원으로 무상원조의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그러나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 유상차관의 집행실적은 497.6억 위안으로 해당기간 원조총액의 55.7%를 차지하는 한편, 2009년까지의 유상차관 지원누적액인 735.5억원의 67%에 이르는 등 중국의 대외원조에서 유상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유상차관은 재정적인 제약을 벗어나 원조규모를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고, 대출심사와 사업관리관련 은행의 업무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원조자금사용에 대한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급속한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보인다. 現 중국정부도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전략 추진과정에서 주변국과의 연결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투자 관련 대규모 원조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지속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외교수요, 경제적 효용 및 가시성을 강조하는 중국의 전략적이고 실용적인 원조 경향을 고려하였을 때 향후 중국의 유상차관 지원규모는 지속적인 증가가 전망된다.

45) 대외유상차관의 명확한 국별정책관리 및 사전업무순서에 관한 통지 (關於進一步明確援外優惠貸款國別政策管理和前期工作程序的通知, 상무부 2012. 2. 31.)

다. 원조담당 기관간 유기적인 조화와 협력

중국의 대외원조 체계는 실무적으로 상무부가 대내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진 컨트롤 타워로서 원조관련 역할을 분담하는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보고 및 협력체제를 갖추고 있다. 유상차관 업무도 마찬가지로 상무부는 연간계획 수립, 참여기업 자격 심사, 사업발굴, 승인, 자금의 집행, 완공 등 거의 전 단계에 개입하고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정부간 차관협상을 수행하고 F/A를 체결하는 당사자이다. 사실상 유상차관과 관련해서는 중국수출입은행, 해외 공관의 지원을 받아 사업승인과 집행에 관한 유일한 통할자인 셈이다. 이러한 원조관련 부처의 업무조화는 공산당의 의사결정과정, 명확한 기관별 업무분장, 각종 협의체 등 의견 조율장치⁴⁶⁾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무부가 총괄하는 연간원조계획, 국별 지원계획 등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외교부, 재정부, 인민은행 등과의 복잡한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방향이 결정되어 공산당 및 집행부의 최고 상위기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 및 국무원 앞 보고하고 비준을 받은 순간부터는 당의 지침에 따르는 공산당 특유의 정치문화로 인하여 원조관련 기관들의 원조추진과정에서의 갈등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관련 기관들의 원조관련 업무분장이 명확하다. 예를 들어 외교부의 원조관련 업무는 군사원조 제안, 긴급구호 실행, 외교관계를 고려한 국별원조방안 수립, 외교수요 발생시 우대구매자금융에 대한 사업추천 등으로 상당히 구체적임을 알 수 있다. 재정부도 원조예산 수립, 집행, 자금사용 감독 등 주로 자금에 관한 업무만을 담당하는 명확한 업무분장체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상무부는 본고의 원조담당기관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종 원조 관련 협의체를 통해서 정부를 공유하거나 부처별 이견을 조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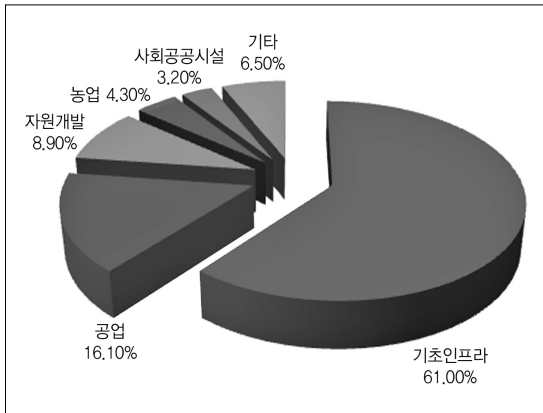
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한 유상차관 분야 선정

중국 유상차관은 가시성이 큰 대규모 인프라와 비교적 단시간 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중소 생산형 사업을 우선지원분야로 선호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지만 경제적 효용도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인프라 투자는 논외로 하고 중국의 관심이 높은 중소 생산형 사업의 경우만 보면, 중국정부는 생산형 사업이 수원국의 경제발전과정과 공업화 단계에 도움이 되고 사업자체의 경제성으로 결과적

46) Box 2 참조

으로 채무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수단 석유개발사업⁴⁷⁾이 수원국의 원유도입 부담을 경감하고 현지주민의 수입제고를 가져왔으며 채무상환의 확실성까지 담보된 이상적인 생산형 사업이라고 자평하고 있다.⁴⁸⁾

〈그림 7〉 중국 대외원조 지원분야
(2009년 누적금액기준)



〈표 10〉 중국 대외원조 지원분야
(2012년 누적건수기준)

분야	건수
농업	264
공공시설	1,030
기초인프라	546
공업	650
기타	115
계	2,605

출처 : 중국의 대외원조, 2011 & 2014

마.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원조와 투자 연계

중국은 원조사업에 참여한 자국기업이 단순히 상품의 공급이나 건설만을 담당할 것이 아니라 원조사업의 경영과 관리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기업과 수원국 기업과의 합작 투자를 장려하고 있다. 원조사업에 투자를 결합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자국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에도 기여하는 한편 국내 사양산업의 개발도상국 이전을 촉진하고 교역 확대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이와 같은 모범사례로 1960년대 원조사업으로 완공 이후 관리부실로 도산했던 탄자니아 방직공장 건설사업⁴⁹⁾을 들고 있다. 중국수출입은행은 1995년 해당사업을 기술개조사업으로 지원하여 실패한 원조사업을 정상화하였다. 이후 중국과 탄자니아 기업이 합작 경영하고 있는데 약 2,000명의 현지인을 고용하여 주민수입 제고에 기여하였고 해외시장을

47)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CNPC)와 수단의 합작투자로 추진된 석유개발사업으로 1995년 12월 중국수출입은행이 115억 위안의 F/A 금액 가운데 1억 위안의 유상차관을 지원한. 당시 수단은 상당량의 원유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능력부재로 원유를 수입하는 상황이었음

48) 云宗國, 韓晶 『我國政府優惠貸款的國制比較(1997)』, 중국수출입은행 국제부, IEC No. 4, 1997

49) 2006. 7. 29자 新華網 “坦桑尼亞總統視察坦中友誼紡織廠” 참조

성공적으로 개척하였으며 수원국 우수납세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원조와 투자를 결합하는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한 모범적인 원조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2. 시사점

중국의 유상원조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타이드 원조, 내정불간섭 원칙하의 무조건적인 원조 등으로 ‘죽은 원조 (Dead Aid)’, ‘불량원조 (Rogue Aid)’라는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지원하는 거액의 경제협력자금이 수원국의 개발수요에 부응하여 원조주체의 다양화, 개발재원의 확대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의 원조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대될 수 있었던 데는 재원조달과 운영 면에서 획기적인 개혁으로 평가되는 유상차관의 역할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의 대외원조 발전과정과 유상차관의 운영현황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은 매우 전략적이면서도 실용적으로 유상차관을 활용하여 왔다. 우선, 중국과 개도국간의 협력은 전통적인 공여국과 수원국의 관계가 아닌 ‘남남협력’으로 지칭하며 원조자금으로서 엄격히 준수해야 하는 양허율 기준을 희석시켰다.⁵⁰⁾ 재원조달 면에서는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차관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이자보조금’ 제도를 마련하였다. 원조철학 면에서는 원조관리의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유인이 약한 무상원조보다는 경제성 있는 사업에 대한 유상지원이 궁극적으로 수원국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자력갱생’ 원칙을 강조하였다. 유상차관 자금종류 면에서도 전통적인 정부간 양허성 차관이 아닌 수출신용을 유상차관의 범주에 편입시켜 구매자금융을 원조패키지를 구성하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가 도입 예정인 개발금융 역시 개발도상국의 개발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한다.

50) 필자는 중국의 ‘남남협력’ 기조가 유상차관을 공여국이 수원국에 제공하는 개발원조자금이 아니라 개도국 간의 경제협력자금으로 보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참고 문헌

해외문헌

Global Environmental Institute (2013). Environmental and Social Challenges of China's Ongoing Global.

Zhengming, Zhu (2009). China's Economic Aid to CLMV and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m.

Callan, Paul, Jasmin Blak and Andria Thomas (2013). Breaking down China's Foreign Aid and Investment.

Hubbard, Paul (2007). What We Can Learn About China Exim Bank's Concessional Loan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 (2012).

中華人民共和國 國務院新聞辦公室, 中國的對外援助 (2014).

牛軍 (2010). 中華人民共和國對外關係史概論 (1949–2000).

張海冰 (2013). 發展引導型援助: 中國對非洲援助模式研究.

朱穩根 (1997). 『援外優惠貸款的現況, 問題及思考』中國進出口銀行 國際部.

云宗國, 韓晶 (2007). 『我國政府優惠貸款的國制比較(1997)』, 中國進出口銀行 國際部.

黃梅波 (2010). 『中國政府對外優惠貸款的發展歷程與前景』.

黃梅波 (2007). 『中國對外援助機制: 現況和趨勢』.

姜璐 肖佳灵 (2011). 『中国对苏丹的石油外交: 政企角色研究』, 阿拉伯世界研究.

白欽先, 耿立新 (2005). 『關於國家開發銀行和中國輸出入銀行戰略定位與立法的若干問題』, 中國金融.

中國進出口銀行 (2013). 『中國進出口銀行“兩優”貸款業務介紹』.

국내문헌

권율, 박수경 (2010). 중국의 대외원조정책과 추진체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웹사이트

<http://www.chinca.org>

<http://www.mofcom.gov.cn>

<http://www.mof.gov.cn>

<http://www.stats.gov.cn>

<http://www.focac.org>

<http://www.fmprc.gov.cn>

EDCF

V. 개발협력대상국 분석

베트남 국별 평가리포트

임영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리포트

송용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베트남 국별 평가리포트

임영석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책임조사역

I. 일반개황

면적	331천 Km ²	G D P	1,883억 달러(2014년)
인구	92.6백만 명(2014년)	1인당 GDP	2,034달러(2014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통화단위	Dong(D)
대외정책	친서방 노선	환율(달러당)	21,372.5(2014년 평균)

- 인도차이나 반도 중부에 위치하면서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사회주의공화국으로, 1986년 도이모이 정책 도입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 전통적인 농업국이었으나 제조업 부문이 경제성장을 주도하면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섬유·의류제품과 전자제품 수출비중이 높음. 농업 부문에서는 쌀(세계 2위 수출국)과 커피를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석유 개발에 성공한 이후 원유도 수출하고 있음.
- 총리, 국가주석, 당서기장 등 권력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정부패 척결,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투자여건 개선, 금융기관 부실 해소 등을 위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1995년 ASEAN에 가입한 이후 역내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중국과는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관련 해상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 분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제성장률	6.4	6.2	5.2	5.4	5.5
재정수지 / GDP	-2.8	-1.1	-6.8	-5.6	-6.6
소비자물가상승률	9.2	18.7	9.1	6.6	5.2

자료: IMF.

□ 소비심리 회복,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2014년 5.5% 성장 추정

- 제조업 중심의 수출지향적 경제로 글로벌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국영 기업과 은행부문 부실화 문제로 최근 경제성장률이 5%대에 머물러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입, 수출 확대 등으로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음.
- 2012년 경제성장률은 긴축 통화정책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5.2%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 부실채권 문제로 인한 은행권의 소극적 대출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 동화 평가절하 등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5.4%로 회복되었음.
-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 및 물가 안정세에 힘입은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년에는 5.5%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5.2% 시현 추정

- 원부자재와 중간재 수입비중이 높아 국제원자재 및 곡물가격, 동화 환율 등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2012년에는 통화량 축소정책 시행,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하락한 9.1%를 기록하였으며, 2013년에는 공공요금 인상, 평가절하 조치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에도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 소비심리 위축으로 6.6%까지 둔화되었음.
- 2014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5.2%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법인세 인하, 인프라 지출 확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 확대

- 베트남은 경제 성장과 원유 생산 등 세수 증가요인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혜택 부여로 세수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각종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인프라와 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6.8%를 기록했으며, 2013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동 비중이 5.6%로 감소하였음.
- 수출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인하, 인프라와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6.6%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의 부실화로 인한 불확실성 상존

- 국영기업의 은행소유 허용, 은행간 지분 교차보유 제도 등 제도적 허점으로 국영기업의 무분별한 비핵심부문 진출에 대규모 대출이 지원되었으나, 진출 실패로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이 동시에 부실화되었음.

- 2014년 11월 Fitch는 국영기업 부문과 은행산업의 최대 우발채무가 각각 베트남 GDP의 26%, 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함.
- 베트남 정부는 국영기업 개혁을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및 비핵심산업 자회사 매각, 상장기업에 준하는 정보공개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은행 산업의 구조조정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해 외국계 금융기관의 투자 규제 완화, 부실자산 관리기관 설립 등을 시행함.
- 2013년 7월 부실채권 매입, 채무재조정, 담보매각 등을 전담하는 베트남자산 운용회사(VAMC)가 설립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금 확충 및 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해 베트남 은행에 대한 외국인 지분투자 한도도 2014년 1월부터 상향조정*되었음.
- * 외국기관: 10%→15%, 전략적투자자: 15%→20%
- 복잡한 승인절차, 제한적 매각규모에 따른 투자자 유치 실패 등으로 국영기업 구조조정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VAMC의 자본금 부족, 회계기준 강화 유예 등으로 은행권 건전성 제고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2014년 국영기업의 지분 매각은 143개사로 목표(200개사)를 하회하였으며, 2014년 9월말 비핵심사업 매각액 누계는 약 4.5조 동 수준으로 목표의 21% 수준에 불과함.
- VAMC는 2014년 10월말까지 약 90조 동(약 42억 달러)의 부실채권을 매입 하였으나 자본금은 5천억 동(약 24백만 달러)에 불과하여 SBV는 정부에 자본금을 2조 동까지 증액할 것을 요청함.
- 공식적인 베트남 은행산업의 부실채권(NPL)비율은 2013년말 3.61%에서 2014년 10월말 3.87%로 상승하였으나, SBV와 Fitch는 국제기준 적용시 동 비율이 각각 9%, 15%에 달할 것으로 추정함. 한편, 금융기관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강화된 회계기준 적용시점은 2015년 4월로 연기되었음.

□ 열악한 인프라가 성장의 장애물로 작용

-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 글로벌 경쟁력지수(Global Competitiveness Index 2014-2015)에 따르면,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144개국 중 81위로, 도로(104위), 항만(88위), 항공(87위), 전기공급(88위) 부문이 전반적으로 취약함.
 - 전국적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송배전망 부족으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전력 손실, 전력 품질의 저하, 정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열악한 교통인프라로 인해 운송시간이 오래 걸리며 운송비 부담도 높음. 특히, 육상운송이 전체 물동량의 65% 이상을 담당하고 있으나 낙후된 장비 사용으로 인한 고장이 빈번하여 활용에 큰 어려움이 있음.

□ 만연한 부정부패, 관료주의에 따른 비효율 상존

- 국제투명성기구의 2014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2014)에서 베트남은 31점을 득점하여 조사대상 175개국 중 필리핀(85위), 중국(100위), 인도네시아(107위)보다 낮은 119위로 평가됨.
 - 반부패법은 상당히 잘 정비되어 있으나, 세부 시행규칙 미비로 공무원의 재량권이 폭넓게 적용되고 있어 부패 근절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세계은행의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14. 10 발표)에 따르면 베트남의 기업 경영여건은 전체 189개국 중 78위 수준으로 평가되었는데, 특히 사업 개시, 조세납부 관련 절차가 많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

나. 성장 잠재력

□ 소비성향이 높은 소비계층 증가로 내수시장 성장 전망

- 베트남은 약 9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4위의 인구대국으로, 2025년에는 약 1억 명의 인구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됨. 더욱이, 소비 성향이 높은 20~30대 인구가 당분간 3천만 명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데 소비수준이 높아지는 40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신흥 고소득층(vinavalet)과 젊은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고급제품 구매가 확산되고 있으며, 고성장에 힘입어 중산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어 소비시장 성장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되고 있음.

- 연소득이 8,500달러 이상인 베트남의 중상류층 인구가 2014년 12백만 명에서 2020년 33백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생산가능인구 비중 지속 증가로 저임 노동력 풍부

-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이 70% 이상을 기록하고 있으며 동 비율은 2025년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국민 기본교육이 잘 시행되고 있으며, 과거 남베트남 시절의 자본주의 시행 경험을 보유하여 경제체제 전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어 저임노동력의 질이 양호함.

- 고숙련 노동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베트남 정부는 직업교육 및 전문학교와 대학교에 공공재원을 대폭 투입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공공부채 증가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필요

- 2012년 이후 베트남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법인세율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을 시행함에 따라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급증하면서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자본지출 증가가 제한되고 있음.

- IMF는 베트남의 GDP 대비 공공부채 비중이 2011년 46.7%에서 2013년 51.6%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러한 추세가 2019년까지 지속되어 동 비중이 60.7%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공공부채 중 외채 비중은 GDP의 26~27%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내채무 비중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소득수준 상승에 따른 양허성차관 비중 감소로 향후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베트남은 공공부채 한도 설정, 세수기반 확대를 통한 세수 확충 등 공공부채 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베트남 국회는 GDP의 65%를 공공부채 한도로 설정하였으며, 유가하락, 원유 생산량 정체 등으로 원유 관련 재정수입 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나, 기업실적 개선, 과세행정 효율화 등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수출세 등의 과세 실적은 최근 개선되고 있음.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신축적으로 통화·환율정책을 수행

○ 베트남 중앙은행(SBV)은 경제성장 촉진 및 물가상승률 안정화를 위해 기준금리인 재대출금리(Refinancing rate)를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2011년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자 SBV는 재대출금리를 연 9%(2011년초)에서 연 15%(2011.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2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세를 둔화시킴.

- 이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자 SBV는 2012년 3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여덟 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재대출금리를 인하하여 연 7%로 조정하였고, 2014년 3월에도 50bp 추가 인하를 단행함.

○ SBV는 수출 촉진 및 외환보유액 확충을 위해 2013년과 2014년 6월 동화 가치를 각각 1% 평가절하 하였으며, 2015년 1월에도 1%의 동화 가치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최근 달러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에 대비함.

3. 대외경제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e
경 상 수 지	-4,276	236	9,062	9,471	7,753
경 상 수 지 / G D P	-3.7	0.2	5.8	5.5	4.1
상 품 수 지	-5,136	-450	9,885	8,730	9,429
수 출	72,237	96,906	114,573	132,135	149,837
수 입	77,373	97,356	104,688	123,405	140,408
외 환 보 유 액	12,054	13,128	25,161	25,481	38,074
총 외 채 잔 액	44,923	53,072	59,119	65,461	68,553
총 외 채 잔 액 / G D P	38.8	39.2	37.9	38.2	36.4
D. S. R.	2.3	3.9	3.6	3.6	3.4

자료: IMF, WB 및 EIU.

□ 상품수지 개선에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1% 수준 추정

- 전자, 섬유 제품 등 제조업 부문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베트남의 상품수지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경상수지가 2011년부터 흑자로 전환됨.
- 2012년에는 내수 위축으로 수입은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전자 및 섬유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상품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8%로 상승하였음.
- 2013년에는 핸드폰 등 전자제품을 중심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었으나 외국인 투자유입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흑자는 87억 달러,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5.5%로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함.
- 2014년에는 자본재 수입 증가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수출 호황으로 상품수지 흑자가 94억 달러로 증가하지만,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 악화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4.1%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 증가세 지속

○ 2012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에 힘입어 외환보유액이 252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3년에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지속되어 255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거시경제지표 안정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법인세율 인하 등 투자 유치정책에 힘입어 2011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이 증가하여 2013년에는 89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 2014년에는 투자유치 정책 유지, 베트남-EU 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에 대한 적극적 참여 등에 힘입어 외국인직접투자가 110억 달러 수준까지 증가하고 경상수지 흑자 기조도 유지되면서 외환보유액이 381억 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GDP 대비 외채비중 및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 모두 양호한 수준

○ GDP 대비 외채 비중은 2010년 이후 36~38%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DSR도 2011년 3.9%를 기록한 이후 감소세를 시현하여 2014년에는 3.4% 수준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 유지

- 베트남은 당서기장, 총리, 국가주석이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집단지도체제를 표방하고 있음. 2011년 지도부 교체 시 불협화음은 없었으며, 향후 지도부 교체는 2016년에 예정되어 있음.
 - 당서기장은 보수파인 응웬 푸 쯩, 국가주석은 개혁파인 쩌응 쩌 샹이 선출되었으며, 총리는 개혁파인 응웬 쩌 중이 유임되었음.
- 당내 개혁파와 보수파 간 갈등이 존재하나 정권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수준이며, 사회적으로도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하여 상당 기간 동안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민주적 절차 도입을 요구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도 있으나, 베트남 공산당은 언론 통제 강화, 인터넷에 대한 규제 신설, 유명 반체제 블로거 체포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2. 사회동향

□ 경제성장 과실 집중으로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 확대

- 개혁개방 추진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과실이 외국인 투자가 집중된 호치민, 하노이, 하이퐁 등 대도시 거주 상위층에 집중되면서 지역 및 계층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베트남의 지니계수와 소득 상위 20%의 소득격차는 각각 1999년 0.39, 7.6배에서 2010년 0.43, 9.2배로 확대되었음. 또한, 전국 평균 빈곤율(poverty rate)은 17.2%, 도시 지역은 5.4%에 불과하지만, 시골 지역은 22.1%, 소수민족은 59.2%로 여전히 높은 수준임.

- 베트남 정부는 농촌개발, 빈곤퇴치 정책을 통해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농촌 및 소수민족 거주지역의 불만을 무마하면서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3. 국제관계

□ 인권문제를 제외하면 미국과의 관계는 전반적으로 개선 추세

- 1995년 양국 관계 정상화 이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3년 7월 미-베트남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이 발표되었음.
- 2010년 베트남-미국 간 군사정책대화가 최초로 개최되고, 2012년 미국 국방 장관이 베트남 방문 시 양국 군사협력 강화 의사를 표명하는 등 양국간 군사관계 역시 긴밀해지는 면모를 보이고 있음.
- 다만, 미국은 정치범·종교인에 대한 억압, 언론의 자유 침해 등 취약한 베트남의 인권상황에 대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관계 강화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음.

□ 반중시위 확대 등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표출로 대중 관계 악화

- 중국은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 제3위 투자국이나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중국과 잦은 분쟁을 겪었으며, 중국과의 육상국경선은 2009년 확정되었으나 해상 국경의 경우 영유권 분쟁이 진행 중임.

* 분쟁지역: Spratly(중국명 남사군도, 베트남명 청사군도) 및 Paracel(중국명 서사군도, 베트남명 황사군도) 도서 및 남중국해(베트남 동해) 자체에 대한 영유권(중국 정부의 9개 점선을 연결한 소위 'U자형 수역' 내 영유권)

- 중국 해군선박의 베트남 국영석유가스개발공사 시추선 케이블 절단, 분쟁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베트남 어선에 대한 중국의 나포 및 발포에 이어 2014년 5월 중국이 분쟁지역에서 석유 탐사를 개시하자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확대되면서 양국간 갈등이 고조되었음.

- 밀접한 경제 관계 등을 감안하여 반중 시위 전후로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해상영유권 분쟁 해결이 어려워 양국간 긴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임.

□ ASEAN 국가와의 경제통합에 적극적

- 베트남은 1995년 ASEAN의 일곱 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으며 2010년 ASEAN 의장국을 수임한 바 있음. AFTA 발효 및 2015년 ASEAN 경제 공동체 (AEC) 발족 추진 등 ASEAN의 경제 통합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 ASEAN 국가와 후발 ASEAN 국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태도

□ 증장기 차관 위주의 외채구조 보유

- 증장기 외채가 총외채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외채구조가 양호함. 다만, 최근 소득 증가에 따른 양허성원조자금의 순수입이 감소하면서 총외채 대비 양허성 차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0%에서 2013년 47% 수준까지 급락하였음.
- 한편, 베트남 정부는 거시경제 안정화, 신용등급 상승 등에 힘입어 2014년 11월 10억 달러 규모의 달러화표시 채권 발행에 성공하면서 5년 만에 국제금융 시장에 복귀하였음.
- 신규 도입한 외채의 평균만기는 2010년 23년에서 2013년 25년으로, 평균금리는 2010년 2.3%에서 2013년 1.8% 수준으로 하락하여 외채관리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보임.

2. 국제시장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당 행	C1	(2015. 2)	C1	(2014. 2)
OECD	5등급	(2014. 6)	5등급	(2013. 6)
S&P	BB-	(2012. 6)	BB-	(2010. 12)
Moody's	B1	(2014. 7)	B2	(2012. 9)
Fitch	BB-	(2014. 11)	B+	(2014. 1)

- OECD는 2014년 6월 CRE(Country Risk Expert) 회의에서 국영기업 개혁과 은행부문 건전성 제고 지원 등을 감안하여 동국의 국가신용등급을 기존의 5등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함.

- S&P는 2010년 12월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1단계 하향 조정하였으나, 2012년 6월 물가상승률 둔화, 경상수지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변경함.
- 거시경제 안정성 제고, 경상수지 개선, 은행 부문의 위험도 경감 등을 감안하여 Moody's는 2014년 7월, Fitch는 2014년 11월 베트남 국가신용등급을 각각 B2에서 B1, B+에서 BB-로 상향 조정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12월 22일 (북한과는 1950년 1월 31일)
- 주요협정: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무역협정(1993년), 항공협정(1993년), 투자보장협정(1993년, 2003년 개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문화협정(1994년), 과학기술협정(1995년), 원자력협정(1996년), 범죄인인도조약(2005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베트남 교역 규모

단위 : 백만 달러

對 베트남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5,946	21,088	22,333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수 입	5,719	7,175	7,989	의류, 신발, 목재류
합 계	21,665	28,263	30,322	

자료: 한국무역협회.

- 교역규모는 2009년 9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수출액과 수입액 모두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시현하면서 2012년 217억 달러, 2013년 283억 달러, 2014년에는 303억 달러에 달하였음.
-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제4위 해외직접투자 대상국으로 대 베트남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말 기준 3,515건, 11,228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소비심리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정책에 힘입어 5.4%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하였으며,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투자 확대, 수출 호조와 물가 안정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2014년 경제성장률은 5.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와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전년도 9.1%에서 크게 하락한 6.6%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소비심리 회복과 확장적 통화정책에도 불구하고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세에 힘입어 5.2% 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은 수출산업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5.6%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법인세 인하, 인프라와 복지 부문에 대한 지출 확대로 동 비중이 6.6%로 상승할 것으로 보임.
- 전자제품 중심의 제조업 수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2013년에는 자본재 수입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흑자 축소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5.5%로 하락하였으며 2014년에는 상품수지 흑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와 소득수지가 악화되면서 동 비중이 4.1%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베트남 공산당 체제 하의 안정적 정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공산당 일당 체제에 대한 반발세력이 미약해 당분간 정치적 안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다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대규모 반중 시위가 발생하는 등 베트남의 제1위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음.
- GDP 대비 외채 비중이 2011년부터 감소세를 보여 2014년에는 36.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외채의 80%가 중장기 외채로 구성되어 있고 DSR도 최근 3%대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당분간 대외지급능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방글라데시 국별 평가리포트

송용원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조사역

I. 일반개황

면적	144천 km ²	G D P	1,866억 달러 (2014년)
인구	158백만 명 (2014년)	1 인 당 GDP	1,179달러 (2014년)
정치체제	내각책임제	통화단위	Taka (Tk)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 (달러당)	77.6 (2014)

□ 동쪽으로는 미얀마, 서쪽으로는 인도, 남쪽으로는 벵갈만과 접하고 있으며 세계 제1위의 인구밀도(1,203명/km², 2013년)를 기록하고 있음.

□ 1947년 종교적 공통점을 바탕으로 동벵갈지역(현 방글라데시)은 파키스탄의 일부로 인도로부터 독립하였으나, 동파키스탄인 차별 정책에 대한 반발 심화로 분리주의를 내세운 아와미 연맹(AL)이 집권하면서 1971년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에서 탈퇴함.

□ 전형적인 저개발농업국가로 전체인구의 약 4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성이 낮아 외자 및 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소수민족 비중이 낮아 문화적 동질성이 높으나 문맹률이 높고 인구 1%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국부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빈부격차가 심각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제 성 장 률	6.0	6.5	6.3	6.1	6.2
재 정 수 지 / G D P	-2.7	-3.6	-3.0	-3.4	-2.7
소 비 자 물 가 상 승 률	8.1	10.7	6.2	7.5	7.2

자료: IMF.

* 회계기간: 7.1~6.30, ex) 2010.7.1~2011.6.30 → 2011년 표기

□ 민간소비와 정부지출 확대로 2014년 경제성장률 6.2% 시현 추정

- 의류부문의 수출 호조, 해외근로자 송금에 따른 소득 증가, 원조자금에 의한 투자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6% 내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2012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로 민간소비가 증가하였으나,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상품수출 감소, 곡물 생산량 감소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은 6.3%를 기록함.
- 2013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6.1%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농업 생산 증가에 따른 민간 소비 확대와 인프라 사업 투자 증가에 따른 정부지출 확대로 6.2%의 경제성장률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연료비 보조금 축소 등으로 2014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2.7%로 축소

- 방글라데시는 취약한 세수기반, 복잡한 조세 제도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석유 제품에 대한 대규모 보조금 제공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2012년에는 경제 성장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0%로 축소되었으나 2013년에는 총선을 앞두고 복지지출이 확대되어 동 비중이 3.4%로 확대되었음.

○ 2014년에는 전력 등 인프라 투자와 복지비 지출 확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축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2.7%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임금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2014년 물가상승률은 7.2%로 추정

○ 2012년에는 식료품 가격 안정, 금리인상을 통한 통화 공급 축소 등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6.2%로 하락함.

○ 2013년에는 식량 공급 부족으로 인한 식료품 가격 인상, 전기료 및 유류 가격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5%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임금인상과 보조금 축소에 따른 연료 및 전기료 인상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2%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농업, 의류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

○ 농업은 GDP의 17%를 점유하고 있으나, 전체 노동력의 45% 이상이 동 부문에 종사하는 후진국형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음.

* GDP 대비 산업별 비중('13년 기준): 서비스업 54%, 제조업 29%, 농업 17%

○ 제조업의 58%를 차지하는 의류산업을 제외하면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대부분의 자본재 및 소비재 등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의류산업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노동자의 약 5.3%(약 400만 명)가 종사하고 있음.

□ 부패 및 행정 비효율에 따른 높은 사회적 비용

○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따른 비효율적인 행정 처리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음.

- 2014년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평가한 방글라데시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순위는 174개국 중 145위로 하위권에 해당됨.

나. 성장 잠재력

□ 저임의 풍부한 노동력 보유

○ 동국의 인구는 2014년 기준 1억 58백만명(세계 8위)에 이르며 총인구의 65.2%('13년 기준)가 경제활동인구(15~64세)로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음.

○ 월 평균임금은 74달러로 주변국 대비 낮아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상품의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함.

* 월평균 임금수준: 베트남(145달러), 파키스탄(173달러) 인도(276달러)

□ 열악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책 추진

○ 교통, 전력 등 인프라가 열악하여 외국인투자 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전체 내륙 운송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객 73%, 화물 63% 수준이나 도로 상태가 열악하고 정체가 심하며 철도의 경우 여객 및 화물 분담률이 매우 미미함.

- 전력 발전시설 부족으로 만성적인 전력난이 지속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약 40%가 전력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Vision 2021'이라는 국가 장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세출의 30% 이상을 개발프로그램(Annual Development Program, ADP)에 배정하는 등 인프라 부문의 발전에 힘쓰고 있음.
- 정부는 민간 부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세계은행(World Bank)의 자금 지원을 받아 인프라 개발기금을 설치하여 저리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빈곤 퇴치 프로젝트 시행 등의 결과로 빈곤률 감소

- 방글라데시 정부는 기본생활수준, 보건, 교육, 환경에 대한 개발목표를 설정하고 빈곤퇴치를 위한 PRSP(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프로젝트 등을 시행함에 따라 빈곤률이 56.6%(1992년)에서 31.5%(2010년)로 감소함.
- 이외에, 기대수명이 59세(1990년)에서 69세(2011년)로 향상되었으며, 유아 사망률(천명당)도 139명(1990년)에서 46명(2011년)으로 개선됨.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e
경 상 수 지	507	-1,337	971	1,968	276
경 상 수 지 / G D P	0.4	-1.0	0.7	1.2	0.1
상 품 수 지	-6,888	-8,371	-6,510	-6,373	-7,296
수 출	21,082	25,626	25,428	28,623	31,199
수 입	27,970	33,997	31,938	34,996	38,495
외 환 보 유 액	10,564	8,510	12,031	17,564	20,937
총 외 채 잔 액	25,752	27,326	26,130	26,632	26,823
총 외 채 잔 액 / G D P	20.9	20.6	19.0	16.3	14.4
D. S. R.	3.0	3.7	3.6	4.0	3.8

자료: IMF, OECD.

□ 소득 증가와 인프라 개발 수요로 2014년 상품수지 적자는 소폭 상승 추정

- 저부가가치 상품 위주로 수출하고 원자재, 자본재, 소비재 등을 수입하는 교역 구조로 만성적인 상품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해외근로자의 송금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로 경상수지는 2012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 2012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상품수출 감소보다 국제유가 안정으로 수입액이 더 크게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는 6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10억 달러를 기록함.
- 2013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액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류 및 황마 등의 수출 증가에 따른 상품수지 적자 감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증가함.
- 2014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액 증가와 상품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소득 증가와 인프라 개발 수요로 소비재 및 자본재 수입액이 증가하여 경상수지 흑자가 2.8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 외채의 83%가 장기 양허성 차관이며 2014년 DSR은 3.8% 수준으로 양호

- GDP 대비 총외채 비율은 2010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에는 16.3%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외채의 83%가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인데다 정부가 외국인 증권투자 및 민간부문 해외차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변동성이 크지 않음.
- 외채 증가세의 둔화와 지속적인 수출 증가로 2010년 이후 DSR은 4%이하를 유지하고 있으며 외환보유액은 2011년 85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월평균수입 대비 외환보유액은 5.1개월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총선 무효 시위 등에 재개에 따른 정국 불안

- 방글라데시 국민당(BNP)을 주축으로 한 야당 연합이 2014년 1월 시행된 총선에 불참하고 대규모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이를 경찰이 무력 진압하면서 야당 지지자 150명 이상이 사망하여 갈등이 고조되었음.
-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가 이끄는 아와미 연맹은 야권의 불참과 유혈 사태 속에서도 예정대로 총선을 강행해 총 300개 선거구 가운데 232석을 차지하였으나 투표율은 20% 수준을 기록하는 등 반쪽 선거라는 비판을 받았음.
- 야당 연합은 새 총선을 요구하며, 총선 1주년인 2015년 1월에 지지자들에게 시위에 나설 것을 촉구함. 이에 따라 시작된 전국적인 ‘교통 봉쇄’ 시위는 버스, 트럭 등의 무차별 방화 등의 소요사태로 심화됨.
- 현재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시위대가 총 1만명 행해지는 등 사회 불안이 지속되고 있으나, 하시나 총리의 대화 거부로 당분간 정국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2. 사회동향

□ 의류노동자의 불만을 수용하여 의류노동자 최저임금 인상

- 2012년 다카 인근 패션 의류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와 2013년 4월 라나 플라자 의류공장 붕괴 사고로 많은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근로환경이 매우 열악하며 노동자들의 불만이 계속해서 증가하였음.
- 2013년 9월 20만 명의 의류노동자들이 수도 다카 인근 지역에서 사흘간 월 최저임금 인상,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수십 명이 부상당함.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의류노동자들의 불만을 일부 수용하여 2013년 12월 의류 노동자들의 월 최저임금(38달러)을 77% 인상한 68달러 수준으로 확정하였는데, 이는 2010년 이후 3년 만에 이루어진 인상임.

□ 이슬람지도자 사형선고에 반발하는 폭력시위 발생

- 2013년 1월 방글라데시 전범재판소는 최대 이슬람 정당인 ‘자마트-에-이슬라미 (Jamaat-e-Islami)’의 주요 인사들에게 1971년 독립전쟁 당시 종교탄압 및 강간 혐의로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2013년 12월 야당 지도자 압둘 카데르 몰라의 사형을 집행함.
- 이후 이를 반대하는 이슬람 지지자들과 경찰과의 유혈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3. 국제관계

□ 중국과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노력

- 중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교역국이자 주요 군수품 공급원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또한, 무상원조 및 양허성 차관 공여 등을 통해 동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인도와 경제·정치적으로 긴밀한 관계이나 갈등 발생 가능성 상존

- 2013년 기준 인도는 방글라데시의 제2위 수입국(전체 수입액의 16.3%)으로 주로 면, 면사, 곡물, 차량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인도의 맘모한 싱 전 총리('11.9월)와 프라납 무커지 대통령('13.3월) 등이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등 양국은 경제 및 정치적으로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이어나가고 있음.
- 하지만 2014년 5월 나렌드라 모디 총리 취임 이후, 방글라데시인의 인도 내 불법행위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취함에 따라 향후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존재함.

□ 주요 공여국인 미국과의 우호 관계 유지

○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주요 공여국이며 국방, 테러 방지, 안보, 치안유지 등의 분야에서 상호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 다만, 의류공장 붕괴사고를 계기로 미국은 2013년 6월 방글라데시에 대한 일반특혜관세제도*를 잠정 중단하였음.

* 특정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 등에 대해 대가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제하는 제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황 태도

□ 외화유동성 부족 등으로 2012년부터 IMF 차관 수혜 중

○ 2012년 방글라데시는 외화부족 등을 이유로 IMF 차관 제공을 요청하여 IMF는 2012년 4월부터 3년간 총 9억 8,700만 달러 규모(10년간 이자율 0%)의 확장적 차관(ECF)* 제공을 승인함.

* 확장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국제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IMF 차관의 한 종류로 대출조건이 차입국에 유리한 양허성 차관제도임.

2. 국제시장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C3	(2014. 12)	D1	(2013. 8)
OECD	6등급	(2014. 6)	6등급	(2013. 6)
S&P	BB-	(2010. 4)	-	
Moody's	Ba3	(2014. 4)	Ba3	(2010. 4)
Fitch	BB-	(2014. 8)	-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OECD는 2014년 6월 안정적인 경제성장세, 풍부한 저임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섬유산업의 높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인프라,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방글라데시의 국가신용등급을 6등급으로 유지함.
- S&P, Moody's, Fitch는 낙후된 인프라 환경, 취약한 정부의 재정상태, 관료적인 정부시스템 등을 지적하며 방글라데시의 신용등급을 BB-, Ba3, BB-로 유지함.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73년 12월 18일(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 주요협정: 항공협정(1979년), 문화협정(1979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3년), 투자보장협정(1986년), 경제기술협력협정(1993년), 과학기술협력협정(1995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1〉

한·방글라데시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對 방글라데시	2012	2013	2014	주요품목
수 출	1,459	1,427	1,236	합성수지, 철강판, 종이제품
수 입	295	332	345	의류, 가죽, 기타섬유제품
합 계	1,754	1,759	1,581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에는 석유제품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죽 및 섬유제품 수입 증가로 전체 교역량이 17.6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2014년에는 석유제품 수출이 1.2억 달러 급감하면서 전체 교역량이 15.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함.
-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해외직접투자는 2014년 기준 234건, 2.9억 달러 (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V. 종합 의견

- 2013년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증가로 6.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2014년에는 인프라 투자 증가에 따른 정부지출 및 민간소비 확대로 6.2%의 성장세를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에는 복지지출 확대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3.4%로 확대되었으나 2014년에는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연료 보조금 축소 등으로 동 비율이 2.7%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의류 및 농산물 수출 증가로 2013년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는 인프라 개발에 따른 자본재 수입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다소 감소함.
- 야권의 불참 속에서도 총선을 강행하여 유혈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최근 다시 시작된 소요사태로 사회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정부의 대화 거부로 당분간 정국 교착 상태가 이어질 전망이다.
- GDP 대비 총외채 잔액 비중과 D.S.R이 낮은 수준이고 외채 대부분이 양허성 조건의 중장기 공적채무로 구성되어 단기적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한국의 개발협력」 원고 기고

□ 발간 목적

- 「한국의 개발협력」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국제개발협력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개발협력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다양한 개발협력 주체의 시각을 공유함으로써 대외원조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국형 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 원고 게재 절차

- 기고 → 접수 → 심사 → 게재

□ 원고 집필 요령

- 내용 및 작성 : 개발협력과 관련된 최근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에서 논의 되고 있는 이슈를 중심으로 서술 형식으로 작성
- 형식 : 한글파일 사용 (13 포인트, 200자 원고지기준)
- 분량 : A4 용지 20매 내외

□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E-mail 전송을 원칙으로 한다.

E-MAIL : jakun.koo@koreaexim.go.kr

Tel : 02-3779-6583

○ 기고원고는 「한국의 개발협력」의 발간 목적에 부합하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없어야 한다.

○ 기고 원고는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 심사

○ 심사 절차는 한국의 개발협력 편집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원고의 심사는 한국수출입은행의 절차에 따르되, 필요에 따라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단, 원고 기고자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 게재

○ 원고는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하며, 한국수출입은행 경협기획실은 제반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기준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원고 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원고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원고는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http://www.edcfkorea.go.kr>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